

##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

2006. 10

- 소관부처 : 국무조정실
- 협조부처 : 환경부  
산업자원부

## 목 차

I. 추진배경 및 필요성 .....	5
II. 우리나라 온실가스 현황 및 전망 .....	7
III. 비전과 전략 .....	11
IV. 중점 추진과제 .....	13
V. 추진체계 .....	18

## I. 추진배경 및 필요성

### 1. 기후변화<sup>1)</sup> 문제의 대두

- 산업혁명 이후 인간의 산업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sup>2)</sup> 배출이 증가되어 지구의 기후시스템에 영향을 미침
- 대다수의 과학자들이 지구 대기중의 온실가스가 적외선의 방출을 차단해 지구 온도가 상승하고 있으며, 현대문명 속에서의 인간행위가 온실 효과를 강화시키고 있음을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음
  - ※ 로마클럽 보고서 「성장의 한계」(72년)에서는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에 비해 자원을 제공하는 환경은 유한하다고 지적하며, 환경이 파괴되고 나면 경제성장은 전혀 의미가 없음을 지적
- IPCC<sup>3)</sup>는 기후변화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온실가스 감축(mitigation)과 기후변화 적응(adaptation)의 조화를 제시

#### <전 지구적 변화>

- ▶ IPCC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구의 평균기온이 지난 1세기 동안 약 0.6℃ 상승했으며, 2100년에는 1990년 대비 1.4~5.8℃ 상승 예상
- ▶ 이산화탄소 농도는 산업혁명 이전 280ppm과 비교하여 2000년에는 370ppm으로 약 30% 증가

#### <우리나라의 변화>

- ▶ 최근 100년 동안 평균기온 상승폭이 1.5℃로 전세계 평균기온 상승폭보다 높음
- ▶ 1990년대의 겨울은 1920년대에 비해 약 한달 정도 짧아진 반면, 여름과 봄은 길어져 개나리, 벚꽃 등 봄꽃의 개화시기가 빨라졌음
- ▶ 제주도 고산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1991년 357.8ppm에서 2000년 373.6ppm으로 증가

1) 기후변화란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하여 인간 활동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일어나는 변화로 정의(기후변화협약 제1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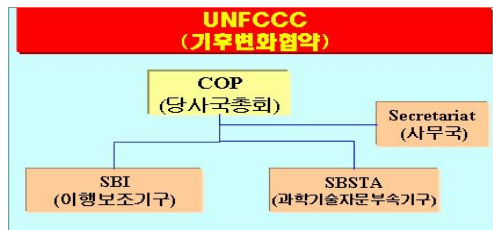
2) 온실가스 : CO<sub>2</sub>, CH<sub>4</sub>, N<sub>2</sub>O, HFCs, PFCs, SF<sub>6</sub>

3) IPCC :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 2. 기후변화협약 진행경과

- 기후변화는 개별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가가 함께 영향을 받는 문제로서 전 지구적인 공동 대응이 필요
  - 지구온난화의 과학적 근거조사를 위해 IPCC 설립(88년)
    - ※ IPCC 1차 평가보고서(90년)는 기후변화협상을 촉진하는데 과학적 근거 제공
  - IPCC의 조사 결과 후 범지구적 공동 노력 필요성이 제기, 리우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기후변화에관한국제연합기본협약(UNFCCC<sup>4)</sup>) 채택(92년)
- 동 협약은 「온실가스로 인한 기후시스템의 변화를 방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온실가스 농도를 안정화」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기후변화의 예방적 조치, 국가의 지속가능한 성장 보장, 공동의 차별화된 책임과 능력에 입각한 의무 부담'의 원칙 채택(94.3월)
- 기후변화협약(UNFCCC)은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당사국총회(COP)를 두고, 협약의 이행과 논의는 당사국 합의로 결정
  - 당사국총회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해 부속기구로 과학기술자문부속기구(SBSTA)와 이행보조기구(SBI)를 설치·운영

< 기후변화협약 조직 체계<sup>5)</sup> >



4) UNFCCC :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5) COP : Conference of the Parties

SBI : Subsidiary Body for Implementation

SBSTA : Subsidiary Body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ice

- 제3차 당사국총회(97년)에서 교토의정서를 채택함으로써 선진국들에 대한 법적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여
  - ※ 부속서 I 국가(38개국)는 1차 공약기간(08~12년) 만료시까지 90년 대비 평균 5.2% 감축의무 부담
- 제 7차 당사국총회(01년)에서 교토의정서 이행방안이 최종 타결(마라케쉬 합의)
  - ※ 같은 해 미국의 교토의정서 비준거부<sup>6)</sup>로 교토의정서 발효는 러시아의 비준여부로 결정<sup>7)</sup>
- 제11차 당사국총회(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제2차 공약기간('13~'17년) 동안의 의무부담 논의를 위한 협상체계 협의
  - 선진국의 2012년 이후의 의무부담 논의를 위한 별도의 특별협상그룹(ad hoc working group)을 설치하고, 개도국을 포함한 기후변화협약 상의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공개적이고 비구속적 형태의 workshop을 통한 협의(dialogue)를 개시하기로 합의

## II.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현황 및 전망

### 1. 온실가스 배출현황

- 우리나라는 연료연소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10위<sup>8)</sup>, 에너지소비량 세계 10위 수준 (IEA, 03년 기준)

6) 교토의정서 의무 불이행사유를 ①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의무부담 불참, ②자국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주장하고 있음

7) 교토의정서 발효요건(총족시 90일후 발효)

첫째, 55개국 이상의 협약당사국들의 비준

둘째, 비준서를 기탁한 부속서(Annex) I 국가들의 1990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의 합이 전체 부속서 I 국가들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55% 이상

8)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인도, 독일, 캐나다, 영국, 이탈리아, 한국 순

○ 90~03년간 온실가스 증가율은 연평균 5.0% 수준임

< 온실가스 배출현황 >

구분		1990	1995	2000	2002	2003	90~03년 증가율(%)
항목	단위						
온실가스 배출량	백만tCO2	310.6	452.8	528.6	569.3	582.2	5.0
GDP	10억(2000년)	320,696	467,099	578,665	642,748	662,655	5.7
온실가스 배출/GDP	tCO2/백만원 (2000)	0.968	0.969	0.914	0.886	0.879	-0.7%

\*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05.8월)

□ 부문별로는 에너지와 제조공정 부문이 전체 배출량의 94.7% 차지

- 에너지부문은 에너지이용 합리화 등으로 90년대 후반 이후 소비의 안정화를 보이니, 발전·수송부문의 배출량이 지속적으로 증가
- 농축산·폐기물부문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90~03년 동안 각각 0.9%, 3.7% 감소

<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현황 >

(단위: 백만tCO<sub>2</sub>)

	1990	1995	2000	2002	2003	'90-'03증가율(%)
에너지	247.7 (79.8)	372.1 (82.2)	438.5 (83.0)	473.0 (83.1)	481.4 (82.7)	5.2
산업공정	19.9 (6.4)	47.1 (10.4)	58.3 (11.0)	64.5 (11.3)	69.6 (12.0)	10.1
농업	17.5 (5.6)	17.8 (3.9)	16.2 (3.1)	15.8 (2.8)	15.5 (2.7)	-0.9
폐기물	25.5 (8.2)	15.7 (3.5)	15.6 (3.0)	16.0 (2.8)	15.6 (2.7)	-3.7
총배출량	310.6 (100.0)	452.8 (100.0)	528.6 (100.0)	569.3 (100.0)	582.2 (100.0)	5.0
토지이용변경 및 임업 (흡수원)	-23.7	-21.2	-37.2	-33.4	-33.3	2.6
순배출량	286.8	431.5	491.4	535.9	548.9	5.1

\*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05.8월)

□ 온실가스별로는 이산화탄소와 메탄이 전체 배출량의 93.1%를 차지

- 온실가스중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비중은 90년 83.2%에서 03년 87.7%로 증가(90년 이후 연 5.4% 증가)
- 메탄은 90년 이후 연평균 3.9%의 감소세를 보여, 비중도 90년 13.9%에서 03년 4.4%로 크게 축소

<온실가스별 배출추이>

(단위: 백만tCO<sub>2</sub>)

	1990	1994	1995	1996	2000	2002	2003	'90-'03증가율(%)
CO2	258.3 (83.2)	369.5 (87.5)	401.0 (88.6)	438.3 (86.8)	464.9 (87.9)	501.9 (88.2)	510.7 (87.7)	5.4
CH4	43.2 (13.9)	32.6 (7.7)	28.5 (6.3)	30.6 (6.1)	26.4 (5.0)	26.3 (4.6)	25.8 (4.4)	-3.9
N2O	8.0 (2.6)	11.0 (2.6)	11.9 (2.6)	12.6 (2.5)	14.9 (2.8)	14.8 (2.6)	18.1 (3.1)	6.5
HFCs	1.0 (0.3)	3.8 (0.9)	5.1 (1.1)	5.7 (1.1)	8.3 (1.6)	8.6 (1.5)	7.7 (1.3)	17.1
PFCs	n.a.	n.a.	n.a.	1.0 (0.2)	2.3 (0.4)	2.2 (0.4)	2.5 (0.4)	14.5
SF6	n.a.	5.1 (1.2)	6.3 (1.4)	17.0 (3.4)	11.7 (2.2)	15.6 (2.7)	17.4 (3.0)	14.6
합계	310.6 (100.0)	422.1 (100.0)	452.8 (100.0)	505.2 (100.0)	528.6 (100.0)	569.3 (100.0)	582.2 (100.0)	5.0

\* 주: 1. n.a.: not available  
2. 토지이용변경 및 임업부문의 배출/흡수량 제외  
3. PFCs는 1996~2003, SF6는 1994~2003 증가율임  
\*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05. 8월)

## 2. 에너지부문 배출전망

□ 장기전망이 가능한 에너지부문의 경우, '03~30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은 별도의 온실가스 감축노력 부재시 연평균 1.95% 증가 예상

- 산업부문은 에너지 다소비산업의 성장둔화 요인으로 인하여 에너지 소비증가율이 하락되어 온실가스 배출비중이 '03년의 33.4%에서 2030년 25.8% 수준으로 축소될 전망
- 수송부문은 가장 높은 온실가스 배출증가세가 예상되며, 2030년에는 전체 배출에서의 비중이 22.5%까지 상승 전망
- 발전부문은 산업고도화 및 소득증대로 인해 전력의 소비가 상대적으로 증가하여 2030년에는 온실가스배출 비중이 42%까지 상승 전망

< 에너지부문 온실가스 배출량 비중 전망 >

(단위 : %)

구 분	2003년	2010년	2020년	2030년
발 전	31.4	37.3	38.5	42.0
산 업	33.4	29.2	27.9	25.8
수 송	21.4	21.7	22.8	22.5
가 정	10.7	8.8	7.6	6.3
상업·공공·기타	3.1	3.0	3.2	3.4
계	100.0	100.0	100.0	100.0

※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05.8월)

□ 온실가스별 배출전망을 보면 이산화탄소가 에너지부문 전체 배출량의 99.5% 이상을 차지 (연평균 1.9% 증가 예상)

- 메탄 및 아산화질소는 각각 연평균 0.3%, 1.9% 증가 전망

< 에너지부문 온실가스별 배출 전망 >

(단위 : %)

	2003년	2010년	2020년	2030년	연평균증가 ('03-'30년)
CO2	99.5	99.5	99.6	99.6	1.9
CH4	0.2	0.2	0.1	0.1	0.3
N2O	0.3	0.3	0.3	0.3	1.9
계	100.0	100.0	100.0	100.0	1.9

※ 자료 : 에너지경제연구원 (05.8월)

### Ⅲ. 비전과 전략

#### 1. 제3차 종합대책 추진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체계 구축

□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고자 93.12월 기후변화협약 가입 및 02. 10월 교토의정서 비준

- 우리나라는 교토의정서상에 개도국(non-Annex I) 지위 확보로 1차 공약기간('08~'12) 중 온실가스 감축의무는 없음

□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이 우리 경제의 장기 발전방향과 부합된다는 인식하에 정부종합대책 수립

- 기후변화협약 관계장관회의(위원장 : 국무총리) 등 범정부대책기구를 구성하고, 기후변화협약 제1차 종합대책(99~01년)을 수립·추진
  - ※ 부문별 감축대책, 온실가스 감축기반 강화, 기술개발, 교토메카니즘 활용 등 36개 과제로 구성
- 국무총리훈령(제422호)에 근거, 관계부처 장관 등으로 구성된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를 구성하고 기후변화협약 제2차 종합대책(02~04년)을 수립·추진
  - ※ 협상능력 강화,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 온실가스 감축대책 강화, 교토메카니즘 및 통계기반 구축, 국민참여와 협력유도 등 5대 부문 84개 과제로 구성
- 국회 「기후변화협약대책 특별위원회」 (01.3월), 에너지 다소비 8개 업종<sup>9)</sup>에 대한 업종별 대책단(04.11월) 등 관련 조직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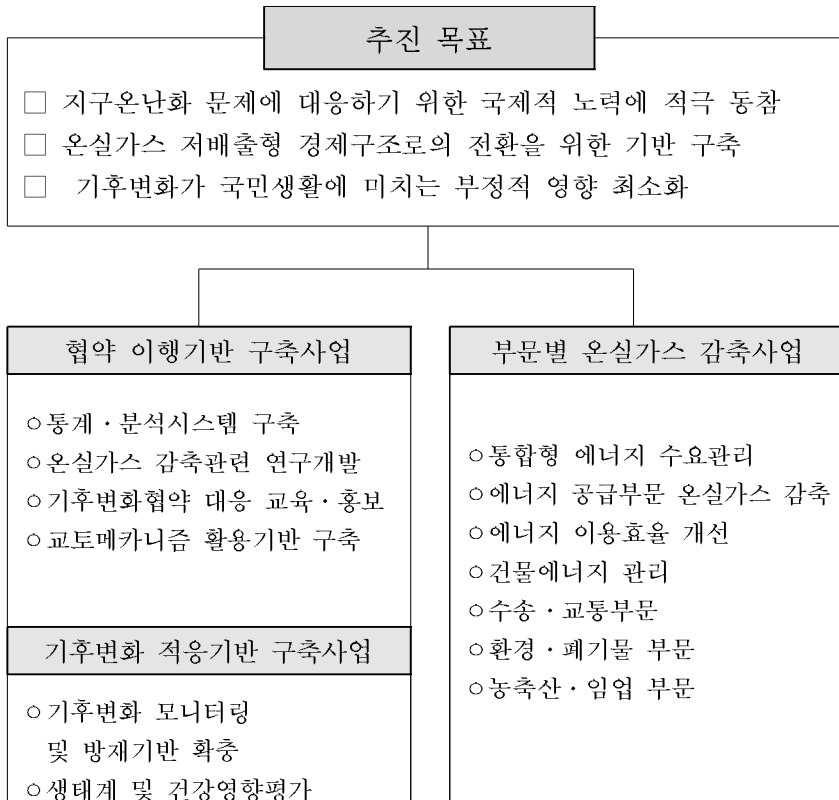
□ 04년 10월부터 4개월여에 걸쳐,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 환경부 등 총 19개 부처와 에너지관리공단, 환경관리공단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3대 분야 90개 과제를 내용으로 하는 제3차 종합대책(05~07년)을 수립

- '05년도 추진실적 평가를 통해 06년도에는 3대 분야 91개 과제 확정·추진 중

9) 발전, 정유,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제지, 자동차, 반도체

## 2. 추진 목표

- 지구온난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동참, 온실가스 저배출형 경제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기반 구축, 기후변화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최소화를 목표로 3대 부문(협약 이행기반 구축,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기반 구축)의 91개 세부과제 추진 (19개 부처)



## IV. 중점 추진과제

### 1. 협약 이행기반 구축사업

- 온실가스 관련 통계·분석시스템 구축
  - 국제 온실가스 통계기준에 의거,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통계를 포함한 국가 온실가스 통계시스템 구축
  - 산업구조 변화, GDP 성장률 및 온실가스 감축 정책수단(가격, 교토 메카니즘, 규제 등)을 고려한 경제적 감축잠재량 분석 추진
    - 업종별 자체 감축계획과 기술적·경제적 감축잠재량 분석 결과를 통합하여 국가가 수용가능한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규모 산정
- 온실가스 감축관련 연구개발
  - 에너지절약, 청정에너지, 자원기술 등 3개 분야의 에너지기술 개발·상용화 추진에 필요한 연구비 지원
  - 수소에너지 제조·저장·이용, 신재생에너지 기술, 조력·파력 등 해양에너지의 기술개발 지원
  - 경량화, 엔진개선을 통한 연료소비율 절감등 환경친화적 자동차개발
  - 축산분뇨 처리,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연구 등 폐기물 발생 축소 및 재활용을 위한 연구개발
  - 이산화탄소 저감 및 처리기술, 기후변화 모니터링 기술 등 기후변화 대응기술 개발 추진
  - 해조류를 이산화탄소 흡수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연구 등
- 기후변화협약 대응 관련 교육·홍보
  - 산업계 교육 및 설명회를 개최하여 온실가스 관련 인식 제고
    - 청정개발체계, 감축실적등록, 배출권거래제 등 산업계 실무교육 실시

- 지자체와 연계한 지역순회설명회 및 워크샵 개최
- 세미나, 강연회 등을 통한 관계자 교육
- 초·중·고 교육과정에 기후변화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분야별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특성화 대학원 운영
- 8개 에너지다소비업종 업종별 대책단\* 자체계획 수립·추진을 지원
  - 업종별대책반장 주재로 월별 1회 대책반 회의 개최(필요시 격월)
  - 쏠 대책반 상·하반기 추진실적 평가 점검회의
    - ※ 발전, 정유,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제지, 자동차, 반도체 업종에 대해 정부, 업종별단체, 기업, 관련전문가로 구성('04.11)
- 부처간 협의를 거쳐 산업체의 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정·보상방안 마련추진
- 지자체별 온실가스 배출현황 파악 및 자발적 감축목표 수립 지원

#### □ 교토메카니즘 활용기반 구축

- 청정개발체제 사업(CDM)을 통해 선진국의 자본 및 기술을 유치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탄소시장 참여에 대비
  - 매립가스 발전연료 이용을 통해 폐기물 매립지 자원화
    - ※ 청정개발체제(CDM : Clean Development Mechanism) : 선진국이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여 절감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자국의 의무부담 이행에 활용하는 제도(교토의정서 제12조)
- 청정개발체제 사업 중 산림 등 흡수원 부문의 확충을 위한 기술 및 정보 보급
- 국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추진방안 마련
  - 비용 효과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검토 중인 '국내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의 추진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를 지속 추진하고, 관계부처 및 전문가 협의를 거쳐 시범사업 통합(안)을 마련할 계획
    - ※ 배출권거래제(ET : Emissions Trading) :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초과 달성한 참여자가 잉여분을 목표에 미달한 다른 참여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 제도

## 2. 분야별 온실가스 감축 사업

### □ 통합형 에너지 수요관리

- 산업체의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유도를 위해 자발적 협약 체결사업장 확대(05년말 기준 1,315개,08년까지 1,472개), ESCO사업 확대, E-TOP 프로그램 등 적극 추진
- 산업, 건물, 수송, 가정 부문 등의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자금 및 세제 지원
- 에너지다소비사업장에 대한 정밀진단 및 기술지원 확대
  - 연 2천TOE이상 에너지다소비사업장에 대한 3년 주기의 에너지진단을 의무화(05년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개정)하고 관련기술을 집중 지원

### □ 에너지 공급부문 온실가스 감축

- 대규모 주택단지, 산업단지 등을 대상으로 열과 전기를 일괄 생산하여 공급하는 열병합발전 확대
  -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장 증설(5개) 및 대규모 신규택지개발지구내 지역난방 공급세대수를 총 1,650천세대로 확대(07년)하고, 경제성 확보방안과 기술개발확대를 포함한 소형열병합사업설비의 보급 확산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추진
- 태양광주택 10만호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제주도, 강원도, 경북을 중심으로 대규모 풍력단지를 조성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각종 지원의 대폭 확대
  -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 7%에서 10%로 상향조정하고 세액공제 대상품목도 확대
  - 민간자금의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유입을 유도

### □ 에너지 이용효율 개선

- 기준 평균연비에 미달하는 자동차의 판매억제를 위한 평균 에너지 소비효율제도 시행

- 에너지사용량이 많은 제품을 대상으로 최저효율기준 상향, 고효율 기자재 인증대상품목 확대,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표시제도 확대

#### □ 건물에너지 관리

- 신축건물에 대한 설계단계의 에너지절약기준 강화 및 건축물별 에너지 총량 관리
- 자원절약형 신도시 건설을 위한 기준 마련 및 신도시 건설시 적용

#### □ 수송·교통부문 에너지 관리

- 화물운송의 직거래와 공동 운송을 유도하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제도 운영
- 무정차 상태에서 자동징수하는 고속도로 통행료 전자지불시스템을 구축하고, 실시간으로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첨단도로교통체계 구축
- 대중교통 이용률 확대를 위하여 간선급행버스를 도입하고, 전용차로와 지능형 교통체계 등을 확대
- 하이브리드 차량 등 무·저공해 자동차와 경차보급 확대를 위한 각종 세제 감면 등 지원 지속추진 ('05년 환경부 350대 구매)

#### □ 환경·폐기물 부문 사업추진

- 공단·축산폐수 처리시설, 도시 하수처리장 확충을 통한 온실가스 발생 감축
- 폐기물 매립가스를 발전연료로 활용하고,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사업을 통해 온실가스 발생을 억제
- 생물자원을 이용한 바이오디젤 등을 수송용 연료로 보급

#### □ 농축산·임업 부문 사업추진

- 농경지에서 배출되는 메탄과 아산화질소의 감축기술 개발

- 메탄발생량이 낮고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한우 및 젓소용 사료 개발
- 가축 종류별 분뇨처리방법 개선을 통한 메탄배출 저감기술 개발
- 숲가꾸기, 도시숲 조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산림 흡수원 확충
- 산림의 유지와 보존을 위한 산림병해충 방제, 산불예방 활동 강화

### 3. 기후변화 적응기반 구축사업

#### □ 기후변화 모니터링 및 방제기반 확충

- 기후변화 탐지, 온실가스 감시기술 등 기후변화 정보수집을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 온실가스 자료의 신뢰성 확보
- 지구기후관측시스템(GCOS) 등 국제기후모니터링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
  - ※ GCOS : Global Climate Observation System
- 동아시아지역 기후변화 시나리오 작성과 이를 활용한 한반도 미래 기후변화 분석
- 조위관측소 증설로 해수면 상승에 대한 분석능력 제고
- 풍수해·대설·가뭄·폭염 등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대규모 자연재난 예방 및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진 방제시스템 구축

#### □ 생태계 및 건강 영향평가 관련 연구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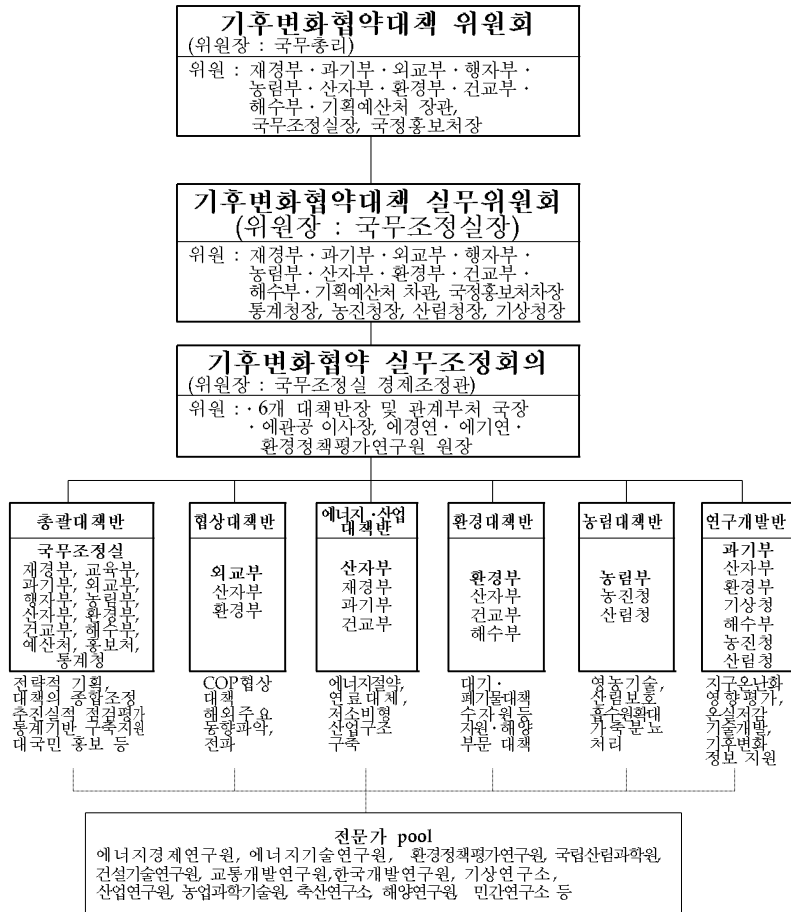
- 한국기후변화협의체(KPCC)\*를 통하여 기후변화 및 생태계 연구·분석 체계화
  - ※ 한국기후변화협의체(Korean Panel on Climate Change): 환경부와 기상청이 공동 구성·운영 중('05.5)
- 기후변화가 산림생태계, 연안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예측하여 장기 적응전략 수립
- 기후변화가 공중위생과 건강에 미치는 영향 연구

# V. 추진체계

## 1. 기후변화협약대응 정부추진체계

□ 「기후변화협약대책위원회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에 의해 정부대응 체계 구성·운영

< 기후변화협약 추진 체계도 >



□ 재원계획 : 총 166,024억원 ('05~'07년)

○ 부문별(단위: 억원)

구분	2005	2006	2007	계
협약 이행기반 구축사업	2,607	3,971	4,958	11,536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사업	40,227	49,236	64,831	154,294
기후변화 적응기반구축사업	42	54	98	194
계	42,875	53,260	69,886	166,024

○ 재원별

- 국비 : 78,517억원
- 지방비 : 5,438억원
- 민간재원 : 82,069억원

※ 제3차 종합대책은 3개년 계획이므로, 05년~07년까지의 재원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07년중 제4차 종합대책 수립시 08년~10년까지의 계획을 마련할 계획

□ 추진일정

- 제3차 종합대책에 포함된 91개 세부과제별 계획대로 시행(05~07)하고, 계속사업의 경우 개별사업 계획에 따라 지속 추진
- 제3차 종합대책 추진상황, 국제동향, 제2차 공약기간 의무부담 협상 추이 등 국내여건과 대외상황을 고려하여 제4차 종합대책의 제반 일정 및 추진방향 결정
- 07년 : 제4차 종합대책(안) 작성안 마련
- 08~10년 : 제4차 종합대책 시행

□ 성과지표

세부과제	성과지표
4-1-1. 협약 이행기반 구축	온실가스 감축잠재량 분석 분야 수
4-1-2. 분야별 온실가스 감축 사업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록건수, 감축규모
4-1-3. 기후변화 적응기반 구축사업	-

## 오존층 보호를 위한 대응대책 강화

2006. 10

- 소관부처 : 산업자원부
- 협조부처 : 환경부

### < 요약 >

####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1985년 남극의 오존홀(Ozone Hole)이 관측됨에 따라 국제사회는 CFCs(CFC-11, 12, 113, 114, 115) 및 할론(Halon-1211, 1301, 2402)의 생산 및 소비량 감축을 위한 강력한 규제조치 필요성에 대해 동감하여 '87. 9. 16일 『오존층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The Montreal Protocol on the substance that deplete e the Ozone Layer)』를 채택( '89.1.1.일부터 발효)
  - 이러한 성층권 오존층 보호를 위한 국제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지난 '92.2.27일 비엔나 협약 및 몬트리올의정서에 가입('92년부터 발효)
- 2002년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WSSD)에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지속가능 발전 국가전략과 이행계획을 수립토록 권고한 바, 오존층파괴의 문제는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로서 성층권 오존층의 회복을 위한 몬트리올의정서의 성공적인 이행과 오존층파괴물질의 단계적 감축 및 전폐 방안이 이행계획 과제로 선정
- 오존층파괴물질의 성공적인 감축을 통해 성층권 오존층을 보호하고 유해한 태양 자외선(UV-B)으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한편, 백내장 환자 및 피부암 환자수를 줄여 사회적 비용 지출을 감소

#### □ 현황과 전망

- 몬트리올의정서는 당초 채택 ('87.9.16)후 정기적인 과학적, 기술적 평가를 토대로 4회의 개정의정서를 채택하여 규제물질을 추가하고 5회의 조정을 거쳐 감축 및 전폐일정을 단축
  - 현행 총96개 규제물질에 대해 생산량 및 소비량 전폐일정을 확정
- 우리나라는 '92년 CFCs 및 Halons소비량이 국민 1인당 0.3kg을 초과하여 선진국으로 분류되었으나, '93년 소비량을 국민 1인당 0.3kg

이내로 줄임으로써(20,693ODP 톤→13,217ODP 톤) '94년 제6차당사국총회에서 개도국으로 재분류되었으며, '95년 제7차 당사국회의(비엔나 조정)에서 개도국의 주요 오존층파괴물질 (CFCs 및 Halons) 전폐기한이 2010년까지 유예됨

- 우리나라는 의정서 이행을 위해 '91. 1. 14에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여 '92. 1. 1부터 시행하여
- 의정서 규제물질별 감축의무 이행을 위해 매년말 <특정물질수급조정심의회>에서 다음년도의 국내 특정물질 생산, 수입, 수출량 및 판매량을 배정하여 허가·승인하고 있음
- 선진국의 경우 2030년 전폐 대상인 HCFCs를 제외한 모든 규제물질의 생산량 및 소비량을 전폐하였으며, 향후 성층권 오존층의 회복을 위해서는 개도국들의 규제조치 준수가 필수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

□ 비전과 목표

- 궁극적으로 오존층파괴물질의 생산량 및 소비량을 전폐하고, 성층권(Stratosphere) 오존층의 회복을 통해 유해 자외선으로부터 생명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 이를 위해 몬트리올 규제조치에서 정한 오존층 파괴물질의 생산량 및 소비량 감축 및 전폐 규제조치를 준수하고, 오존층파괴물질 포함제품 및 장비로부터의 오존층파괴물질 대기 중 방출을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추진 전략

- 오존층파괴물질 수출·입 Quota 허가 제도 강화
  - 의정서 및 의정서 이행을 위한 국내법에 의거 매년 국내 특정물질 생산량 및 소비량을 업체별로 배정하고, 생산·수입된 실적을 분기별로 보고토록 하여 이행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의정서 사무국에 국내 실적을 보고하여야 하는 바

- 의정서 감축일정 및 국내 생산 및 소비량 감축계획에 따라 지속적인 감축 추진
  - ※ 감축일정 : CFC, 할론 등 주요 오존층 파괴물질의 경우는 '10년까지, HCFC의 경우 2040년까지 생산 및 소비를 전폐하여야 함
- 국내 특정물질 제조업자·수입업자의 생산량·수입량·판매량 실적을 반기별로 점검하여 감축현황을 관리
- 향후 오존층파괴물질의 생산량 및 소비량 감축에 따른 국내 공급 부족 및 외국과의 가격격차로 인한 불법 무역 발생 가능성이 증가할 예정인 바
  - 사전 수입요건 확인을 강화하고 수출입 실적에 대하여 관세청과의 긴밀한 정보교환 시스템을 구축하여 수입되는 특정물질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대체물질 이용 촉진을 위한 자금 지원 강화

- 우리나라 오존층파괴물질 생산량 및 소비량은 정부의 Quota 허가 제도의 시행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많은 양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임

※ 국내 특정물질 사용업체수 ('03) : 1,250개

- 몬트리올의정서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생산량 및 수입량에 대한 강제적인 감축 정책과 더불어 실제 사용 분야의 오존층파괴물질을 대체물질 사용 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지원책도 필요
- ※ 몬트리올의정서의 국내이행을 위해 '91.1월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이 제정('92.1.1부터 시행)되고, 동법에 의해 특정물질의 원활한 감축 추진을 위한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이 설치됨('92년부터 운용)
  - 동 기금을 활용하여 대체물질 개발 및 대체물질 이용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대체 전환 시 필요한 시설 대체 자금을 대해 융자 지원
  - 오존층파괴물질을 세정제로 사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특성에 적합한 대체 세정제 및 대체 세정 시스템을 지도. <아하 삭제>

○ 오존층파괴물질 파괴 기준 마련

- 오존층파괴 물질의 경우 성층권 오존층 파괴뿐만 아니라 지구 온실가스로서 (green house gas) 기후변화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오존층파괴물질의 대기 중 방출을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오존층파괴물질 포함 제품(냉장고, 에어컨, 자동차 등) 폐기시 발생된 오존층 파괴물질은 회수 재처리과정을 거쳐 재활용 되거나, 폐기 되어야 함
  - 또한 향후 불법 수입되거나 생산 Quota를 초과하여 생산된 오존층파괴물질도 파괴 되어야 함
- 오존층파괴물질은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한 물질이므로 일반 소각과 같은 방법으로 폐기시 2차 환경 오염이 발생되므로 엄격한 기준에 따라 파괴되어야 하며, 파괴 기준 및 파괴 방법은 당사국 총회에서 결정된 기준을 준용하여
-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오존층파괴물질의 파괴 기준 및 방법을 고시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파괴 기준 및 파괴 방법을 마련하여 고시할 계획임
- HCFC 생산량 및 소비량 감축 방안 마련
- HCFCs는 CFC 중간 대체물질로 사용되고 있으나, 오존층 파괴물질로 향후 규제대상 품목으로, 향후 의정서상 규제일정 등에 대한 논의 동향을 토대로 중장기적 연차별 국내 HCFC 생산량 및 소비량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야 함
- 현행 몬트리올의정서상의 HCFC 개도국 규제일정에는 동결조치 후 중간 감축 일정 없이 전폐 일정만 수립된 상황이며, 향후 대체물질의 개발 및 적용 현황에 따라 HCFC 중간 감축 일정이 마련될 수도 있음
- ※ 몬트리올의정서상 우리나라를 포함한 개도국의 경우 HCFCs (40종)에 대해 2016년 소비량을 기준으로 2040년 전폐토록 하고 있으며, 선진국의 경우 몬트리올의정서에서 정한 HCFC 감축 및 전폐 일정 보다 조기 전폐 일정을 마련하여 시행중임

## 목 차

<b>I. 추진배경 및 필요성</b> .....	105
<b>II. 현황과 전망</b> .....	109
<b>III. 비전과 전략</b> .....	116
<b>IV. 중점 추진과제</b> .....	118
<b>V. 추진체계</b> .....	132

# I. 추진배경 및 필요성

## 1. 추진배경

### < 국제적 논의과정 : 몬트리올의정서를 중심으로 >

- 1974년 F. Sherwood Rowland 와 Mario J. Molina 교수가 대기권내에서 CFC 및 Halon이 파괴될 때 대기 중으로 방출된 염소원자 (Chlorine atoms) 및 브롬원자(Bromine atoms)가 오존층을 파괴한다는 사실을 발견함에 따라
  - 1977년 국제환경계획(UNEP)과 세계기상기구(WMO, 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가 오존층협력위원회 (CCOL, Coordinating Committee of the Ozone Layer)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오존파괴에 대해 평가하고
  - 1985년 3월 오존층 연구·관측 체계 마련을 위한 정부간 협력 촉구, CFC 생산량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정보 교환 등을 골자로 하는 『오존층보호를위한 비엔나협약(The Vienna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the Ozone Layer)』을 채택함
- 그러나 1985년 남극의 오존홀(Ozone Hole)이 관측됨에 따라 국제사회는 CFCs(CFC-11, 12, 113, 114, 115) 및 할론(Halon-1211, 1301, 2402)의 생산 및 소비량 감축을 위한 강력한 규제조치 필요성에 대해 동감 하여
  - '87. 9. 16일 『오존층파괴물질에관한 몬트리올의정서(The Montreal Protocol on the substance that deplete e the Ozone Laye)r』를 채택하여 '89.1.1.일부터 발효

### < 국내 추진배경 >

- 이러한 성층권 오존층 보호를 위한 국제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지난 '92.2.27일 비엔나 협약 및 몬트리올의정서에 가입('92.5.27일부터 발효)하여 의정서상의 특정물질 생산 및 소비량 감축의무를 준수하고 있으며
  - ※ 오존층파괴물질에관한 몬트리올의정서는 비 당사국에 대해 무역 규제 적용
- 또한 2002년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WSSD)에서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지속가능 발전 국가전략과 이행 계획을 수립토록 권고한 바
  - 오존층파괴의 문제는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로서 성층권 오존층의 회복을 위한 몬트리올의정서의 성공적인 이행과 오존층파괴물질의 단계적 감축 및 전폐 방안 수립을 이행계획 과제로 선정

## 2. 필요성

- 오존층파괴물질에관한 몬트리올의정서는 2005.7.22일 현재 189개국 가입하고 있으며, 4회에 걸쳐 개정되었으며
  - 정기적인 과학적·기술적 평가를 토대로 규제물질의 추가하거나 전폐 일정을 제 검토키로 함에 따라 현재 까지 4회의 개정(Amendment)을 통해 규제물질을 추가하거나 최종 전폐 일정을 마련하였으며, 5회의 조정(Adjustment)을 통해 규제물질의 생산량 및 소비량 감축·전폐일정을 조정함
    - ※ 현재 총 96개 규제물질에 대해 생산량(Production) 및 소비량(Consumption)을 규제

< 몬트리올의정서 및 개정의정서 비준현황 >

구분	비엔나 협약	몬트리올 의정서	런던 개정서	코펜하겐 개정서	몬트리올 개정서	북경개정 의정서
채택일	85.3.22	87.9.16	90.6.29	92.11.25	97.9.15	99. 12. 3
발효일	88.9.22	89.1.1	92.8.10	94.6.14	'99.11.10	'02.2.25
가입국수	190 (28)	189(46)	179	168	133	94
우리나라 가입	92.2.27	92.2.27	92.12.10	94.12.2	99.8.19	'04. 1. 9
우리나라 발효	92.5.27	92.5.27	93.3.10	95.3.2	99.11.19	'04. 4. 8

\*오존사무국 ('05.7.22일 현재)

□ 몬트리올의정서는 오존층파괴물질의 생산량 및 소비량 감축·전폐(Reduction and phase-out)와 관련하여 선진국(Developed country)과 개도국(Developing country)에 대해 차별화된 감축 일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개도국에 대해 선진국 규제일정보다 10년의 유예기간을 적용하고 있음

○ 선진국의 경우 2030년 전폐 대상인 HCFCs를 제외한 모든 규제물질의 생산량 및 소비량을 전폐하였으며, 향후 성층권 오존층의 회복을 위해서는 개도국들의 규제조치 준수가 필수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임

※ 선진국의 경우도 일부 규제물질에 대해 당사국 총회의 승인을 받아 필수용도(Essential Use)로 생산가능

○ 개도국의 경우 주요 오존층파괴물질 (CFCs, Halons)의 생산량 및 소비량을 '95~'97년 평균 생산량 및 소비량을 기준으로 '99년부터 동결 조치가 첫 적용 되었으며 '05년부터 50% 감축, '07년 까지 85% 감축하고 '10년까지 전폐하여야 함

□ 우리나라는 모든 개정의정서를 비준한 상태로, 의정서에서 정한 규제물질의 생산량 및 소비량 감축 및 전폐시기 등 규제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동 규제조치 미이행국으로 분류될 경우 국가 신인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의정서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모든 당사국은 매년 오존층파괴물질의 생산량 및 소비량을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행위원회(Implementation Committee)에서 의정서 규제조치 이행 여부를 검토

○ 몬트리올의정서 규제조치의 원활한 국내 이행을 위해 정부에서는 지난 '91.1.14일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을 제정하고 오존층파괴물질의 수출입허가 제도 등을 시행하고 있음

○ '04년말 기준으로 국내 특정물질 생산량(제조원료용 제외)은 오존층 파괴지수환산톤으로 10,268톤이며, 소비량은 5,573톤으로 의정서 감축일정에 따라 생산·소비를 줄이고 있음

### 3. 기대효과

□ 의정서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오존층파괴물질의 국내 생산량 및 소비량 자료를 제출하고 있는바, 의정서 규제조치의 이행을 통해 국가 신인도를 향상 시키고, 국제 환경 협약에 성실히 동참하고 있다는 인식 제고

□ 오존층파괴물질의 감축 및 전폐를 통해 국내 관련 산업(가전, 자동차, 기계등) 대체 물질 이용 시스템으로 전환토록 유도하고, 환경 친화적인 상품을 생산함으로써 수출 증대 효과 기대

□ 오존층파괴물질의 성공적인 감축을 통해 성층권 오존층을 보호하고 유해한 태양 자외선(UV-B)으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한편, 백내장 환자 및 피부암 환자수를 줄여 사회적 비용 지출을 감소

## II. 현황과 전망

### 1. 현황

- 오존층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 채택 ('87.9.16)후 정기적인 과학적, 기술적 평가를 토대로 다른 규제조치를 마련하여 삽입하거나 규제대상 물질을 추가하는 개정의정서(Amendment)를 4회 채택

< 개정의정서 주요 내용 >

구분	채택일	주요내용
런던개정의정서	'90.6.29	기타 CFC (CFC-13, 111, 112, 121, 212, 213, 214, 215, 216, 217)와 사염화탄소 (CTC, Carbon Tetra Chloride) 및 메틸클로로포름(Methyl Chloro Form)을 규제물질로 추가
코펜하겐개정의정서	'92.11.25	Methyl Bromide, HBFCs, HCFCs를 규제물질로 추가
몬트리올개정의정서	'97.9.15	Methyl Bromide의 최종전폐 일정을 수립하고, 모든 규제물질에 대해 수출입 허가제도 시행토록 함.
북경개정의정서	'99.12.3	'02 생산량 및 소비량을 전폐하여야 하는 Bromochloromethane을 신규 규제물질로 추가하였으며, HCFCs 생산량 규제일정 및 무역규제에 관한 규제조치를 신설

- 또한 전폐일정을 가속화하기 위해 규제일정이 5회 조정 (Adjustment)됨

< 조정 주요 내용 >

구분	채택일	주요내용
런던조정	'90.6.29	-CFCs, Halon 전폐 일정 설정 : 2000년 -기타 CFC, CTC를 2000년까지, 1,1,1-TCE를 2005년까지 전폐키로 함.
코펜하겐 조정	'92.11.25	-CFCs, Halon 전폐 일정을 당초 2000년에서 각각 1996년 및 1994년으로 단축 -기타 CFC, CTC, 1,1,1-TCE 전폐 일정을 당초 2000년 및 2005년에서 1996년으로 단축. -HCFC 소비량 감축 기준수량 및 감축·전폐 일정 설정(선진국) -MB 감축 기준수량 및 동결 일정 설정(선진국).
비엔나조정	'95.12.7	-개도국의 부속서 가 및 부속서 나 규제물질 전폐 기한을 런던개정의정서에서 규정한 선진국 규제 일정보다 10년 연기 (2010년 및 2015년) -선진국의 HCFC 소비량의 기준수량 조정 및 개도국의 HCFCs 소비량 규제일정 설정 -MB 오존파괴지수 조정 : 0.7→0.6 -선진국의 MB 전폐 일정 설정 (2010년) 및 개도국의 기준수량 및 동결 일정 설정.
몬트리올 조정	'97.9.15	-선진국의 MB 전폐 일정 단축 (2010년→2005년) 및 개도국의 MB 전폐일정 설정 (2015년)
북경제정의정서	'99.12.3	-오존층파괴물질의 개도국의 기본적 수요 충족을 위한 추가 생산량 감축 일정 조정

- **현행 총96개 규제물질에 대해 생산량 및 소비량 전폐일정을 확정**
- 또한 몬트리올의정서 규제조치의 원활한 국내 이행을 위한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국내 특정물질 생산·소비 연차별 감축계획을 마련하고
  - 이에 따라 매년 특정물질의 물질별 생산·소비량 및 배정량을 확정하고, 업체별 생산·수입 및 판매계획을 허가 또는 승인하고 있음

< 물질별 · 연차별 감축계획 >

(단위 : 오존파괴지수환산톤)

구 분	98	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CFC	기준량		9154					4577		1373			0
	배정량	8733	8000	7328	6712	6148	5631	5158	4577	2975	1373	915	458
할론	기준량				3676			1838					0
	배정량	3805	3428	3088	2782	2506	2258	2034	1838	1471	1104	737	370
사업화 탄소	기준량							96					0
	배정량				638	397	247	154	96	77	57	38	19
111-TC E	기준량					513		359					154
	배정량				631	569	513	429	359	303	256	216	182

\* 오존파괴지수환산톤=실량톤×물질별 오존파괴지수

- 몬트리올의정서는 오존층파괴물질의 생산량 및 소비량 감축·전폐 (Reduction and phase-out)와 관련하여 선진국(Developed country) 과 개도국(Developing country)에 대해 차별화된 감축 일정을 적용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개도국 규제일정을 따름

< 주요 오존층파괴물질 국내 감축일정 >

구 분	감축기준 (기준년도)	감 축 일 정(개도국)						
		동결	20%	30%	50%	70%	85%	전폐
부속서 A물질	CFC	99.1.1			05.1.1		07.1.1	10.1.1
	Halon	02.1.1			05.1.1			10.1.1
부속서 B물질	사업화탄소						05.1.1	10.1.1
	111-TCE	03.1.1		05.1.1		10.1.1		15.1.1

\* 선진국의 경우 CFC, 사업화탄소, 111-TCE는 96.1.1부터, 할론은 94.1.1부터 전폐

□ 몬트리올의정서 규제대상 물질 및 규제일정('05.10월 기준)

규제물질	오존파괴지수	선진국	개도국	용도	비고
프레온 (CFC-11,12,113,114, 115)	0.6 ~1.0	'96.1.1부터 전폐 (필수용도 제외)	'96~'97평균 생산 및 소비량 기준 '99.1.1부터 동결 '06.1.1부터 50%삭감 '07.1.1부터 85%삭감 '10.1.1부터 전폐	냉장고·에어컨 냉매, 단열재 발포제 전자제품 세정제	CFC-11,12는 국내 (주)울산화학에서 생산
할론 (Halon-1211,1301, 2402)	3.0 ~10.0	'94.1.1부터 전폐 (필수용도 제외)	'96~'97평균 생산 및 소비량 기준 '02.1.1부터 동결 '06.1.1부터 50%삭감 '10.1.1부터 전폐	소화제	하론-1211,1301은 국내 한주케미칼주에서 생산
기타프레온 (CFC-13등 10개 품목)	1.0	'96.1.1부터 전폐	'98~'00평균 생산 및 소비량 기준 '03.1.1부터 20%삭감 '07.1.1부터 85%삭감 '10.1.1부터 전폐	혼합냉매등	국내 소비량은 거의 없음
사업화탄소	1.1	'96.1.1부터 전폐	'98~'00평균 생산 및 소비량 기준 '05.1.1부터 85%삭감 '10.1.1부터 전폐	CFC 제조용원료 용매	삼성정밀화학 생산
1,1,1-TCE (MCF)	0.1	'96.1.1부터 전폐	'98~'00평균 생산 및 소비량 기준 '03.1.1부터 동결 '06.1.1부터 30%삭감 '10.1.1부터 70%삭감 '15.1.1부터 전폐	HCFC 제조용 원료, 금속류등의 세정제	
염화불화탄화수소 (HCFC 40개 품목)	0.001 ~0.5 2	'89HCFC 소비량'89CFC 소비량2.8% '96.1.1부터동결 '04.1.1부터 35%삭감 '10.1.1부터 65%삭감 '15.1.1부터 90%삭감 '20.1.1부터 99.5%삭감 '30.1.1부터 전폐	'15 생산 및 소비량 기준 '16.1.1부터 동결 '40.1.1부터 전폐	냉장고·에어컨 냉매, 단열재 발포제 전자제품 세정제	HCFC-22,141b, 142b는 국내 (주)울산화학에서 생산
HBFC (34개 품목)	0.02 ~14.0	'96.1.1부터 전폐	'96.1.1부터 전폐		국내 소비량은 없음
BCM	0.12	'02.1.1부터 전폐 (필수용도 제외)	'02.1.1부터 전폐	세정제	국내 소비량은 없음
메틸 브로마이드	0.6	'91년 생산 및 소비량 기준 '96.1.1부터 동결 '99.1.1부터 25%삭감 '01.1.1부터 50%삭감 '03.1.1부터 70%삭감 '05.1.1부터 전폐 (검역 및 선적전처리용도 제외)	'96~'98평균 생산 및 소비량 기준 '02.1.1부터 동결 '05.1.1부터 20%삭감 '15.1.1부터 전폐	토양 살균, 농산물 검역 및 선적전 처리용도	우리나라는 전량 검역용으로 사용

- 우리나라는 '92년 CFCs 및 Halons 소비량이 국민 1인당 0.3kg을 초과하여 선진국으로 분류되었으나, '93년 소비량을 국민 1인당 0.3kg 이내로 줄임으로써(20,693ODP 톤→13,217ODP 톤) '94년 제6차당사국총회에서 개도국으로 재분류되었으며, '95년 제7차당사국회의(비엔나 조정)에서 개도국의 주요 오존층파괴물질(CFCs 및 Halons) 전폐기한이 2010년까지 유예됨

## 2. 전망

- 우리나라는 의정서 이행을 위해 모든 규제물질에 대해 수출입 허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 주요 오존층파괴물질(CFCs 및 Halons)의 생산 및 소비가 2010년까지 유예됨에 따라, 동 물질의 단계적 전폐를 추진하여 대체물질 사용을 유도하고 시장혼란을 최소화하고 있음
    - ※ HCFCs의 경우 의정서 제4조의 나 규정에 따라 '05년부터 수출입 허가 대상 물질에 포함됨
- 또한 의정서 규제물질별 감축일정 이행을 위해 매년말 <특정물질수급조정심의회>에서 다음년도의 특정물질 생산·수입량 및 판매계획을 심의·의결
  - ※ 특정물질수급조정심의회(법률 시행령 제13조에 근거)
  - ※ 산자부 생활산업국장(위원장), 관계부처(재정경제부·외교통상부·행정자치부·과하기술부·환경부) 및 생산·수입자(단체), 사용자(단체), 교수 등 21명 이내로 구성
- 의정서 규제조치에 따라 국내에서 생산되거나 소비되는 오존층파괴물질의 생산량 및 소비량 기준년도(Base level)가 확정된바, 동 기준년도를 기준으로 의정서에서 정한 생산량 및 소비량 기준년도를 준수할 수 있도록 매년 오존층파괴물질의 생산량, 수입량, 수출량을 배정 관리 하여 의정서 규제조치를 이행토록 하고 있음

## < 우리나라의 물질별 기준년도 >

(단위 : 오존파괴지수환산톤)

물질명		구분	1995	1996	1997	기준년도(평균)
부속서 A물질	CFC	생산량	9,746	8,621	9,239	9,202
		소비량	10,039	8,221	9,203	9,154
부속서 B물질	Halon	생산량	3,400	3,679	3,950	3,676
		소비량	3,400	3,679	3,950	3,676
물질명		구분	1998	1999	2000	기준년도(평균)
부속서 B물질	사염화탄소	생산량	6,183	2,608	2,108	3,633
		소비량	191	128	1,595	638
	111-TCE	소비량	364	600	575	513

- \* 부속서 A 물질의 기준년도는 '95~'97년 평균 생산량 및 소비량이며, 부속서 B 물질의 기준년도는 '98~'00년 평균 생산량 및 소비량임
- \* 생산량 = 총생산량-다른물질의 제조용원료로 사용된량
- \* 소비량 = 생산량+수입량-수출량-제조용원료로 사용된량
- \* HCFC의 경우 의정서 규제일정상 2015년 생산량 및 소비량을 기준으로 2016년 동결 및 2040년 전폐되므로 향후 단계적 감축 계획을 마련할 예정
- \* HBFCs의 경우 '96년부터, BCM의 경우 '02년부터 생산 및 수입금지
- \* MB의 경우 의정서 제8의 3 라 의 규정에 따라 규제조치에서 제외되는 검역 및 선적전처리(QPS, Quarantine and Pre-Shipement)용으로 사용됨

- 정부에서는 의정서상 규제일정을 따를 경우 급격한 생산·소비량 감축으로 산업계의 대응이 곤란하므로, 연차별 감축계획을 마련하여 감축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관련 기업들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있음
  - 오존층파괴물질의 생산량은 의정서 규제조치에서 정한대로 감축하고, 소비량은 연차별로 단계적 감축을 추진
  - 부속서A 물질(CFC, Halon)의 소비량은 '99년부터 '05년(의정서상 50% 감축년도)까지 매년 10% 정도씩 감축하고, '05년후 '10년까지 연평균 20% 감축

- 부속서B 물질 (사업화탄소, 1,1,1-TCE)의 소비량은 2002년부터 매년 일정률씩 감축

□ 국내 오존층파괴물질의 생산량 및 소비량 감축 계획에 따라 의정서 규제조치에서 정한 국내 생산량 및 소비량을 원활히 감축함으로써 몬트리올의정서를 성공적으로 이행 할 수 있을 것임

< 물질별 · 연차별 생산량 및 소비량 감축계획 >

(단위 : 오존파괴지수환산톤\*)

물 질	구 분	기준수량	99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2	2015	
CFC	생산량	한도량 <sup>2)</sup>	9,202	9,202	9,202	9,202	9,202	4,601	4,601	1,380	1,380	1,380	0	0	0
		배정량 <sup>3)</sup>		7,238	7,507	6,838	9,152	4,601	4,601	1,380	1,380	1,380	0	0	0
	소비량	기준량	9,154	9,154	9,154	9,154	9,154	4,577	4,577	1,373	1,373	1,373	0	0	0
		배정량		7,403	6,646	5,172	5,012	4,577	2,975	1,373	915	458	0	0	0
할론	생산량 (소비량)	한도량	3,676	-	3,676	3,676	3,676	1,838	1,838	1,838	1,838	1,838	0	0	0
		배정량		2,196	2,188	2,258	1,408	1,838	1,470	1,104	737	370	0	0	0
사업화 탄소	생산량	한도량	3,633	-	-	-	-	545	545	545	545	545	0	0	0
		배정량		2,608	2,284	796	△292	77	545	545	545	545	0	0	0
	소비량	한도량	638	-	-	-	-	96	96	96	96	96	0	0	0
		배정량		127	710	△57	△1,275	△371	77	57	38	19	0	0	0
111-TCE	소비량	한도량	513	-	-	513	513	359	359	359	359	359	154	154	0
		배정량		600	564	499	428	359	303	256	216	182	154	92	0

\*1 : 오존파괴지수 환산톤=실량톤×물질별 오존파괴지수

\*2 : 한도량은 의정서상의 규제 조치 준수를 위한 수량을 의미함(예, CFC의 경우 기준수량의 50% 및 기준수량의 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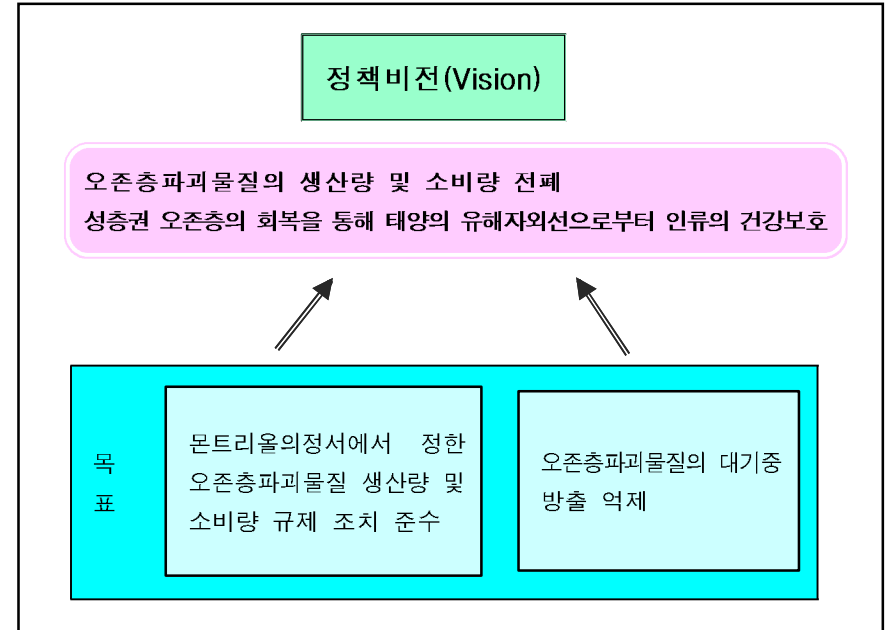
\*3 : '99~2004년 배정량은 실적치이며, '05년 이후 부터는 배정계획량임

### III. 비전과 전략

#### 1. 비전과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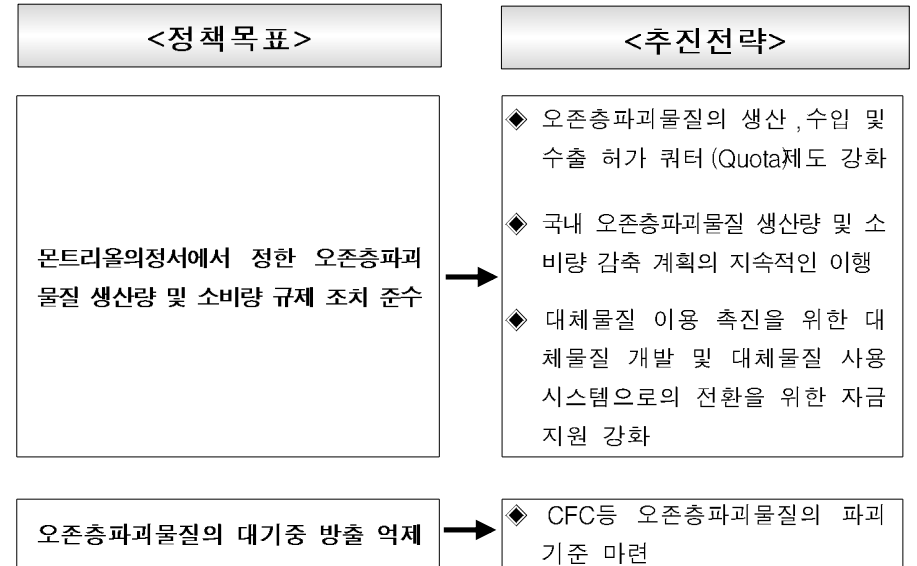
□ <오존층보호등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대응대책 강화> 과제의 비전은 궁극적으로 오존층파괴물질의 생산량 및 소비량을 전폐하고, 성층권(Stratosphere) 오존층의 회복을 통해 유해 자외선으로부터 생명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

□ 이를 위해 몬트리올 규제조치에서 정한 오존층 파괴물질의 생산량 및 소비량 감축 및 전폐 규제조치를 준수하고, 오존층파괴물질 포함제품 및 장비로부터의 오존층파괴물질 대기중 방출을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2. 추진 전략

- 몬트리올의정서에서 정한 오존층파괴물질의 생산량 및 소비량 규제 조치 준수를 위해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 규제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의정서상의 규제물질을 국내 법에 포함시키고,
  - 모든 규제물질의 생산, 수입 및 수출에 대해 허가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국내 생산량 및 소비량을 통제하고 오존층파괴물질의 불법무역을 방지
  - HCFCs(40종)의 경우 법 시행시 부터 규제물질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몬트리올의정서 제4조의 나에 따라 '05.1.1일부터 수출입 허가대상에 포함
- 또한, 의정서 규제조치에 따른 경우 생산량 및 소비량이 급격히 감소되어 관련 기업의 대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연차별 단계적 감축방안을 '99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오존층파괴물질 사용업체들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
  - 오존층파괴물질의 사용량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 오존층파괴물질 사용 설비를 대체 물질 사용 시스템으로 전환토록 유도하고
  - 이를 위해 대체물질을 개발하고 대체물질 이용을 위한 시설대체 자금 등을 지원하고, 향후 오존층파괴물질의 생산량 및 소비량 감축 폭이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임
- 성층권 오존층의 회복을 위해서는 신규로 생산되거나 수입되는 규제물질의 감축뿐만 아니라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제품의 수리·보충 및 폐기 시 오존층파괴물질이 대기 중으로 방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 이를 위해 오존층파괴물질의 대기 중 방출을 금지토록 하고, 오존층파괴물질 포함 제품 및 장비의 폐기 시 오존층을 파괴하지 않고 회수·재생하거나 파괴(Destruction) 토록 하기 위해 국제기준에 준하는 파괴 기준을 마련할 계획임



## IV. 중점 추진 과제

### 1. 추진과제 선정 배경

- 대부분의 오존층파괴물질이 2010년부터 생산 및 수입이 금지됨에 따라 (1,1,1-TCE의 경우 2015년 전폐) 2005년 이후부터 해당 규제물질의 생산 및 소비량이 급격하게 감축 되는 바 지속적인 의정서 이행을 위한 노력 필요
  - 오존층파괴물질 생산량 및 소비량 감축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오존층파괴물질의 불법 무역이 이루어 질수 있으므로 현행 오존층 파괴물질의 수출입 허가 제도를 보완하여 국내 오존층파괴물질의 공급(생산, 수입 및 수출)을 통제함으로써 의정서 규제 조치를 지속적으로 준수

- 국내 오존층 파괴물질의 공급량 감소에 따라 관련 산업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관련 산업의 대체물질 이용 시스템으로의 대체 전환 촉진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국내 특정물질의 생산량 및 소비량을 원활히 감축 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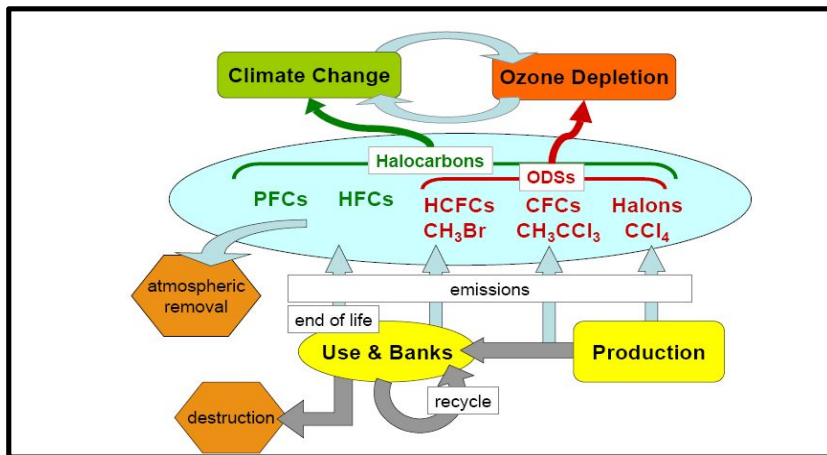
□ 중간 대체물질인 HCFC 도 2016년부터 규제가 시작되므로 HCFC 생산량 및 소비량 감축을 위한 국내 사용 실태를 토대로 단계적 감축 방안 마련 필요

□ 의정서 규제조치의 지속적인 이행과 오존층파괴물질의 대기 중 방출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제도와 더불어 추가 적인 제도 보완 등이 필요

- 오존층파괴물질 포함 제품의 폐기시 발생하는 오존층파괴물질의 대기 중 방출을 억제하기 위해 오존층파괴물질의 파괴 기준 마련 필요

※ 오존층파괴물질 포함 제품 : 냉장고, 단열재, 에어컨, 소화기등

< 오존층 파괴와 기후변화의 관계 >



## 2. 추진과제 선정 결과

### <추진과제별 이행계획>

#### □ 오존층파괴물질 수출·입 Quota 허가 제도 강화

##### ○ 현황과 여건

- 몬트리올의정서 규제조치의 원활한 국내 이행을 위해 국내법 제정시('92년) 모든 오존층파괴물질에 대해 생산, 수입 및 수출 허가 제도를 시행

※ 대체물질인 HCFCs에 대해서는 2005.1.1.일부터 시행

- 모든 규제물질에 대한 생산, 수입 및 수출 Quota 제도를 통해 의정서에서 정한 물질별 기준한도를 준수하여 국내 생산량 및 소비량 배정

- 2010(2015)년 전폐되는 CFCs, Halons, CTC, 111-TCE 물질의 신규제조업허가(설비증설 포함)를 금지하고, 신규 수입업자의 진입을 불허하고 있음

- 또한, 몬트리올의정서 제4조의 나 규정에 따라 모든 의정서 당사국은 모든 규제물질에 대해 수출입 허가 제도를 시행하여야 함

- 업체별로 배정된 특정물질 수입 시 정부의 허가를 받은 후 매 수입 시 요건확인을 거쳐 수입토록 하여 특정물질 수입·사용량이 Quota내에서 규제되도록 관리하고 있음

※ 요건확인기관 : 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

##### ○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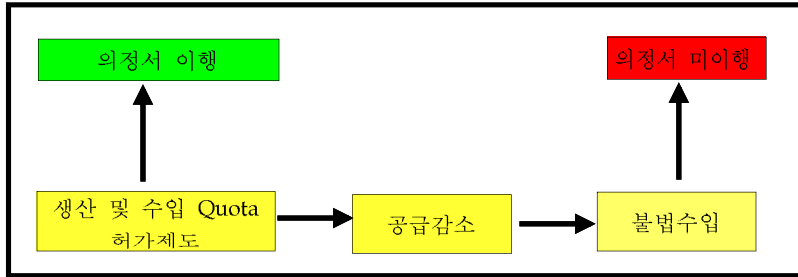
- 향후 오존층파괴물질의 생산량 및 소비량 감축에 따른 국내 공급 부족으로 오존층파괴물질에 대한 불법 무역 발생 가능성 있음

- 오존층파괴물질의 수입시 정부의 허가 없이 수입하거나, 정부 허가를 받은 수입업자가 서류를 위조하여 서류상의 물질과는 다른 물질을 수입하는 경우 발생 가능

- 향후 국내 오존층파괴물질의 생산량 및 소비량이 의정서 규제조치에 따라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불법무역 발생 소지가 많음

- 불법무역으로 인해 국내 소비량 감축계획 뿐만 아니라 의정서 기준수량을 위반할 수 있는 문제이며 이로 인해 의정서 미이행국으로 분류될 수 있음

< 생산 및 수출입 허가제도와 의정서 이행 >



○ 개선방안

- 국내 생산량 및 소비량 감축 계획에 따른 물질별, 업체별 배정 지속 추진
  - 산업자원부에서 지난 1999년 의정서 규제조치 이행을 위해 마련한 국내 특정 물질 생산량 및 소비량 단계적 감축일정에 따라 연도별 오존층파괴물질 생산량 및 수입량을 배정

(단위 : 오존파괴지수환산톤<sup>1)</sup>)

물 질	구 분	기준수량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2	2015	
CFC	생산량	한도량 <sup>2)</sup>	9,202	9,202	4,601	4,601	1,380	1,380	1,380	0	0	0
		배정량 <sup>3)</sup>		9,152	4,601	4,601	1,380	1,380	1,380	0	0	0
	소비량	기준량	9,154	9,154	4,577	4,577	1,373	1,373	1,373	0	0	0
		배정량		5,012	4,577	2,975	1,373	915	458	0	0	0
할론	생산량 (소비량)	한도량	3,676	3,676	1,838	1,838	1,838	1,838	1,838	0	0	0
		배정량		1,408	1,838	1,470	1,104	737	370	0	0	0
사업화 탄소	생산량	한도량	3,633	-	545	545	545	545	545	0	0	0
		배정량		△292	77	545	545	545	545	0	0	0
	소비량	한도량	638	-	96	96	96	96	96	0	0	0
		배정량		△1,275	△371	77	57	38	19	0	0	0
111-IC E	소비량	한도량	513	513	359	359	359	359	359	154	154	0
		배정량		428	359	303	256	216	182	154	92	0

- 오존층 파괴물질 수출입 쿼터 배정시 업체별 전년도 배정량기준 일정률을 감축적용하고, 실제 수입실적 등을 반영하여 기업별 형평성과 실효성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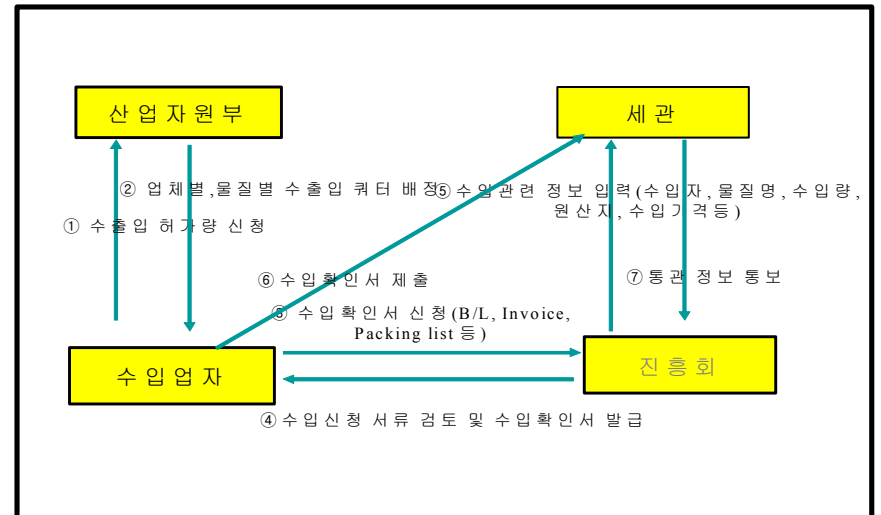
- 특정물질 생산량 및 수입량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오존층파괴물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매반기별 생산·수입 및 판매실적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동 실적 보고서를 토대로 생산 및 수입 Quota 대비 실적치를 반기별로 비교 분석하여 Quota를 초과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 수입 요건 확인 절차 강화 및 관세청과의 긴밀한 정보 교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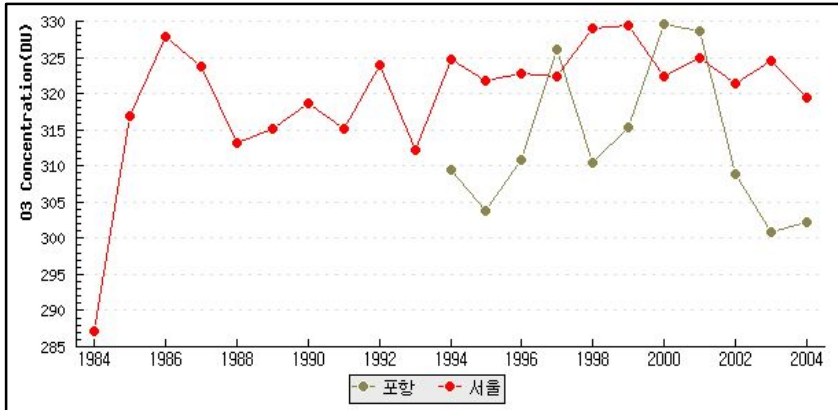
- 산업자원부에서 오존층파괴물질의 수입과 관련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불법수입 방지를 위해 모든 오존층파괴물질에 대해 세관장 확인 물품으로 으로 지정하고, 정부의 수입 허가를 받은 후 매 수입시 요건확인기관(한국정밀화학공업진흥회)의 확인을 거쳐 수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함
- 향후 불법 무역 방지를 위해 사전 요건 확인을 강화하고 수출입 실적에 대하여 관세청과의 긴밀한 정보교환 필요

< 불법무역 방지 방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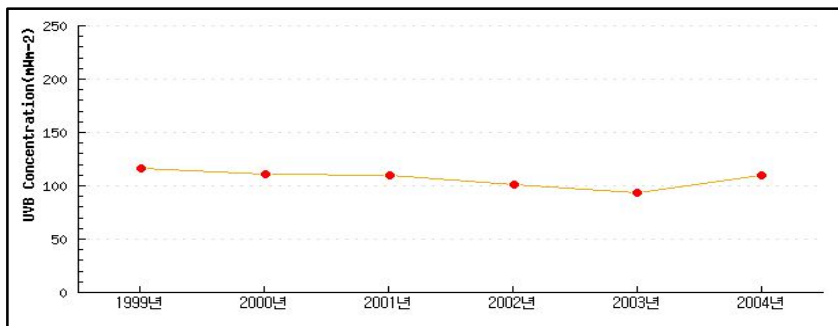


- 오존층파괴물질 관리 및 감소대책의 효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평가
  - 국내 성층권 오존량 및 자외선량(UV-B)의 주기적 관측결과를 파악하고, 대국민 홍보강화
  - ※ 기상청에서 매월 국내 성층권 상의 오존전량 및 지표면에 도달하는 자외선(UV-B)량을 관측하고 있음
  - UNEP에서 오존층파괴로 인한 세계 전체의 각종 질병등의 영향 등을 파악하여 조사분석자료를 발간하고 있으므로, 이를 주기적으로 파악

< 오존전량 관측결과 >



< 연 평균 자외선 B 영역 변화 그래프 >



## □ 대체물질 이용 촉진을 위한 자금지원 강화

### ○ 현황과 여건

- '92년 기금 설치 이후 기금 지원을 통해 국내 특정물질의 생산·소비량 감축 및 관련 기업의 원활한 대체 유도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
  - ※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 제조규제에 관한 법률 제정시 오존층파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대체물질 개발 및 대체물질 이용 촉진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오존층파괴물질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로부터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담금을 징수하여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을 설치
  - ※ 부담금 : 20원~390원/kg, 20개 규제물질
    - 국내 특정물질의 소비량 감축 : ('92)37천톤 → ('04)5.5천톤
      - 특히, 기금용자사업 지원(92년이후 약 400억원 지원)으로 전체 감축량 24천톤의 25%에 해당하는 6천톤을 감축한 것으로 파악

< 용자지원을 통한 특정물질 사용량 감축 효과 >

(단위:실량톤)

기간	구 분	물질명					계
		CFC-11	CFC-12	CFC-113	1,1,1-TCE	HALONS	
'92~'02	투자(개발)전사용량	3,915	1,604	2,943	2,870	250	11,582
	투자(개발)후사용량	2,114	555	1,422	1,043	160	5,294
	감축량	1,801	1,049	1,521	1,827	90	6,288

- 국내 특정물질 사용업체수 감소 : ('92)3,500개 → ('03)1,250개\*
  - ※ 업체현황('03) : 발포 55개, 분사 32개, 냉매 57개, 소화 22개, 세정 1,080개
  - 대체물질 기술개발 지원
    - HCFC-141b/142b 제조공정기술 등을 개발하여 연간 약 320억원의 수입대체 효과
    - CF3I 제조공정개발 등 차세대 대체물질 생산을 위한 기반기술 확보
- 그러나 여전히 1,000여개 중소기업에서 특정물질을 냉동기의 냉매, 발포제, 소화제 및 세정제 등 산업 전반에 사용되고 있어,
  - 몬트리올의정서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생산량 및 수입량에 대한 강제적인 감축 정책과 더불어 실제 사용 분야의 오존층파괴물질을 대체물질 사용 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한 상황임

< 우리나라의 물질별 기준년도 대비 사용량 >

(단위 : 오존파괴지수환산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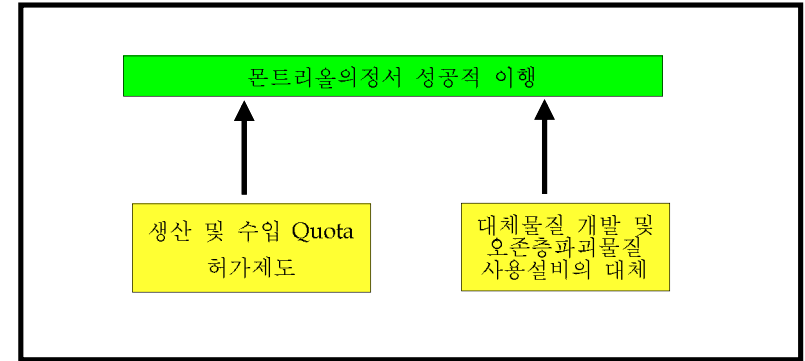
물질명	구분	기준년도	2002년	2003년	2004년	비고	
부속서 A물질	CFC	생산량	9,202	7,507	6,838	9,152	
		소비량	9,154	6,646	5,172	5,012	
	Halon	생산량	3,676	2,188	2,258	1,408	
		소비량	3,676	2,188	2,258	1,408	
부속서 B물질	사염화탄소	생산량	3,633	2,284	796	△292	
		소비량	638	710	△57	△1,275	
	111-TCE	소비량	513	564	499	428	
부속서 C물질	HCFC	생산량	-	729	521	417	기준년도: '19년 생산량 및 소비량
		소비량	-	1,639	1,560	1,594	
	HBFC	생산량	-	-	-	-	생산 및 소비 실적 없음
		소비량	-	-	-	-	
	BCM	생산량	-	-	-	-	생산 및 소비 실적 없음
		소비량	-	-	-	-	
부속서 E물질	Methyl Bromide	생산량	-	-	-	-	검역 및 선적 전 처리용으로 규제대상에서 제외
		소비량	-	-	-	-	

\* 소비량=생산량+수입량-수출량-제조용원료로 사용량

○ 문제점

- 몬트리올의정서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오존층파괴물질 사용 설비를 대체물질 이용 설비로 전환하는 것이며, 대체 전환을 위해서는 비용 투입이 필수적임
- 오존층파괴물질 사용업체들의 경우 대체를 위한 비용에 부담을 느껴 대체 물질 이용 시스템으로의 전환계획을 유보하거나 소극적인 대응
- 관련 산업계의 대체 전환 없이 정부의 Quota 제도만으로는 의정서를 성공적으로 이행 불가능
  - Quota 제도에 따른 오존층파괴물질의 공급 부족 발생 시 밀수 및 불법 무역이 발생할 수 있음
- 따라서 의정서의 원활한 국내 이행을 위해서는 정부의 공급 조절 정책과 더불어 대체 전환을 통한 오존층파괴물질의 사용량을 근본적으로 감축·전폐하기 위한 지원 정책 필요

< 몬트리올의정서 이행방안 >



○ 개선방안

- 2010년 주요 특정물질의 전폐를 앞둔 현시점에서 대기업 등 규모가 큰 기업들은 대부분이 대체를 한 것으로 보이나, 영세중소기업(특히 세정분야의 종업원 10인 미만의 업체)은 상당수가 대체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향후 영세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융자금리를 대폭 인하하여 시설대체 자금을 지원하고, 기술지도 사업등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대체를 유도
  - 특정물질사용합리화 기금을 활용하여 대체물질 개발 및 대체물질 이용 기술개발의 지속적인 추진 및 대체 전환 시 필요한 시설 대체 자금에 대해 저리 융자 지원사업 계속
  - 또한 '04년 국내 주요 오존층파괴물질(부속서 가 및 부속서 나) 소비량의 54%를 차지(8,424MT 중 4,545MT)하는 세정분야의 대체 전환 촉진을 위해 '04년부터 대체 세정 현장 기술지도 사업을 지속 추진
- ※ 오존층파괴물질을 세정제로 사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특성에 적합한 대체 세정제 및 대체 세정 시스템을 지도하고, 대체전환에 필요한 소요자금을 기금의 융자를 활용하도록 유도
- 또한 오존층파괴물질 사용 업체들이 대부분 영세 중소기업인 점을 감안하여 오존층파괴물질 사용업체들의 적극적인 대체 전환 의욕 고취를 위해 융자금리를 대폭 인하하여 지원

-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오존층파괴물질 사용업체에 대한 수요조사 및 해외 지원사례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실효성 있는 지원사업 발굴 및 추진

※ 동 기금은 기금관리법에 의해 관리운영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기금운용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이후 기금운용에 반영하고 있음

## □ 오존층파괴물질 국내 파괴기준 마련

### ○ 현황과 여건

- 오존층파괴 물질의 경우 성층권 오존층 파괴뿐만 아니라 지구 온실 가스로서 (green house gas) 기후변화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오존층파괴물질의 대기 중 방출을 줄이기 위한 방안 마련 필요

• 냉매로 사용되는 CFC-12의 경우 대체물질이며 기후변화협약 규제대상 물질인 HFC-134a 보다 지구온난화지수가 훨씬 큼

- 우리나라의 경우 2010년 까지 오존층파괴물질을 생산하거나 수입할 수 있어 오존층파괴물질의 파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안전한 파괴기술이나 파괴시설에 대한 필요성이 크지 않았으나

• 최근에는 오존층파괴물질 포함 제품 (냉장고, 에어컨, 소화기등)의 폐기 시 냉매 등에서 발생하는 오존층파괴물질의 안전한 처리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증가하고 있음

※ 환경부에서는 가전3사(삼성, LG, 대우)와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를 도입키로 지난 '00.6월 협약을 체결하고 권역별로 폐 전자제품 재활용 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폐 냉장고, 에어컨등의 폐기시 일정 파괴기준 및 절차없이 처리되고 있음

• 또한, 향후 불법 수입되거나 생산 Quota를 초과하여 생산된 오존층파괴물질의 안전한 처리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 ○ 문제점

- 오존층파괴물질 포함 제품 폐기시 발생된 오존층파괴물질은 회수 재처리하여 재활용 하거나, 오존층을 파괴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폐기 되어야 함

• 회수(Recovery)된 오존층파괴물질에는 수분, 오일 등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 재생(Recycling) 및 재처리(Reclamation) 되어야 만 재활용 될 수 있으나, 실제 재처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 불순물을 많이 포함한 회수된 오존층파괴물질은 파괴 (Destruction) 시키는 것이 경제적으로 실익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오존층파괴물질은 화학적으로 매우 안전한 물질이므로 일반 소각과 같은 방법으로 폐기 시 2차 환경 오염이 발생되므로 엄격한 기준에 따라 파괴되어야 하며, 당사국 총회에서도 파괴 기준 및 파괴 방법에 기술을 의정서 내용으로 채택하고 있음

### ○ 개선방안

- 우리나라도 오존층파괴물질의 사용 후 폐기되는 특정물질의 수요와 안전한 파괴처리에 대한 관심과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 의정서에서 정하고 있는 오존층파괴물질 파괴기술 중 국내 적용 가능한 파괴기술의 적용 가능성 및 파괴시설의 운영 방안 등을 검토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국내 파괴 기준을 마련할 계획('06 기준마련과 관련한 연구용역 실시예정)

• 아울러 폐기물 회수 및 처리업무의 소관부처인 환경부와 연계하여 오존층파괴물질의 안전한 회수·처리방안을 강구

#### < 의정서에서 승인된 파괴기술 목록 >

파괴기술	적용 대상			비고
	Concentrated sources		Dilute sources	
	CFCs, 부속서나 HFCs	Halons	폼(Foam)	
파괴 및 제거물(DRE)	99.99%	99.99%	95%	
시멘트 가마	적용 가능	적용불가능	-	Cement Kilns
액체 주입소각	적용 가능	적용가능	-	Liquid Injection Incineration
가스/증기 산화	적용 가능	적용 가능	-	Gaseous/Fume Oxidation
Municipal Solid Waste Incineration	-		적용가능	
반응기 크래킹	적용 가능	적용불가능	-	Reactor Cracking
회전가마 소각	적용 가능	적용 가능	적용 가능	Rotary Kilns Incineration
아르곤 플라즈마아크	적용 가능	적용 가능	-	Argon Plasma Arc
이중 무선주파수 플라즈마	적용 가능	적용 가능	-	Inductively-Coupled Radio-Frequency Plasma
질소 플라즈마 아크	적용 가능	-	-	Nitrogen Plasma Arc
초음파 플라즈마	적용 가능	-	-	Microwave Plasma
Gas Phase Catalytic Dehalogenation	적용 가능	-	-	
초고온 증기 반응기	적용 가능	-	-	Super-Heated Steam Reactor

□ HCFC 생산량 및 소비량 감축방안 마련

○ 현황과 여건

- 몬트리올의정서상 우리나라를 포함한 개도국의 경우 HCFCs (40종)에 대해 2016년 소비량을 기준으로 2040년 전폐토록 규정되어 있음

< 몬트리올의정서상 HCFC 규제일정 >

규제물질	오존파괴지수	선진국	개도국
염화불화탄화수소 (HCFC 40개 품목)	0.001~0.52	'89HCFC소비량+'89CFC 소비량2.8% '96.1.1부터 동결 '04.1.1부터 35%감 '10.1.1부터 65%감 '15.1.1부터 90%감 '20.1.1부터 95%감 '30.1.1부터 전폐	'15 생산 및 소비량 기준 '16.1.1부터 동결 '40.1.1부터 전폐

- 선진국의 경우 몬트리올의정서에서 정한 HCFC 감축 및 전폐 일정 보다 조기 전폐 일정을 마련하여 시행중임

< 미국의 HCFCs 생산량 및 소비량 감축 일정 >

시행일	규제조치 내용	비 고
2003. 1. 1	-HCFC-141b 생산 및 수입 금지	
2010. 1. 1	-HCFC-142b 및 HCFC-22 생산 및 소비량을 동결하고 생산 및 수입을 금지 (단, 제조용 원료나 2010년 이전에 생산된 제품의 냉매용으로 생산 가능)	
2015. 1. 1	-모든 HCFCs 의 생산 및 수입금지 (단, 2020년 이전에 생산된 제품의 냉매용으로는 생산가능)	
2020. 1. 1	-HCFC-142b 및 HCFC-22 생산 및 수입금지	
2030. 1. 1	-모든 HCFCs 생산 및 수입 금지	

< 유럽연합의 HCFC 용도별 소비량 규제일정 >

제품	제품유형	금지시기	유럽연합내 HCFC 사용량 비중(%)
에어로졸	-모든 제품	2000. 10. 1	-
냉매	-가정용 냉장고, 자동차 에어컨, 대중교통 철도 에어컨, 공공장소	200. 10. 1	-
	-아래 제품을 제외한 모든 신규제품	2001. 1. 1	4
	-냉방능력 100kw미만의 에어컨 (Fixed 형)	2002. 7. 1	1.5
	-에어컨(reversible 형)/Heat Pump	2004. 1. 1	1.5
	-현존하는 냉장고에어컨의 신규 HCFC 유지보수	2010. 1. 1	25
	-모든 HCFCs	2015. 1. 1	-
폼	-안전과 관련된 integral skin foam과 폴리 에틸렌 경질 단열폼	2000. 10. 1	2
	-폴리스티렌 경질 단열폼(운송용 단열재 제외)	2002. 1. 1	10
	-연질 faced laminated폼 및 샌드위치 패널에 사용되는 폴리우레탄폼(운송용 단열재 제외)	2003. 1. 1	37
	-기타 모든 폼(제외 용도 포함)	2004. 1. 1	10
세정제	-세정제(우주항공산업 및 정밀세정용 세정제 제외)	2002. 1. 1	6
	-우주항공산업 및 정밀세정용 세정제	2009. 1. 1	3

< 일본의 HCFC 소비량 규제일정 >

물질명(용도)	규제 내용	비고
HCFC-22(냉매)	○신규 냉매로는 2010년 이후 사용할 수 없으나 냉매 보충량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사용가능 ○2002.4.1일부터 HCFC 사용 상업용 냉동기의 라벨링요구	
HCFC-141b(세정용)	○세정용으로 사용되는 등 물질에 대해서는 2002년부터 규제를 시작하여 2010년부터 사용금지	
HCFC-141b(발포용)	○발포용으로 사용되는 등 물질의 생산 및 수입 2004년부터 금지	
HCFC-142b(발포용)	○발포용으로 사용되는 등 물질은 2010년부터 사용금지	
HCFC-225(세정용)	○2010년부터 규제를 시작하여 2020년부터 사용금지	

- HCFC는 CFC 중간 대체물질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향후에는 감축 전 폐 되어야 하는 규제물질임

- 우리나라의 경우 HCFC 40종 가운데 6종이 소비되고 있음

< 국내 HCFC 소비 실적 >

(단위:오존파괴지수환산톤)

물질명	구 분	99	00	01	02	03	04
HCFC-22	소비량	679	772	684	959	880	927
HCFC-123	소비량	5	7	6	5	6	6
HCFC-124	소비량	-	-	1	1	-	-
HCFC-141	소비량	558	520	425	653	640	611
HCFC-142	소비량	5	19	28	21	34	49
HCFC-225	소비량	-	-	-	-	-	-
합계		1,247	1,318	1,144	1,639	1,560	1,594

○ 문제점

- 현행 몬트리올의정서상의 HCFC 개도국 규제일정에는 동결조치후 중간 감축일정 없이 전폐 일정만 수립되어 있어 향후 대체물질의 개발 및 적용 현황에 따라 HCFC 중간 감축 일정이 마련될 수도 있음
  - 의정서 제6조에서는 매 4년마다 규제조치를 평가하고 검토토록 하고 있어 HCFC에 대한 중간 감축 일정은 추후 결정될 것으로 전망됨
- 향후 HCFC 사용 업체들의 예측 가능성 제고 및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연차별 생산량 및 소비량 감축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HCFC 사용자들에게 HCFC가 중간 대체물질로 사용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전폐되어야 하는 규제물질임을 홍보할 필요가 있음

○ 개선방안

- 2005년 1월 1일부터 HCFCs 도 생산 및 수출입 허가 대상품목에 포함되었으므로 현행 의정서상 규제일정 및 향후 규제일정 조정 등에 대한 논의 동향을 토대로 중장기적 연차별 국내 HCFC 생산량 및 소비량 감축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 V. 추진 체계

### 1. 재원계획

- 향후 몬트리올의정서의 성공적인 이행과 오존층보호를 위하여 선정된 4개 중점 추진과제중 <대체물질 이용 촉진을 위한 자금 지원 강화> 과제 외에는 별도의 재원이 필요치 않은 제도적·행정적 보완이 필요한 과제임
- <대체물질 이용 촉진을 위한 자금 지원 강화> 과제의 경우 이미 '92년부터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을 조성하여 대체 전환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장기 운용방안에 따라 오존층파괴물질 사용업체들의 대체 전환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지속추진

#### <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중기 운용방향 >

- 대체를 미루고 있는 영세 중소기업의 대체 전환 촉진을 위한 직접 지원 사업 반영
  - 세정 분야의 대체 촉진을 위한 기술지도 사업 지속 추진
  - 영세 중소기업인 점을 감안하여 저리의 기금 용자를 통한 대체 전환 유도
- 대체물질 개발 및 대체물질 활용 기술개발을 지속추진
- 대체 전환 촉진을 위한 용자지원 사업 확대
- 특정물질 사용전폐에 대비한 기반구축 및 중간대체물질(HCFC)의 합리적 감축기반 구축
  - 완전 전폐후(2010년)에도 국방, 소방, 보건, 안전 분야에 필수적으로 사용

되어야 하는 소화약제인 할론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할론뱅크시스템을 구축

- 특정물질의 완전 전폐이후에 부산물로 생산되는 규제물질이나 기존에 특정물질을 사용한 제품이나 장비 등에서 회수한 규제물질을 안전하게 파괴할 수 있는 설비 구축

<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중장기 운영계획 > (단위:백만원)

구 분		'04결산	'05계획	'06계획	'07전망	'08전망	'09전망
수입	○ 자체수입	4,080	4,509	3,464	3,088	4,182	4,413
	- 법정부담금	1,116	1,084	739	394	274	158
	- 용자원금회수	2,191	2,164	1,658	1,632	2,786	3,220
	- 기타	773	1,261	1,067	1,062	1,122	1,035
	○ 여유자금회수	21,708	19,652	18,140	13,901	8,131	3,943
<b>합 계</b>		<b>25,788</b>	<b>24,161</b>	<b>21,604</b>	<b>16,989</b>	<b>12,313</b>	<b>8,356</b>
지출	○ 사업비	5,298	5,994	6,919	8,409	7,914	6,917
	- 경상지출	2,294	2,994	2,919	2,409	2,914	2,917
	· 대체물질기술개발출연	1,819	1,819	1,819	1,819	1,819	1,819
	· 기술자료개발사업	175	175	100	90	95	98
	· 기술지도사업	300	500	500	500	500	500
	· 대체시설설치보조금지원사업	-	500	500	-	-	-
	· Halon Bank운영	-	-	-	-	500	500
	- 용자지출	3,004	3,000	4,000	6,000	5,000	4,000
	○ 기금운영비	425	440	451	449	456	470
	- 기금관리비	372	383	391	392	399	411
- 사업운영비	53	57	60	57	57	59	
○ 여유자금 운용	20,065	17,727	14,234	8,131	3,943	969	

\* 등 예산은 민간부담금(특정물질제조업자및수입업자로부터징수하는부담금)으로 조성하여 집행하고 있으며, 별도 정부출연은 없음  
 \* 2010년 이후부터는 CFC등의 부담금 수입이 없으므로, 몬트리올의정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신규 자원 마련을 위해 중간 대체물질인 HCFCs('16년 등결, '40년 전폐)에 대한 부담금 부과방안등 2010년 이후 중장기 예산운영계획 마련중

## 2. 추진일정

추진과제명	2006	2007	2008	2009	2010
오존층파괴물질 수출입 Quota 허가 제도 강화	→				
	연도별 생산, 수입 및 수출 Quota 배정				
대체물질이용 촉진을 위한 자금지원 강화	→				
	요건확인기관과 관세청간의 정보교환				
대체물질이용 촉진을 위한 자금지원 강화	→				
	대체전환 촉진을 위한 기금 지원				
오존층파괴물질 파괴기준 마련	→				
	파괴기준마련 및 홍보				
HCFC 생산량 및 소비량 감축 방안 마련	→				
	국내 HCFC 사용량 모니터링 HCFC규제동향 모니터링				

### 3. 성과지표

세부과제	성과지표
4-2-1. 오존층 파괴물질의 체계적 관리 및 감소	오존층 파괴 물질의 소비량
4-2-2 대체물질 이용촉진을 위한 적극적 지원과 관리	오존층 파괴 물질 대체량
4-2-3 오존층 파괴물질 국내 파괴기준 마련	국내 기준 제정 여부
4-2-4 HCFC 생산량 및 소비량 감축방안 마련	연간 국내감축계획안 마련 여부

### <참고자료>

< 국내 오존층파괴물질 생산 및 소비실적 >

(단위 : ODP톤)

물질명		구분	98	99	2000	2001	2002	2003	2004	
부속서 A I	CFC-11	생산	2,880	4,684	4,831	4,699	4,827	3,964	5,426	
		수입	7	3	3	2	2	1	-	
		수출	15	83	78	596	498	980	2,418	
	CFC-12	생산	2,846	2,554	2,557	2,827	2,680	2,874	3,726	
		수입	8	6	4	4	4	2	-	
		수출	447	96	326	403	647	944	1,957	
	CFC-113	수입/소비	2,407	2,464	2,235	2,429	2,037	1,932	1,769	
		CFC-114	수입/소비	192	305	373	238	251	230	212
		CFC-114	수입/소비	1	1	1	1	1	1	1
	CFC-115	수입/소비	26	29	29	29	26	24	22	
		소계	생산	5,726	7,238	7,398	7,527	7,507	6,838	9,152
			수입	234	344	410	274	284	258	235
수출	462		179	404	998	1,145	1,924	4,375		
소비	5,498		7,403	7,394	6,802	6,646	5,172	5,012		
부속서 A II	Halon-1211	생산/소비	312	336	323	399	476	690	354	
	Halon-1301	생산/소비	1,850	1,860	2,537	2,003	1,712	1,568	1,054	
	소계	생산/소비	2,162	2,196	2,860	2,402	2,188	2,258	1,408	
부속서A 총계		생산	7,888	9,434	10,248	9,929	9,695	9,096	10,560	
		수입	234	344	410	274	284	258	235	
		수출	462	179	404	998	1,145	1,924	4,375	
		소비	7,660	9,599	10,254	9,205	8,834	7,430	6,420	
부속서 B I	CFC-13	수입/소비	-	-	-	-	-	-	-	
부속서 B II	사업화탄소	생산	6,183	6,414	5,869	5,970	6,065	6,074	6,828	
		수입	6,491	6,763	5,348	4,576	5,028	3,880	5,015	
		수출	6,747	2,537	568	866	1,578	855	983	
		제조용 소비	5,737	10,513	9,054	10,237	8,805	9,156	12,135	
부속서 B III	111-TCE	수입	788	1,316	1,116	1,134	1,269	868	947	
		수출	51	59	54	55	55	47	23	
		제조용 소비	373	657	487	485	650	322	496	
		소비	364	600	575	593	564	499	428	
부속서B 총계		생산	6,183	6,414	5,869	5,970	6,065	6,074	6,828	
		수입	7,279	8,078	6,465	5,709	6,297	4,748	5,962	
		수출	6,798	2,596	622	921	1,633	902	1,006	
		제조용 소비	6,110	11,169	9,542	10,722	9,455	9,479	12,631	
		소비	555	728	2,170	36	1,274	442	△ 847	

(단위 : ODP환산톤)

물질명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부속서 C 그룹	HCFC-22	생산	228	428	380	65	234	160	79
		수입	195	307	399	643	741	721	860
		수출	2	41	4	7	1	-	2
		제조용	12	15	3	17	15	1	10
	소계	409	679	772	684	959	880	927	
	HCFC-123	수입	2	5	7	6	5	6	6
		수출	-	-	-	-	-	-	-
		소계	2	5	7	6	5	6	6
	HCFC-124	수입	-	-	-	1	1	-	-
	HCFC-141	생산 수입	305	508	370	316	470	331	318
		수출	57	119	221	249	329	404	310
		제조용	39	69	71	140	146	95	17
		소계	323	558	520	425	653	640	611
	HCFC-142	생산	28	43	34	31	39	31	30
		수입	-	5	7	13	21	20	19
		수출	12	43	22	16	39	17	-
소계		16	5	19	28	21	34	49	
HCFC-225	수입	-	-	-	-	-	-	-	
총계	생산	561	979	784	412	743	522	427	
	수입	254	436	634	912	1,097	1,151	1,196	
	수출	53	153	97	163	186	112	19	
	제조용	12	15	3	17	15	1	10	
	소비	750	1,247	1,318	1,144	1,639	1,560	1,594	
부속서 E 그룹	MB	수입	234	530	210	310	326	226	322
		수출	-	-	-	-	-	-	2
		검역용	234	530	210	310	326	226	320
	소비	-	-	-	-	-	-	-	-

국가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보고서

## 사막화 방지를 위한 국가간 협력 강화

2006. 10

- 소관부처 : 산 립 청
- 협조부처 : 농 립 부  
재정경제부

## < 요약 >

- 사막화는 현재 전 지구상에 확대되고 있는 주요 환경문제의 하나로 국제적 공조 필요성 대두
  - 매년 약 6만km<sup>2</sup>씩 사막화 진행, 동북아는 이로 인해 황사피해 극심
- 그동안 우리나라는 사막화 방지를 위해 주로 동북아 및 동남아 열대림 지역 국가와 긴밀한 입업협력 추진
  - 중국, 몽골과 황사방지를 위한 사막화방지 사업 추진
  - 인도네시아, 미얀마와 열대림 복원사업 추진
  - UNCCD 등 국제기구에 가입하여 국제 논의에 참여
  - 북한산림황폐화도 민족차원의 중요한 문제로 최근 민간차원의 소규모 지원에서 국가차원의 협력으로 전환 중
- 세계로부터 우리나라의 산림녹화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한 적극적인 국제적 기여를 요구받고 있음
  - 우리나라는 극빈국에서 출발하여 단기간에 전 국토 녹화에 성공한 세계적인 모범국가임('87년 FAO가 이를 인정)
  - 사막화에 직면한 아프리카 및 아시아 개도국에 우리나라는 모범이 되고 있으며, OECD국가로서 향후 기여확대 전망
- 적은 비용으로 국제적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사막화방지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
  - 동북아 사막화방지사업을 집중 지원하고 역내 주도
  - 양자간 협력을 확대하고 열대림 국가와 협력 강화
  - 사막화 관련 국제기구와의 공조체계 강화
  - 북한 황폐지 복구사업을 민족적, 국제적 차원에서 적극 지원

## 목 차

I. 추진배경 및 필요성 .....	145
II. 현황과 전망 .....	147
III. 비전과 전략 .....	152
IV. 중점 추진과제 .....	154
V. 추진체계 .....	161

## I. 추진배경 및 필요성

### 1. 추진배경

#### □ 사막화 방지를 위한 국제적 논의 확대

- 사막화 방지는 지속가능정상회의(WSSD)에서 논의하는 빈곤퇴치 해결과 관련된 지속가능 발전의 주요 요소로서 인식되고 있으며,
- 1996년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이 발효되고 협약의 이행에 관련된 국가실천계획(National Action Plan) 수립 및 재정 체제 검토 등 이행을 위한 노력을 계속함

#### □ 국내 황사 발생빈도 증가

- 우리 나라와 일본은 중국·몽골의 사막화에 따른 영향국으로서 매년 황사 피해를 겪고 있으며, 1980년대의 3.9일(서울기준)이던 것이 2000년대 들어 27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황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국내 관련 부처간 대책 회의를 갖고, 산림·환경·기상 분야 등의 협력 논의가 활발해짐

#### □ 국제 협력에 따른 개도국 지원사업의 확대

- 우리 나라에 대한 중국·몽골·미얀마 등 사막화에 따른 피해 당사국의 지원사업 요청 및 양국간 협정을 통한 지원 형식으로 사막화 방지 사업이 확대됨

## 2. 필요성

#### □ 국제 산림협력 확대 필요성

- 3대 환경회의임에도 유엔사막화방지협약에 대한 관심이 피해국 및 영향국에 한정되고, 현실적인 재원의 확보가 어려운 점이 있음
- 앞으로의 사막화 방지를 위해 일부 국가 뿐 아닌 전 지구적 차원의 문제임을 인식시킬 필요성 및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 협약 등 관련 협약 및 UNEP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 중요성 증가

#### □ 황사피해 저감을 위한 동북아 국가간 협력

- 사막화 방지 및 황사 피해를 근본적으로 저감시키기 위해서는 당사국의 사막화 지역 녹화사업이 절실
- 양자간 협력뿐 아니라 동북아시아 다자적 틀로써 접근하여 황사 방지를 위한 세미나, 관련 프로젝트 등의 공동 추진, 정보교환, 협력 체계 구축이 시급

#### □ 개도국 지원사업 수요 증대

- 국제회의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조림녹화 성공경험 소개와 복구기술 전수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사막화 피해를 입거나 황폐지가 많은 개도국들의 관심이 커짐
- 미얀마, 베트남, 인도네시아, 중국, 몽골 등 개도국과의 협력 약정을 통한 자금 및 사업 지원 요청의 증대

## II. 현황과 전망

### 1. 현 황

#### □ 정부간 사막화방지 조림사업 추진

- 중국 서북부 지역 사막화 방지 조림사업
  - 추진 계기 : 김대중 대통령과 주용기 총리간 정상회담(2000)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5년(2001~2005)
    - 사업대상 : 중국 서북부 5개소, 8,040ha
    - 사업집행체계
      - KOICA : 사업비 부담 5,000천\$ (중국 4,780만불 부담)
      - 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 : 조림기술지원
      - 중국(국가임업국) : 조림사업 실행, 자국 사업비 부담

#### ○ 추진 실적 및 계획

(단위 : ha)

지역	총면적	조림 면적					
		계	2001	2002	2003	2004	2005 (계획)
내몽골 톡료시	3,000	3,000	292	596	558	710	844
감숙성 백은시	1,540	1,540	150	240	430	410	310
신강성 투루판	1,200	1,200	-	-	400	500	300
귀주성 수문현	1,300	1,300	-	-	280.6	557.2	462.2
영하 평리현	1,000	1,000	-	-	-	676	324
밀운저수지	503	503	100	223	180	-	-
합 계	8,543	8,543	542	1,059	1,848.6	2,853.2	2,240.2

#### ○ 밀운 저수지 수원보호림 조성사업

- 추진계기 : 1998년 대통령 방중시 '산림녹화 및 토사유실 방지 등 분야에서 협력' 약속에 따라 산림 피복율이 적어 저수용량을 감 소시키는 밀운 저수지림 복원을 우선 채택 추진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3년(2001~2003)
  - 사업대상 : 중국 북경 밀운현 밀운저수지
  - 사업집행체계
    - KOICA : 사업비 부담 1,000천\$ (중국 870천불 부담)
    - 산림청(국립산림과학원) : 현지 파견 및 연수생 초청 교육
    - 중국(국가임업국, 북경시 임업국) : 자국 사업비 부담

#### ○ 미얀마 중부지역 산림녹화 2차 지원사업

- 추진계기 : 미얀마의 무분별한 벌채로 인한 사막화 진전으로 사막화방지를 위한 녹지환경 조림 요청
- ※ 1998~2000(3년간) 120ha에 대해 산림녹화 1차 지원사업 실시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년(2004~2005)
  - 사업대상 : 미얀마 중부 Mandalay성
  - 사업집행체계
    - KOICA : 사업비 부담 300천\$
    - 산지환경조사연구회 : 사업 실시
    - 미얀마(임업부) : 허가, 기자재 면세통관, 전문가 편의 협조

#### □ 민간차원의 사막화방지 협력사업

- 사막화 방지를 위한 한·중 환경협력사업
  - 추진 목적 : 중국 사막화 방지 등 국내 황사피해 저감

- 사업 개요

- 사업주체 : 환경운동연합(녹색자금 430백만원)
- 사업기간 : 2003~
- 사업대상 : 중국 길림성

- 추진 실적 및 계획

연도	주요 사업내용	조림면적	녹색자금(백만원)
2003	사업 추진위 환경경제포럼 시범지구 초지 조성 한중 시민환경교육 웹사이트 구축	시범지구 초지 조성	80
2004		200ha	150
2005		300ha	200
2006(계획)		300ha(잠정)	180

○ 사막화 방지를 위한 중국과 몽골 조림사업

- 추진 목적 : 황사제어 · 사막화 방지 및 동북아 네트워크 강화

- 사업 개요

- 사업주체 : 동북아 산림포럼(녹색자금 612백만원)
- 사업기간 : 2003~
- 사업대상 : 중국(북경, 내몽골), 몽골(울란바타르, 셸렝게주)

- 추진 실적 및 계획

연도	주요 사업내용	조림면적	녹색자금(백만원)
2003	방풍림 조성 사지고정 모니터링 교육훈련 워크샵 영상물, 자료집 발간	중국0.2ha, 몽골20ha	145
2004		중국120, 몽골150ha	177
2005		중국160, 몽골200ha	290
2006(계획)		중국200, 몽골300ha	300

□ 사막화방지를 위한 공동연구 및 교육훈련 실시

○ 공동 연구 추진 내용

- 사막화 및 산림 피해 방지를 위한 한·중 공동 연구

- 황사발생 지역의 모래 폭풍 원인 규명, 방풍림 조성 기술 개발 등 사막화 방지 연구사업(1996-2002)
- 대기오염에 의한 산림피해 및 회복 연구(2001-2005)
- 사막화 방지를 위한 수종개발 · 목초지 조성기술(2002~2005)

- 사막화 및 산림피해 방지를 위한 한·몽골 공동 연구

- 몽골 울란바타르 양묘장 설치 및 조림지원(2001-2005)
- 몽골산악지 대기오염에 의한 산림피해 연구(2001-2005)

○ 교육훈련 내용

- 2001~2004 KOICA 재정지원, 국립산림과학원 위탁으로 개도국 공무원 사막화방지 교육 실시 : 총 17개국 63명

□ 사막화방지 협약 등 다자간 협력 추진 현황

- 유엔 사막화방지협약(UNCCD)은 1994년 채택되어 1996년에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는 1999년에 가입

- 그 동안 총 7회의 당사국 총회에 참석하였으며, 연간 평균 15만\$(USD)의 분담금 부담

- 그 동안 사막화문제에 대하여는 주로 사막화 당사국인 아프리카 및 아시아의 개도국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선진국의 관심이 저조하여 재정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제기됨

## □ 전망

- 중국·몽골 등 동북아 지역 사막화방지사업은 세계 사막화방지사업의 성공모델로 주목받을 전망
  - 그동안 추진된 한·중, 한·몽 협력사업은 그 자체 사업의 성공뿐 아니라 해당국의 자력 조립사업을 활발하게 하는 계기
  - 중국·몽골 등 사막화 해당국과 우리나라·일본 등 황사피해국간의 역내 다자협력체제로 발전해 나갈 전망
- 열대림을 보유한 개도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열대림 복원 협력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
  - 세계 최빈국에서 출발하여 경제적 성공 및 황폐지 복구 성공경험을 가진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기술적 벤치마킹 및 지원에 대한 개도국의 요청이 확대되고 있음
  - 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남 등 기존 협력국가 외에 캄보디아, 요르단, 나이지리아 등 중동 및 아프리카 국가도 관심증가
- 국제기구로부터 한국의 위상에 걸맞는 역할을 담당해 줄 것을 요청 받고 있으며, 보다 폭넓은 협력사업 확대 전망
  - 우리나라의 녹화 성공이 국제사회에 많이 알려져 있으며, OECD 국가로서 국제적 기여를 확대해 나가야 할 입장
  - 전문가의 국제기구 파견, 국제회의 유치, 분담금 확대, 각종 국제세미나 개최 등 보다 적극적인 활동이 확대될 전망
  - 특히, 북한 황폐지 복구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그 당사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역할이 요구될 전망

## Ⅲ. 비전과 전략

### 1. 비전

- 동북아 사막화 방지를 집중 지원하고 이를 주도함으로써 역할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 황사 피해를 저감
  - 대중국 사막화방지사업은 현재지원 규모를 유지하되, 경제성장에 따른 자력조립을 확대토록 하고, 기술지원으로 전환
  -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대몽골 지원을 대폭 강화하여 세계적인 성공 사례를 도출
- 열대림 보유국가에 대한 산림복원사업을 적극 지원·확대함으로써 열대림 보전을 위한 국가이미지 및 실질적 국익 확보
  - 베트남,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 전통 임업협력국에 대한 열대림복원 계획에 적극 참여
  -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스리랑카, 나이지리아 등 열대자원 확보 및 CDM사업 가능 국가와 신규협력관계 확대
- UNCCD 등 국제기구에의 기여를 다양하게 확대하여 세계 사막화방지를 위한 우리나라의 국제이미지를 강화
  - 분담금기여 및 직원파견을 확대하여 국제적 영향력 확보
  - UNCCD총회 유치, 각종 국제세미나 기획 추진으로 이미지 제고
- 북한 황폐지 복구에 적극적 노력을 기울여 민족문제해결에 기여
  - 남북농업협력위원회를 통해 당국간 사업으로 산림복구 추진
  - UNCCD, UNEP 등 다자적 차원에서 북한지원을 유도

## 2. 추진전략

구 분	주요 내용	비 고
○ 동북아 사막화방지 협력 체계 구축	○ 대중국 산림복원·산림경영사업 기술이전 및 공동연구 추진 ○ 대몽골 사막화방지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 ○ 동북아 사막화방지 파트너십 형성	
○ 열대림 복원사업 확대	○ 인도네시아 열대림 복원사업에 참여 (양묘장, 망그로브 복원 등) ○ 베트남 열대림복원 사업 참여 (기업체 진출을 통한 해외조립) ○ 국제열대목재기구(ITTO) 기금사업에 적극 참여 ○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등 열대림보유국과의 양자협력 확대	
○ 국제기구와의 협력강화	○ 각종 국제 분담금 확대 ○ 전문가 및 직원 파견 추진 ○ 총회, 지역회의 등 유치 ○ 국제세미나 개최	
○ 북한산림복구 사업 추진	○ 양묘장 복구, 병해충방제 등 시범사업 추진 ○ 남북농업협력추진위원회를 통해 남북임업협력 파트너십 구축 ○ UNEP의 대북 환경복원사업 적극지원 ○ UNCCD를 통해 북한산림복구에 국제적 관심 유도	
○ 기타 개도국 지원사업추진	○ 대 개도국 산림공무원 교육·교류 및 기술이전 강화 ○ UN산하 교육기관 국내유치 적극 지원 (UNEP Eco Peace Leadership Center) ○ CDM사업을 위한 기반 구축	

## IV. 중점 추진과제

### 1. 선정배경

- 동북아 지역 사막화방지사업의 주목, 열대림 복원사업의 지속적 확대, 국제적 요구 증가 등 사막화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전망을 반영
- 사막화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비전과 추진전략을 양자적, 다자적, 국제기구, 남북간으로 크게 구분하여 이에 따른 추진과제를 선정
  - 양자적 차원에서는 협력을 강화하여 개도국 지원 사업을 통한 사막화 방지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 다자적 차원에서는 중국, 몽골, 한국, 일본 등 동북아 사막화 방지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
  - 국제기구적 차원에서는 국제기구 및 환경 협약 등과의 공조 및 연대 강화로 효율적 사막화 방지사업 추진
  - 남북한간 협력과 관련하여 북한의 황폐지 복구를 위한 당국간 사업의 추진 및 UNEP 등 다자적 차원에서 북한지원을 유도

### 2. 선정 결과

- 동북아 사막화방지 협력체계 구축
- 양자간 협력을 통한 지원사업 추진
-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 북한산림복구에 적극 노력

### 3. 과제별 추진전략

#### □ 동북아 사막화방지 협력체계 구축

##### ○ 현황 및 여건

- 동북아 지역의 5개국은 국토 면적, 인구, 토지이용의 상황이 매우 다르며 산림 현황과 특징이 상이함

구분 국가	산림면적 (천km <sup>2</sup> )	원목생산 (천m <sup>3</sup> )	국토이용비율(%)				국토면적 (천km <sup>2</sup> )	인구밀도 (인/km <sup>2</sup> )
			농경지	산림	목초지	기타		
러시아	7,786	207,452	7.8	45.6	4.5	42.1	17,075	8.6
몽골	138	865	0.9	8.8	79.8	10.5	1,567	1.5
중국	1,340	300,668	10.3	14.0	42.9	32.8	9,573	126.0
한국	66	6,485	21.7	66.1	0.9	11.3	67	451.3
일본	252	32,570	7.8	45.6	4.5	42.1	378	331.8

- 중국의 산림 황폐화 및 사막화는 오래전부터 계속되어온 현상으로 매년 약 3,000km<sup>2</sup> 속도로 사막화가 진행되고
- 국토의 90%가 사막화의 영향을 받는 몽골은 과도한 방목 등으로 지표 식생이 심하게 훼손되고 있으며, 적극적인 조림활동 없이 사막화 현상이 확산되고 있어,
- 한국, 일본, 러시아 등 동북아 주변국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음
- 현재 산림청은 「동북아 산림재해 공동대응을 위한 협력방안 연구」를 추진중이며, 이를 통한 산불, 황사, 산림병해충 등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을 위한 동북아지역 네트워크 구축코자 함

##### ○ 문제점

- 동북아 지역의 공동 대응을 위한 협의체 필요
- 국경을 넘어 영향을 주게 되는 사막화, 산불, 산림 병해충 등 산림 재해에 공

동으로 대응하여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시급

- 우리나라와 중국, 몽골과는 각각 산림협력 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영향국의 위치에 있는 여타 동북아 지역 차원의 협의체가 없어, 사막화 등 산림 재해에 적기에 공동 대응이 어려움
- 지역 단위의 중심체를 통한 국제기구 관심 도출 필요
  - 사막화방지협약, 생물다양성협약, 기후변화협약 등 국제 산림·환경 논의시 동북아 지역 차원의 공동 대응으로 우리의 입장을 효율적으로 대변하고, 국제 산림 협력의 도약의 계기를 마련

##### ○ 개선 방안

- 한·몽골('98년 약정체결), 한·중국('96년 약정체결) 산림협력회의를 통하여 사막화방지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공동연구, 협력사업 발굴을 추진하고, 민간단체·연구기관의 참여를 확대
- 사막화 등 국경을 넘는 산림 재해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동북아 지역 네트워크 구축
  - 특히, 사막화의 문제는 중국, 몽골 등 피해국과 한국, 일본 등 영향국이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다자간 대응체제를 마련
- 다자적 차원의 동북아 지역 산림재해 네트워크를 활용한 세미나, 워크샵 개최, 공동 프로젝트 수행, 관련 장관회의 등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

#### □ 양자간 협력을 통한 지원 사업 추진

##### ○ 현황 및 여건

- 현재 우리나라는 산림협력을 위해 8개국과 양자협력 약정을 체결하고, 정기적인 임업 협력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음
  - 인니, 미얀마, 베트남, 중국, 몽골, 소련(러시아), 뉴질랜드, 호주
- 양국간 협정을 통한 지원 사업 추진 합의로 KOICA 자금을 이용한 사막화 방지 및 황폐지 복구 사업의 실시, 교육 훈련, 장·단기 전문가 파견을 추진하게 됨

< KOICA 자금을 활용한 개도국 지원 프로젝트 >

구 분	기 간	금 액	면 적
계		10,700천불	15,515ha
중국 밀운저수지림 보호(완료)	2001~2003	1,000천불	500ha
중국 서북부 사막화방지사업	2001~2005	5,000천불	8,040ha
미얀마 건조지역 산림복구사업	2004~2005	300천불	330ha
인도네시아 양묘장 조성사업	2005~2007	1,600천불	산지시험 120ha 양묘장 등 25ha
북경 산림종합경영 시범사업(예정)	2005~2007	1,000천불	5,500ha
망그로브 숲 복원사업(예정)	2005~2007	1,800천불	1,000ha

○ 문제점

- 사업 완료 후 지속적인 관리가 미흡
  - 개도국의 산림 황폐 및 사막화 폐해에 대한 인식 부족 및 자금 부족 등으로 사후 관리에 미흡하며, 특히, 몽골의 경우 식재 후 초기 관리가 안 되어 방목을 위해 심은 나무를 손상시키기도 함
- 사막화방지 활동 지원 체계 미흡
  - 황사, 대기오염, 사막화방지 등 동북아시아 산림환경문제가 점차 심각해지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정보나 동향 파악 등의 지원업무가 활발하지 않은 상태임
- 개도국 지원사업 대상국의 제한
  - 사업 채택에 있어 지원사업 대상국이 한정되어 있으며, 국가별 지원 방향이 없이 양국간 협의를 통한 지원 사업이 우선됨

○ 개선 방안

- 국가적 차원의 지원 이외에 사막화방지를 위한 비정부 민간단체(NGO) 또는 시민 단체의 지원 사업 추진을 격려
- 몽골 '그린벨트' 지원 사업 추진 등 양자간 협력사업의 발걸음을 확대하고, 주민 참여와 교육훈련을 통해 지원국 소득과의 연계 추진

- 국가적 차원의 지원 이외에 사막화방지를 위한 비정부 민간단체(NGO) 또는 시민 단체의 지원 사업 추진을 격려
- 사막화방지를 위해 중국, 몽골 이외에도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나이지리아 등 열대림 국가와의 임업 협력 확대 및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해 다각적 노력
  - 중국 북경산림종합경영시범사업 추진(2006)
  - 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를 입은 망그로브 숲 복원사업 추진('06~'09)
  - 인니 임목개량 및 양묘장 조성사업('05~'07)
  - 미얀마 중부 건조지역 녹화 사업('05~'06)

□ 국제 기구와의 협력 강화

○ 현황 및 여건

-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WSSD)에서 아젠다 21을 작성하는데 빈곤 퇴치를 최우선 해결 과제로 선정하는데 합의한 바 있으며,
- 아프리카, 아시아의 빈곤 지대는 사막화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지속가능 발전을 위해 사막화 방지는 중요한 의미를 지님
- 사막화방지협약(UNCCD)은 2005년 현재 제7차 당사국총회까지 개최된 바 있으며
- 협약 이행을 위한 재정 체제, 국가실천계획 수립 및 이행, 기술이전협력, 재원확보, 과학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등을 논의함

○ 문제점

- 전지구적 차원의 문제로의 인식 부족
- 사막화방지협약이 아프리카 내지 아시아 등 직접 사막화에 처한 국가들 위주의 참여로 중남미, 유럽 등 직접 사막화에 직면하지 않는 국가의 관심 부재
- 사막화 방지협약 이행을 위한 수단 확보 필요
  - 사막화방지협약 재정 체제(Global Mechanism)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조직 및

예산운영, 기능 중복 방지를 통해 선진국의 지원확보 및 자발적 기여금 확보가 필요

- 각종 협약상 기구의 효율성 증대와 기능의 중복 회피를 위하여 운영방식과 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 ○ 개선방안

-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 협약, UNEP 등 많은 국제협약 및 국제기구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각 부속 기구간 연구 결과를 공유하거나 합동 사업 추진 등으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
  - UNCCD, UNEF와의 협력 하에 사업추진 재원의 확보 노력
- 우리나라의 조림 성공 경험과 관련 기술 교류를 통하여 우리의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보여 주고
- 당사국 총회의 유치, 국제 심포지엄 개최, 사무국에의 직원 파견 등을 통한 국제적인 연대 강화 및 사막화의 전지구적 차원의 문제로의 인식을 위한 노력 계속

### □ 북한 산림복구에 적극 노력

#### ○ 현황 및 여건

- 북한 산림 916만ha 중 163만ha(18%)가 황폐지로 추정되며, 북한의 산림 황폐화 및 생활상이 국제적 관심을 끌게 됨
  - 북한지역의 극심한 산림황폐화로 한반도 국토 이질화 심화
  - 북한황폐지 복구에 대해 UNEP, UNDP 등 국제기구의 관심 증가
- 그 동안 남북 산림 협력은 주로 묘목 지원 등 민간 및 지자체에서 추진되었으나
  - 남북 관계의 개선에 따라 금년에 처음으로 남북농업협력위원회를 개최('05.8) 하여 정부 차원에서 산림복구시범 협력 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함

#### ○ 문제점

- 남북 관계가 수시로 비평에 따라 당국간 협력사업 추진에 대한 안정성 미확보 및 북한의 산림실태조사 등에 대한 소극적 태도

- 연료림, 유실수 등 단기적으로 이익이 큰 수종에 집착할 우려
- 사망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북측의 이해 부족 및 다락밭을 산림으로 전환할 경우, 식량 감소 문제에 따른 반발 가능성

#### ○ 개선방안

- 임진강 유역 산림복구를 위한 묘목지원 및 양묘장 시범 조성 및 복구 등 당국간 협력사업의 차질없는 진행
- 시범사업 추진,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단발성 사업이 아닌 장기적 사업으로 지속 추진
  - 남북한 상호 이익이 되고, 실현 가능성 높은 사업을 우선 추진
- UNCCD, UNEP 등 다자적 차원에서 북한의 황폐지 복구 지원을 유도하여 남북 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는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 가능토록 노력

## V. 추진체계

### 1. 자원 계획

(단위 : 억원)

구분	2006 ~ 2010 *		소계
공공 부문	32.5	78	110.5
민간 부문	4	6	10
계	36.5	84	120.5

#### < 공공부문('06~'10) >

(단위 : 억원)

구분	'06	'07	'08	'09	'10
녹색자금	6.5	7	7	7	7
자체예산 (국제협력)	7	16	37	37	37

### 2. 추진일정

구분	'06	'07	'08	'09	'10
사막화방지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	-----	-----	-----	-----

### 3. 성과지표

세부과제	성과지표
4-3-1. 동북아 사막화방지 협력체계 구축	사막화방지, 황폐지 복구사업 등 국제 협력사업 추진 실적(건수, 금액)
4-3-2 양자간 협력을 통한 지원 사업 추진	양자간 산림협력회의 개최 등 협력 실적
4-3-3 국제 기구와의 협력 강화	국제기구 협력 사업건수, 실적
4-3-4 북한 산림복구에 적극 노력	북한 산림복구 기여면적

## 세계화와 지속가능 발전 - 국제정보격차해소 -

2006. 10

- 소관부처 : 정보통신부
- 협조부처 :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 목 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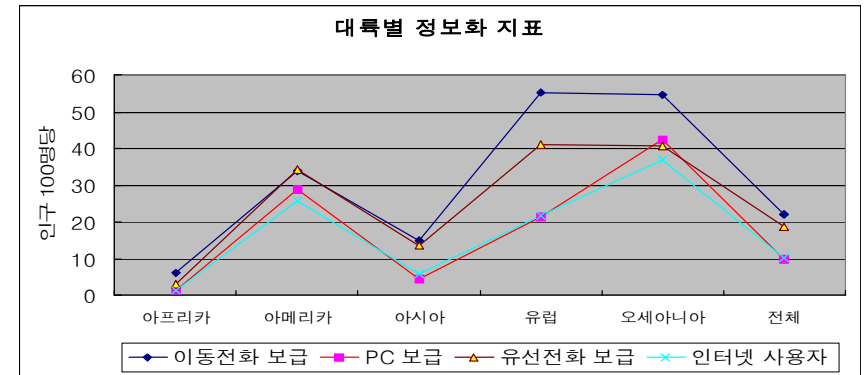
I. 추진배경 및 필요성 .....	167
II. 현황 및 전망 .....	169
III. 비전과 전략 .....	179
IV. 중점 추진과제 .....	183
V. 추진체계 .....	188

## I. 추진배경 및 필요성

### 1. 추진배경

#### □ 국가간 정보격차(Global Digital Divide)의 심화

- ICT기술의 발전으로 접근성(accessibility) 및 활용성(availability)과 정보 인프라와 발전의 측면에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



※ 자료 : ITU 2004. World 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 □ 정보격차해소에 대한 전세계적 관심 증대

- UN Millennium 선언을 통해 ICT를 활용한 인적자원 개발 및 지속가능한 발전의 수단으로 강조(2000)
  - ※ APT정상회의에서 정보격차해소 및 ICT활용의 문제해결에 지역적·세계적 협력을 강조(동경선언 2000. 10월)
  - ※ 세계정보화정상회의(WAIS, 2003)에서 정보격차해소의 필요성과 시급성 재확인
- 국가간 정보격차는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이슈로 대두되고 있음

## 2. 필요성

- 우리나라는 경제적 위상(세계 11위 수준)에 걸맞지 않게 국제 사회에 대한 기여도가 낮아 대외 협상력 및 이미지 취약
- 우리나라의 대외원조규모는 OECD 권고 수준인 GNI 대비 0.7%의 1/10에 못미치는 0.06%수준으로 최하위

< OECD 유사회원국별 ODA 현황 >

국 가	미 국	영 국	일 본	캐 나다	독 일	프 랑스
ODA/GNI	0.16	0.32	0.19	0.23	0.27	0.34
국 가	덴 마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
ODA/GNI	1.01	0.82	0.83	0.23	0.25	0.26

※ 자료 : OECD/DAC(Development Cooperation)

※ 우리나라에 제공된 ODA 실적 ('45~'80년) : 무상 45.1억US\$, 유상 158.2억US\$

- 국제사회에서의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선진국의 공동 대응노력이 강조되면서 IT강국의 위상에 상응하는 지원활동이 요구됨

- ASEAN+3 정상회의 등 국제기구 및 역내 협력체에서 정상 차원의 지원의지를 지속적으로 천명
- '05. 9 'UN 특별정상회의'선언을 통해 선진국에 대해 대외원조를 국민총소득(GNI)의 0.7%까지 제공토록 확인

## 3. 기대효과

- 개도국 정보격차 해소와 ICT를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을 제시하여 글로벌 IT 선진국으로서의 국제사회를 주도
  - 우리의 선진 정보화 모델을 전수하여 글로벌 IT이니셔티브 선도

⇒ 국제사회에서의 IT영향력을 강화하고, IT Korea 브랜드 가치 제고 및 국내 IT산업의 해외진출 기반 조성

## II. 현황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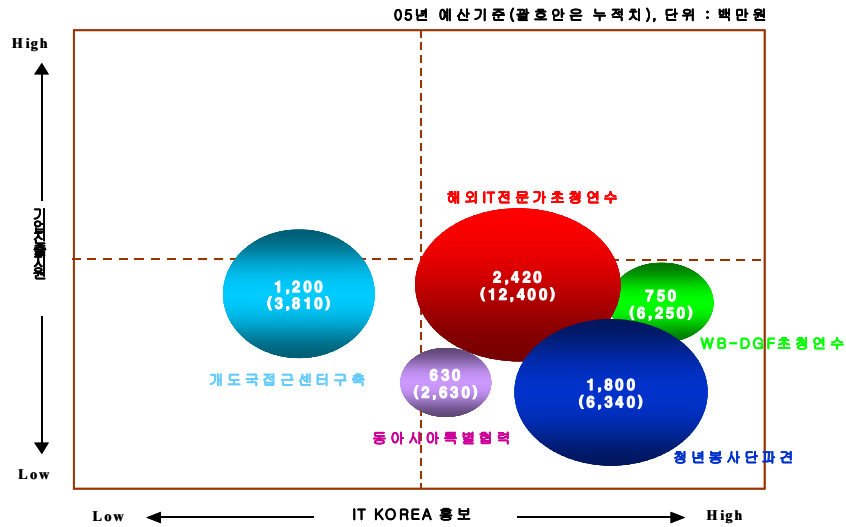
### 1. 현 황

- 우리나라는 국가간 정보격차를 위하여 IT후발국가에 대한 IT인력 양성 및 정보 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98년 현재)
  - ASEM 정상회의(2000.10), APEC 정상회의('01.10), ASEAN+3 정상회의('01.11) 등에서 개도국의 정보격차 해소 지원을 위한 우리나라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천명
  - 제1차 WSIS('03)에서 한국 정부가 개도국 정보기회 확산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공동 대응할 것을 강조
  - '07년부터 ASEAN 역내 정보화 향상 및 공동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모델로 “동아시아 공동번영을 위한 ICT협력사업”을 제안(2007년~2011년, 5년, 약 1,000만불 지원 예상)
  - '06년부터 아프리카 역내 정보화 향상 및 한·아프리카 공동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새로운 협력모델로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한국 이니셔티브 ICT 분야 지원사업” 제안('06년~'08년, 3년간 약 550 만불 지원 예상)

#### IT 분야 국제정보격차 해소 내용

- IT분야가 국가경제발전의 핵심분야로 부상하고, Digital Divide가 선·개도국간 빈부격차의 심화요인이 되고 있음을 감안, 우리나라는 경쟁력이 있는 IT 분야에 대한 전략적 지원 확대가 요구되고 있음(선택과 집중)
- IT분야 ODA지원은 국제정보격차해소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 지원 규모 : '04년(91억원), '05년(110억원), '06년(154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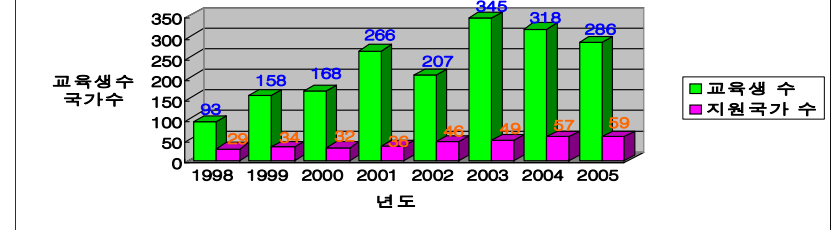
**국제정보격차 해소사업 현황분석(05년기준)**



□ 해외 IT전문가 초청연수

- 개도국의 IT정책결정자, CEO 등을 초청하여 우리나라 정보화 모델을 전수함으로써 개도국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인력양성
  - 기업체 협력과정을 통해 우리기업 진출에 기여
    - ※ '05년 (주)포스데이터의 라오스 전자정부 구축을 위한 2천만US\$ 발주 등 4건의 해외진출 성과 도출
- '98년부터 '05년 까지 90개국 1,841명 초청연수를 실시
  - '05년 59개 전략국가의 고위공무원, CEO 등을 대상으로 286명에게 총 17개 과정 단계·중장기 초청연수 실시
  - UNESCO CIO과정, SICA 특별과정 등 2개 과정 신설
    - ※ SICA 특별과정은 대통령의 중미순방('05.9) 후속조치로 실행하였으며, UNESCO 과정은 국제기구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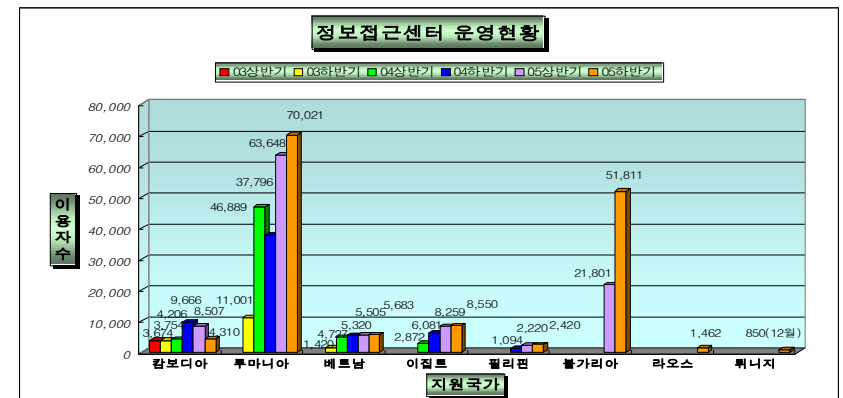
**연도별 해외 IT전문가 초청연수 추진실적('98~'05)**



- '05년 연수만족도가 91%('04년 89%)로 나타났으며, 연수를 통해 IT Korea에 대한 이미지가 30% 이상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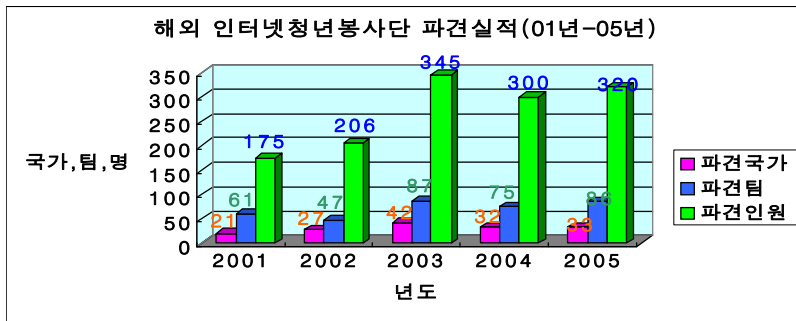
□ 개도국 정보접근센터 구축

- ASEAN국가와 동유럽, 아프리카 지역 등 주요 IT진출 유망국가에 개도국 정보접근센터를 설립하여 IT인프라 지원
  - '02~'05년까지 캄보디아, 루마니아, 베트남, 이집트, 필리핀, 불가리아, 라오스, 튀니지 등 8개국에 8개소 구축·지원
- 수혜국에서는 공무원, 중소기업 임직원, 교사,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정보화 교육 및 투자유치 활동공간으로 적극 활용 중
- 현지 체험을 통한 우리기업 IT제품의 홍보효과가 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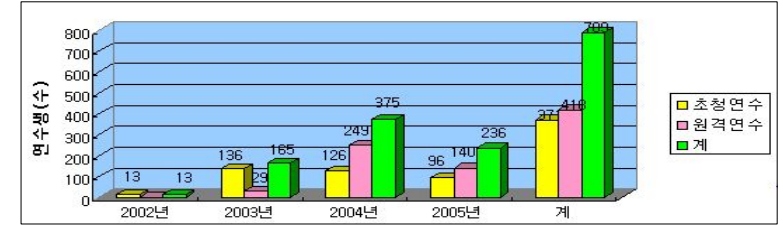
## □ 해외 인터넷청년봉사단 파견

- 대학생, IT전문가 등을 개도국에 파견하여 정보화교육, IT Korea 홍보 등의 다양한 봉사활동을 전개함
  - 해외 인터넷청년봉사단 누적 교육인원 : 35,364명('01~'05년)
- 현지 일반인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에 친근한 이미지를 확산하여 우리 IT기업 및 제품에 대한 IT 한류(韓流) 형성
- 정보화 봉사활동을 통한 국내 IT기업의 현지진출 지원 효과



## □ WB 협력 개도국 정보격차해소 사업(IT초청연수)

- 정보화정책, 정보통신기술, 정보보호과정 등 초청교육 과정운영
  - 정보화, IT기술동향, 엔지니어링 등 전문 강의와 서비스 및 제조업체, Application 운용 현장 등 방문
- 원격연수 과정운영(전자정부, NGN) 및 신규과정(정보화 사회와 IT 정책, 통신개요) 개발 및 시범서비스 진행



- '02~'05년 기간중 156개 개도국의 IT인력을 대상으로 789명을 교육 실시

## □ 동아시아 정보격차해소 특별협력사업

- 베트남 하노이시의 전자정부 구축전략 수립 지원을 위해 서울시와 공동 자문단을 구성·파견하여 자문활동을 수행
- 인도네시아의 ICT 정책인 "Blue Print of Telecommunications" 중 "인도네시아 통신개혁을 위한 전략 및 정책"에 대한 자문 수행
- 2004. 9월 ITU Telecom Asia 2004와 연계하여 Asian DHX(Digital Heritage Exchange) Forum 및 시연회 개최
- ETRI에서 베트남 우정통신기술연구소(PTIT) 연수생 8명을 대상으로 연구기술 과정(3개월, 4명), 박사과정(6개월, 4명) 운영
  - ※ 1999년~2004년 기간 중 총 36명의 연수생 배출
- 기술교류세미나를 개최하여(2004.10.12. 베트남) 4개 분야 23편의 논문을 발표하고 기술이전 워크숍 개최

## 2. 우리나라 대외원조 정책환경 변화

- 국가재정운용계획('05~'09) 국무위원 재원배분 회의에서 '09년까지 ODA<sup>10)</sup>/GNI수준 0.1% 수준으로 확대키로 잠정 합의('05.4)
- '06년부터 범부처 차원의 대외원조사업을 추진키로 함

10)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공적개발원조) : 개발목적을 위한 경제적 지원

- 대외원조종합개선대책 마련(국무조정실, '05. 11월)
- 국제개발협력위원회실치('06. 1월) 및 중장기 전략을 수립 중
  -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 위원장 국무총리, 위원은 각부 장관, 국제개발협력실무위원회 설치('06. 3월, 각부 대외원조관련 담당 국장)
- 제1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회의에서 대외원조는 부처별·전문분야별로 추진하고 **우리부는 비교우위 분야인 IT에 집중**('06. 3.2)
  - IT분야는 교육훈련, 시설구축, 인력양성에 중점을 두고 ICT 활용·제도구축·정책수립 능력 등 지원
  - ※ 대외원조(무상) 규모면에서 우리부는 2위 수준(붙임 2 참조)

### 3. 국제사회 동향

#### □ 국제정보격차해소 사업의 추세

- 국제기구에서는 개도국 경제발전 및 빈부격차 해소의 수단으로 ICT 지원 및 활용을 추진
- 순수 원조의 국제협력사업보다 목적지향의 협력사업 증대
  - ※ 미국 상무부 : 이라크전쟁 상황에 우호적 분위기조성을 위해 “DFI 사업”추진
  - 일본: 아시아 IT분야 주도권 확보를 위해 “Asia Broadband Program” 추진
- 공공부문에서만 수행하던 방식에서 민간기관과의 협력활동을 통한 사업을 추진중

< 국제개발협력사업(대외원조) 패러다임 변화 >

순수 원조 동기	→	글로벌 표준(Global Standard)의 선점, 향후 잠재시장 개척 등의 수단
공여국 일방적 사업	→	국제기구, 공여국과 수혜국간 파트너십 강조
공공부문 (Public Sector) 주체	→	공공부문과 민간부문(Private Sector) 협력 틀 강조
국제기구 중심의 원조	→	다자 및 양자 협력관계의 혼합 (Policy Mix)을 통한 전략적 사업추진

#### □ 국제기구별 동향

- UNITEs(United Nations Information Technology Service)
  - 개도국 주민의 정보통신 능력 제고를 위한 사업 전개
    - 캐나다와 미국의 Net Corps, 대학, 민간단체 및 개인자원 봉사자들과의 협력을 통해 운영
  - UNV(United Nations Volunteer) 파견을 통한 IT교육실시
    - 연간 220명의 UNV, 100명의 온라인 자원봉사자가 50여개 국가에 파견·활동 (2003년 기준)
- ITU : ITCI-DC<sup>11)</sup>
  - 개도국의 정보통신이용 능력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 2003년까지 개도국 50개 교육기관에 Internet Protocol 네트워크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
  - Cisco Systems의 Cisco Networking Academy Program과의 협력을 통한 사업 추진
- OECD
  - ‘빈곤퇴치를 위한 디지털 기회 활용’(Exploiting the Digital Opportunities for Poverty Reduction) 포럼개최
    - 발전과 빈곤퇴치를 위한 ICT의 중요성 강조
    - 전자상거래 및 전자정부 구현 등 개도국과 OECD간 경험교류
    - 교육·건강·경제활동을 위한 ICT 활용 사례발표
- 세계경제포럼
  - Global Digital Divide to the Global Digital Opportunity(2000. 7)를 통해서 전세계 모든 국가의 디지털 기회 참여 확대 강조
    - G-8국가들은 원칙과 실천 계획을 마련하고 개도국의 교육, 보건, 지역사회발전 등에 IT를 활용 지원

11) Internet Training Centers Initiative for Developing Countries

## 4. 주요국가 동향

### ☐ 미국

- USAID ICT 지원사업
  - 사업 주요전략 및 핵심 영역으로 파트너십, 정책개혁, 접근, 역량 강화, 활용에 두고 있음
  - 민간 기업뿐만 아니라 상무부, 국무부 등 타 부처와도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
    - ※ USAID의 경우 예산(약 2억불)보다 외부 기부금(약 2억 4천만불)이 더 많음
  - 인력양성 사업을 주요한 핵심 사업으로 간주
    - ※ 미국의 대표적인 개도국정보통신인력 양성 프로그램인 USTTI에 참여하는 개도국 인사의 여비 및 체제비를 USAID가 지원하고 있음
- USTTI(United States Telecommunications Training Institute)
  - 민·관협력의 개도국 정보통신 인력양성 프로그램
  - 현재 98개 과정을 운영중, 1998년부터 지금까지 약 150개 국가의 IT 전문가 8,546명을 양성, 지원
- DFI(Digital Freedom Initiative)
  - 전자상거래 등의 개도국 인프라 활용 극대화 방안마련 및 지원
  - 개도국 36만개 중소기업에 기술인력 파견(2003년 기준)
- Internet for Economic Development Initiative
  - 전자상거래, 원격교육 및 진료, 전자정부, 환경감시 등 ICT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을 13개 개도국에서 진행

### ☐ 일본

- G-8 Kyushu -Okinawa Summit(2000)
  - 국제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150억 달러 지원 및 활용

※ 원격교육 및 훈련을 목적으로 한 30개 규모의 IT센터 설치지원사업(J-NET), 지리정보시스템 설치사업(GIS), IT관련 연수과정 운영, UNDP-IT기금의 지원(500만불), 인도네시아 세관행정 IT협력

### ○ Asia Broadband Program(2002)

- 아시아-북미 및 아시아-유럽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구축
- 아시아 문화자산 디지털 저장소 등의 디지털 콘텐츠 구축
- ICT 훈련센터 및 개도국인사 초청 및 파견 등의 인력양성
  - ※ 현재 100여개 교육과정에서 총 1,175명의 IT 전문가 교육 실시, NTT, KDDI 등 자국내 IT기업에서 ICT Trend, e-government, Internet Application, Wireless Tech를 교육

### ○ 개도국 정보화를 위한 APT IT기업에 위탁 교육과정 운영 (2003)

- 기본 32만불의 분담금 이외에 특별분담금 140만불 추가지원

### ☐ 영국

### ○ Imfundo Partnership Program( )

- 개도국의 교육서비스 개선을 위한 IT 활용방안 마련 및 기업·정부·NGO의 활동 조정
- 원격교육, 정보시스템, 원격진료, 인터넷 연결확대, ID21 등과 관련된 프로젝트 실시 및 IT를 개발협력에 광범위하게 활용
  - ※ 사하라에서 시범프로젝트를 운영, 감비아, 남아공, 우간다 등 아프리카 국가 중점지원

### ○ UKTA(The United Kingdom Telecommunications Academy)

- 대학 및 통신관련 산업체와의 협력 교육과정 운영
  - ※ 통신 및 전자상거래 분야를 중심으로 총 24개의 교육과정운영

## 5. 전 망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IT수준을 바탕으로 IT분야에서 지속적인 비교우위 유지 및 해외진출의 확대 등 IT가 국가 경쟁력의 원동력 역할

- 초고속인터넷 보급률 1위('03), 국가정보화지수 7위('03), ITU 디지털 접근지수 4위('03) ????
- 우리경제에서 IT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IT산업발전이 경제성장의 원동력
  - ※ IT 분야의 수출비중은 2003년말 기준 전체 수출대비 29.3%
  - ※ OECD 국가 평균을 1로 했을 때 한국의 수출 IT특화도는 2.03으로 아일랜드에 이어 2위임(KISDI, 2003. IT산업경쟁력국가비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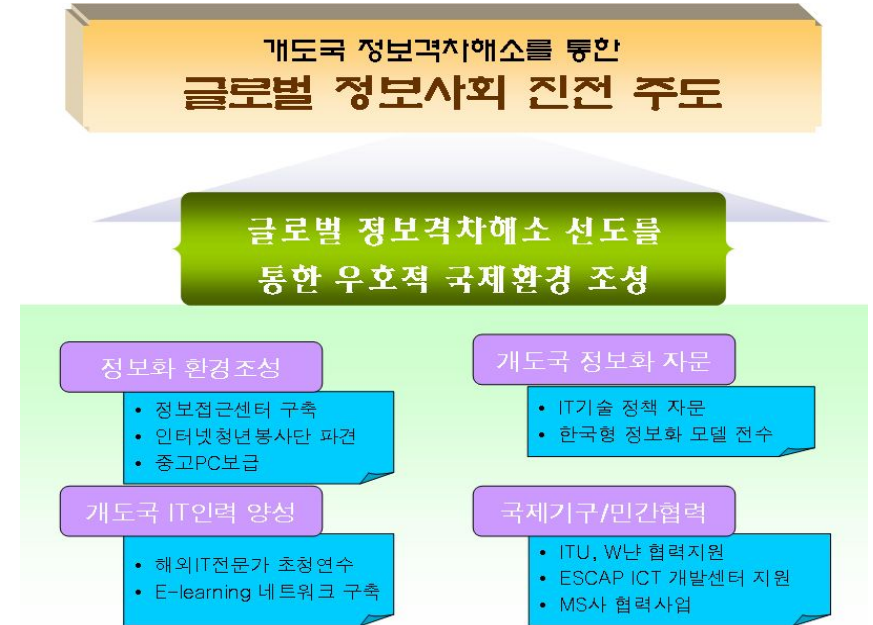
□□국제정보격차해소 사업은 ICT를 활용한 개도국의 경제사회 발전을 지원하는 국제협력(International cooperation) 수단임

- 선진국들도 '개도국의 정보화 지원'이나 실질적으로는 협력사업을 통한 자국 IT 산업의 수출기반 조성을 도모
- 패러다임변화(paradigm shift)에 맞추어 국내 IT산업의 해외진출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의 전략화가 요구되고 있음

□□인도적 차원에서의 정보통신 기술지원의 기초를 유지하면서, 향후에는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해외진출강화와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주로 한 전략적 추진이 요청됨

## Ⅲ. 비전과 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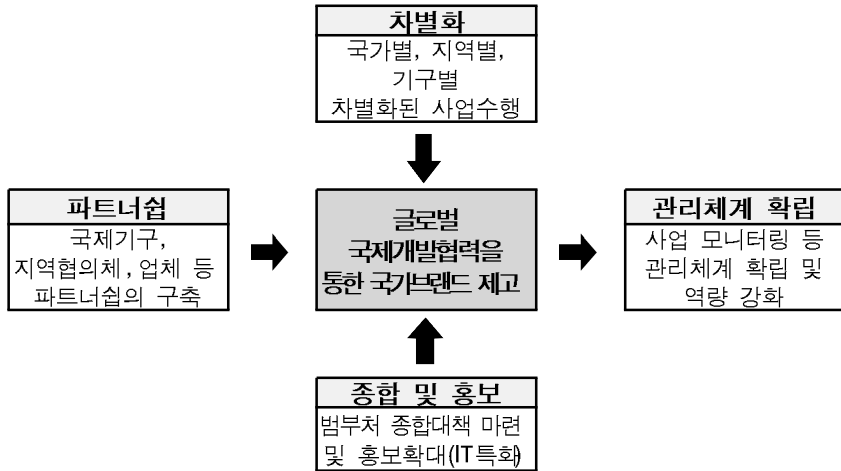
### 1. 비전과 목표



### 2. 추진전략

- 국가별, 지역별, 기구별 차별화된 사업수행(On-Demand)
- 국제기구, 지역협의체, 업체 등 협력 파트너쉽 구축(Partnership)
- 사업관리체계 확립 및 역량 강화(Capacity Building)
- 범부처 종합대책 마련 및 홍보 확대 (Organization & PR)

### 3. 추진전략 모형



### 4. 세부 추진전략

#### □□국가별, 지역별, 기구별 차별화된 추진전략 마련 및 사업수행

- 대상 국가의 시장규모(market scale)와 정보화 수준 등 수요국 현황에 적합한 사업 추진
  - 시장규모와 정보화수준의 낮은 국가에는 IT 마인드촉진과 국가이미지 제고, 관련 사업을 통해 장기적 진출기반 조성
  - 반면 시장규모/정보화수준이 높은 국가는 정보 활용 관련 사업을 통해 국내기업의 수출지원과 연계
- 국제기구의 지위, 성격, 영향력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협력체제 설정
  - 지역공동체 성격의 국제기구와(APT, ESCAP 등)는 인력양성, 정보화 프로젝트 사업 공동수행
  - 범세계적 국제기구(UN, ITU, World Bank)와는 정책개발 및 기술지원, 지수(Index)개발과 같은 연구 사업수행

#### ○ 사업범위확대 및 권역별 사업추진

- 협력 개도국의 대부분이 아·태지역국가에 한정됨
  - ※ 2004년 현재 개도국 정보접근센터(IAC)가 구축된 5국가 중 3국이 동남아시아 지역에 위치(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초청연수생의 70.7%가 아·태지역 교육생
- 기 진행중인 아·태 지역의 협력관계를 공고화하고, 중남미, 중동, CIS 국가를 대상으로 사업범위 확대
  - ※ 중남미, 중동, CIS 지역은 현 IT수출비중은 낮으나 주요 수출국에 비해 20~30%의 수출성장세를 시현하는 등 향후 잠재적 수출시장으로 부각

#### □□국제기구, 지역협의체, 업체 등 협력 파트너십의 구축

- 국제기구 파트너십 유지·확대
  - 협력사업 국제기구와의 협력 내실화
    - WB, UN ESCAP, The Colombo plan 등과도 협력
  - 국제기구의 국제정보격차해소 프로그램에 적극참여
    - ITU-D 가입 및 WG, WSIS 등 참여
- 지역협력체 파트너십의 강화
  - The Arab League(아랍연맹), ACD(Asian Cooperation Dialog), ASEAN, APEC 등 지역협력체를 통해 홍보 및 수요조사 실시
- 해외진출 업체와의 파트너십 강화
  - IT관련협회 및 민간업체와의 상시적 커뮤니케이션 채널확보
    - ※ 웹사이트를 운영, 온라인 커뮤니티 구성, 메일링 리스트 활용 등 해외협력사업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 활용
  - 기업지원기관과 정보교류를 위한 공동대응협의체 운영
    - ※ iPark, 비즈니스 포럼, 시장개척단 등의 행사공동 개최
  -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통해 수집된 정보의 기업 적극 활용
    - ※ 초청연수생 DB 등을 바탕으로 마케팅을 통한 국내기업현지진출지원

## □사업 모니터링 등 관리체계 확립 및 역량 강화

- 성과중심적 관리를 위한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체제의 구축
  - 국제협력사업 전반의 사업평가를 담당하는 평가위원회의 설치 검토
  - 사업성가를 구체적으로 계량화하는 지표(Index)를 개발하여, 사업의 경제적·사회적 효과를 도출하고 효율화 도모
- 사후관리의 강화
  - 초청연수 인적 DB 관리 및 뉴스레터 발송 등 고객관리기법도입
  - 개도국에 제공된 정보접근센터 및 기기 사후관리방안 마련
- 사업역량 및 연구기능의 강화
  - 지속적인 신규사업 발굴을 위한 수행기관간 공동 워크샵 개최 및 정기 제안제도의 활성화
  - 국제 지역전문가와 정보정책 전공자 중심의 인력풀(pool) 구축 및 협력 사업 수행 인사간 인사교류·상호 정보교환 채널확보를 통해 사업인력의 전문성 증대

## □범부처 종합대책 마련(국무조정실) 및 홍보확대

- 범부처적 협력체계 구축 및 협력 공식화(IT분야 특화)
  - 국제협력사업 등 타부처사업과의 조율 및 공동관리 방안 마련
  - 범부처적 국제개발협력(대외원조) 종합대책 마련(국조실 주관)
- 전략적 홍보활동 강화
  - 유망 IT수출기업 아이템 및 국제적 브랜드 가치제고를 위해 해당국가에 대한 전략적 홍보전략을 수립, 시행
    - 국제협력 Portal 웹사이트, 커뮤니티 구성을 통한 국제기구 및 관련국가에의 사업홍보
    - 국내 IT업체의 수출아이템과 기술개발상황에 대한 홍보강화
  - 시장 급성장국가와 잠재적 성장국가를 중심으로 국가이미지 및 인지도를 제고하여 국내제품의 판매환경조성
  - 언론, 전문가 집단 등에 IT분야 국제개발협력에 대해 홍보 강화
  - 국제기구, 해외언론, 웹사이트, 국제정보격차해소 활동 관련 국제 Community를 통해 국외 홍보 강화

## VI. 중점 추진과제

### 1. 추진과제 선정배경

□개도국 정보화환경 개선 및 정보화 사회 진전 등 ICT를 활용한 지속 가능한 경제, 사회 발전의 패러다임 변화의 필요성 대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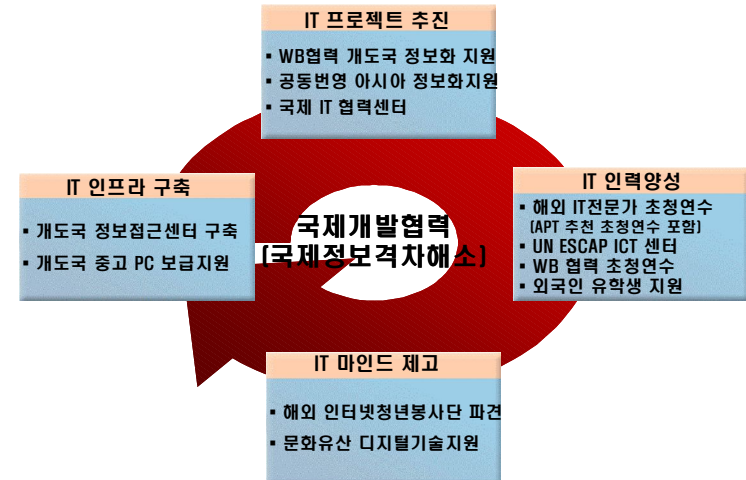
- 지식정보사회의 진전으로 ICT가 국가경제의 핵심 수단으로 인식됨에 따라 선·후진국간 정보격차와 지식격차의 해소가 중요

□국제사회에서는 우리나라를 정보화의 모델로 선정하고, 국가간 Digital Divide 해소에 적극적인 기여를 기대함

### 2. 추진과제 선정결과

□추진과제 : 국제개발협력(국제정보격차해소)

□국제정보격차해소사업 체계도



### 3. 추진계획

#### 추진방향

우리 IT기업 및 상품에 대한 친근한 이미지 형성과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해외 IT시장개척 ↔ 개도국 정보격차해소 활동을 연계하는 등 외교적 목적뿐만 아니라 경제적 목적도 함께 고려함

※ IT의 특수성 : 일회성이 강한 일반 무상원조와는 달리 IT분야는 수혜국의 IT발전과 정책 및 산업에 연계가 되어야 하며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로 함

< 참 고 : IT부문 국제정보격차해소 사업 추진 주요 국가 사례 >

- 일 본 : 아시아 브로드밴드 프로그램 추진 (총무성)
- 미 국 : Digital Freedom Initiative 추진 (상무성)

#### □ 전략지역(중남미, 중앙아시아, 중동, 동남아, 아프리카 등)에 대한 IT분야 수요를 바탕으로 집중 지원함으로써 미래시장 선점을 위한 환경 조성

- ※ 경제적 효과 : 현대정보기술에서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에 IT기업 진출('04년)
- ※ 외교적 효과 : UN ESCAP ICT 개발센터 유치시 지지표명국이 개도국 정보격차 해소사업 대상국이었음('05년)

#### □ 해외IT초청연수, 인터넷청년봉사단, 개도국 정보접근센터 등 등은 경제적·외교적 효과가 큰 사업에 대해 사후관리 체계 구축

#### □ 전략적인 마케팅이 될 수 있도록 우호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

#### □ 양국간 협력관계 구축 및 IT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인적 자원으로 활용

#### □ 평가 및 사후관리 시스템 정비 (ODA 개선 대책 마련중, 국조실)

-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3자 평가방식 도입 및 사업의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해 사업주기별 모니터링 등

### < 국제정보격차해소사업 이행계획 >

#### ○ 현황과 여건

- '98년부터 개도국 IT능력 제고를 위해 IT 정책결정자(공무원), 연구원, 기업체 CEO, 언론인 등 1,841명을 초청하여 장·단기 연수 실시하는 IT인력 양성 지원
- '02년부터 아시아·동유럽·중동 지역 주요 전략국가에 정보접근센터 8개소를 설립하여 해당국 IT 인프라 구축을 지원
  - ※ 캄보디아, 루마니아, 베트남, 이집트, 필리핀, 불가리아, 라오스, 튀니지
- '01년부터 1,346명의 인터넷봉사단을 파견하여 54개 국가에서 약 35,364명에게 봉사활동을 펼쳐 현지의 뜨거운 호응 얻음
- UN ESCAP 회원국(62개국)간 정보격차 해소와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ICT 전문교육훈련 기관을 유치 및 설립(매년 120명교육)
  - 정책결정자(고위공무원, 기업 CEO 등), 관리자, 강사양성 과정(IT 교육기관 실무자, HRD 담당자, 컨설턴트) 등 6개 과정 운영(인천 송도 경제자유구역)
- WB와, IT협력센터 등을 통해 중남미, 중앙아시아, ASEAN 지역을 대상으로 국가 정보화 기술지원 자문 실시
- ASEAN, 동유럽 등 지역의 정보화를 위해 IT 정책 자문, 공동프로젝트 수행, IT기술교류 수행

#### ○ 분야별 이행계획

- IT인력양성
  - 해외진출 전략국가 공무원 및 사회지도층 250명을 대상으로 IT 초청연수 실시 및 국제 IT학위과정 운영(40여명)
  - UN ESCAP ICT센터 지원을 통해 한국형 정보화 모델을 전파하고, 현지 인적 네트워크 구축(매년120여명 초청교육)
- IT 마인드 제고
  - 중남미, 중동, 아시아 등 세계 30여 개국에 총 300명의 인터넷청년봉사단 파견 (중국, 중앙아시아 지역 동포 지원 포함)

- 세계문화 유산에 대한 디지털화 복원 등에 IT기술 지원('06년종료)

- IT인프라 구축

- 주요 IT 진출 유망국가 2개국에 정보접근센터 구축 및 IT환경이 열악한 개도국에 중고 PC 지원 확대(4천여대 수준)

- IT프로젝트 추진

- WB와 공동으로 중남미 등 소외지역의 1~2개 개도국 정보화 전문 자문 및 ASEAN 국가 대상 IT정책자문 2개국 추진
- ※ 국가정보화종합계획 수립, 통신인프라 구축 정책에서 통신수요 활성화 및 경쟁정책, CDMA, Broadband의 발전 정책, 정보보호 등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직접 프로젝트 수행
- 국제IT협력센터를 통한 중남미, 아시아 전략지역 등을 대상으로 정보화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정부간 IT협력 채널 구축(2개국)

○ 문제점

- 정책적 측면

- 대외원조 사업의 특성과 잠재시장 확대 등 장기적인 효과 보다는 단기적인 성과기대로 재원조달에 어려움이 있음

- 사업성과 및 관리 측면

- 전문분야별, 기관별로 수행되고 있는 사업들간에 상호 연계, 통한 사업 효율성 증대 및 시너지 효과 극대화 필요

○ 개선방향

- 중기(中期) 국별 지원전략 수립

-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라 중점지원국을 선정,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대외지원정책의 계획성 강화와 종합적인 개발방식 마련
  - 아·태지역국가를 중심으로 하되, 기타 대륙별 3~5개 거점국가 포함
- 중점지원국의 경우 2~3개 중점협력분야, 일반지원국의 경우 1~2개 중점협력분야로 선택과 집중
  - 개도국의 우선순위, 개발잠재력, 협력수준, 외교적·인도주의적 고려, 우리의 비교우위를 고려한 국별 차별화로 접근

- 관계부처와의 정책대화를 통해 IT분야 지원가능규모 조정

- 분야별 지원전략 수립

- 우리 IT산업 진출과 상품홍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략적 분야 선정
- 수요자 중심의 지원 원칙하에 개도국과의 파트너쉽 중시
  - 개도국의 자체 개발계획과 우선순위를 존중하고 가급적 경제개발전략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지원
- 대외원조와 IT기술을 패키지화하고 각종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원조사업을 상호 연계하는 부문별 패키지 지원 검토
- 우리기업의 대개도국진출지원 분야 및 사업 발굴

- 현장중심적인 사업수행

- 개발협력의 현장에 위치한 공관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현장 여건에 맞는 시행체제 강화
  - 사업 발굴단계부터 수원국 의견 수렴 및 진행과정에서 공관과 사전협의

## V. 추진체계

### 1. 자원계획

#### □ 예산조달 : 통특출연금

- 원활한 자원 확보와 사업의 효율화를 위해 수혜국과 공동분담하는 매칭펀드 방식으로 추진

#### □ 예산분배 계획

(억원)

구 분		'06	'07	'08	'09	'10	계
개도국 IT인력양성	해외 IT전문가 초청연수	23.7	28.7	22.52	23.19	23.89	122
	외국인 국제IT정책 및 기술과제	33	33	35	35	20	156
개도국 정보이용 환경 개선(봉사단 파견, 센터 구축)		27.23	36.5	25.87	26.64	27.23	143.47
국제IT 협력센터		11.30	12.40	10.74	11.06	11.30	56.8
개도국 IT자문(공동운영, WB협력)		12.85	12.85	12.21	12.57	12.95	63.43
UN ESCAP 센터 지원		5	5	5	5	5	25
계		113.08	128.45	111.34	113.46	100.37	566.7

### 2. 추진일정

구 분		'06	'07	'08	'09	'10
개도국 IT인력양성	해외 IT전문가 초청연수	●	●	●	●	●
	국제 IT 정책과제	●	●	●	●	●
개도국 정보화 환경 개선	해외인턴쉽청년봉사단 파견	●	●	●	●	●
	정보접근센터 구축 지원	●	●	●	●	●
	국제IT 협력센터 구축	●	●	●	●	●
개도국 IT자문(공동운영, WB협력)		●	●	●	●	●
UN ESCAP 센터 지원		●	●	●	●	●

### 3. 성과지표

세부과제	성과지표
4-4-1. 대상국가 및 기구별 차별화된 사업수행	개도국 정보화 지원실적
4-4-2 협력 파트너십의 구축 (Partnership)	국제기구 협력건수 및 국내 IT업체 참여건수
4-4-3 사업 모니터링 및 역량 강화	해외 IT인력 및 정보 DB 구축건수
4-4-4 조직체계 개편 및 홍보 확대	해외 언론보도 횟수

## 대외원조 개선 종합대책

2006. 10

- 소관부처 : 국무조정실
- 협조부처 : 외교통상부  
재정경제부

- 지난 4.30 자원배분 국무위원 회의에서 대외원조 (ODA) 체계의 효율화를 전제로, 2009년까지 원조 규모를 GNI 대비 0.1%로 확대하기로 결정
-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민간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중장기 국가전략차원에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 대외원조 정책의 시스템 개선, 원조의 효율성 제고 및 국민 참여확대 등을 통해 개도국 빈곤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우리 국가 이미지 및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대외원조 개선 종합 대책」을 보고 드리고자 함

## 목 차

I. 국제개발협력 종합대책(요약) .....	197
II. 대외원조 개선 종합대책(상세) .....	205

## I. 국제개발협력 종합대책(요약)

### 1. 배경 및 추진경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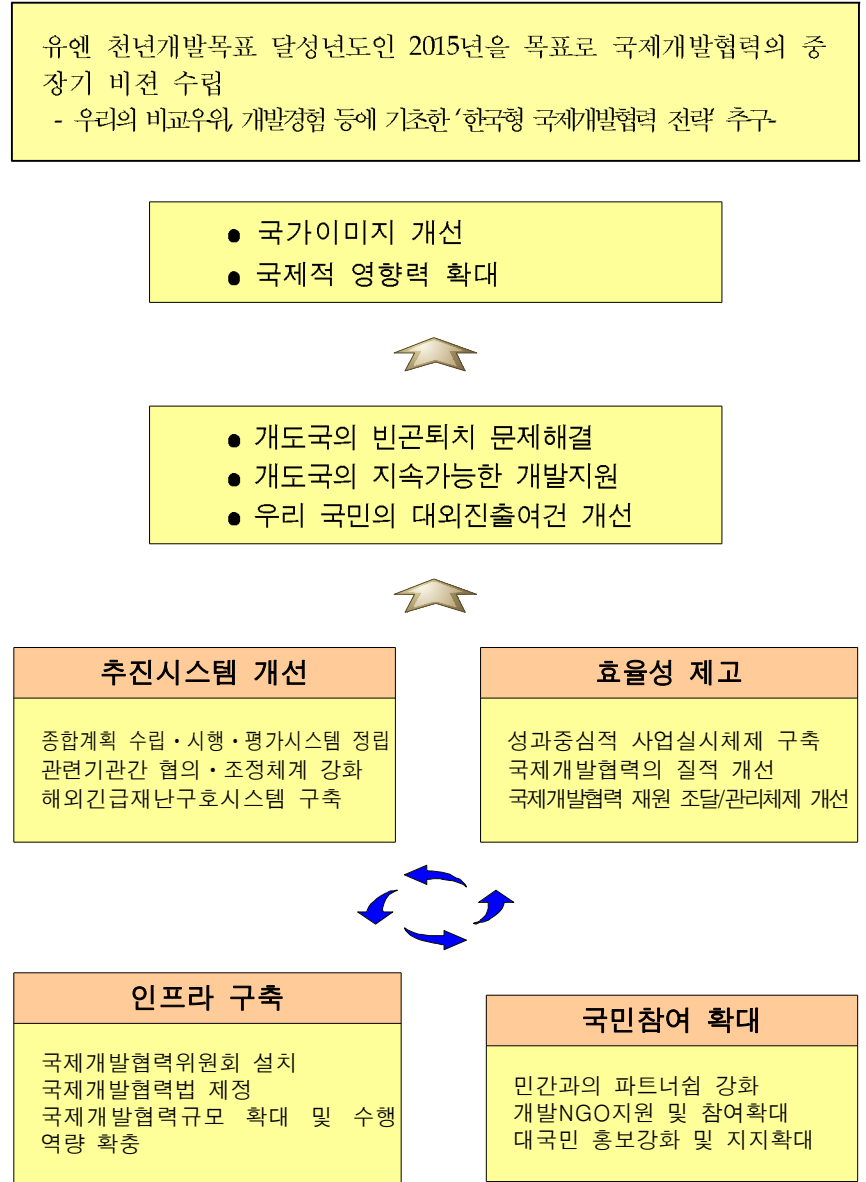
- 재원배분 국무위원회('05.4.30)시 대외원조 운영체계 효율화를 전제로 원조 규모 확대 결정
  - 2009년까지 GNI대비 0.1% 달성목표 설정
-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국제개발협력 전반에 관한 종합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 관계부처, 기관 및 NGO등이 참여하는 'ODA개선협의회'를 운용, 의견 수렴
  - 아울러 대국민 여론 조사, 해외실태조사 및 대외경제정책 연구원의 연구용역도 실시
    - 관계부처 차관회의(11.9) 결과를 반영, '국제개발협력 종합대책(안)' 수립

### 2. 종합대책안 주요내용

- **현행 국제개발협력 운영상의 문제점**
  - 국제개발협력의 통합적 이념, 목표, 전략 부재
    - 기관·기금 설치를 목적으로 한 현행 법률체제 (국제협력단법, 대외경제협력기금법)로는 전반적인 국제개발협력 목표, 관리시스템 및 조정기구 등을 규정하기 곤란
  - 국제적 지위와 경제적 능력에 비해 국제개발협력 규모 미흡

- '04년 우리의 국제개발협력 규모는 4.2억불로 국민총소득(GNI) 대비 0.06%에 불과
  - ※ 경제규모가 비슷한 호주(0.25%), 네덜란드(0.74%) 및 1인당 소득이 비슷한 포르투갈(0.63%), 그리스(0.23%)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 종합적인 정책수립 및 조정 취약
  -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조정기구 부재로 조정 및 통합기능이 취약
    - 중장기 원조정책수립, 국별지원 계획수립 등에 대한 협의·조정 미흡
      - ※ 현재는 중장기적 국별지원 계획없이, 일회성 프로젝트 위주로 진행
  - 유·무상사업간 사전 협의 및 조율 미흡으로 종합적인 연계효과 기대곤란
- 성과중심적인 국제개발협력체계 미비
  - 수원국의 분야별 우선순위, 우리의 비교우위 등을 고려한 국제개발협력 추진전략 부재
  - 유무상 원조의 계획성, 효율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 부재로 성과중심적 사업 추진 곤란
    - ※ 개별적인 사업평가는 실시중이나, 정책과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평가는 없는 실정
  - 현장 우선적인 국제개발협력 수행체계 미흡
    - ※ 선진공여국들은 수원국의 수요를 잘 파악하고 있는 현지 공관의 역할 중시
- 대국민지지 및 참여기반 취약
  - 국민들의 국제개발협력의 중요성과 국제적 역할에 대한 이해가 부족
    - ※ 우리정부의 대외원조 제공사실에 대한 내용인지도가 37%에 불과 ('05.8. 국무조정실 여론조사)
  - 개발NGO, 대학, 민간기업 등과의 파트너십 체계 구축 미흡

## □ 개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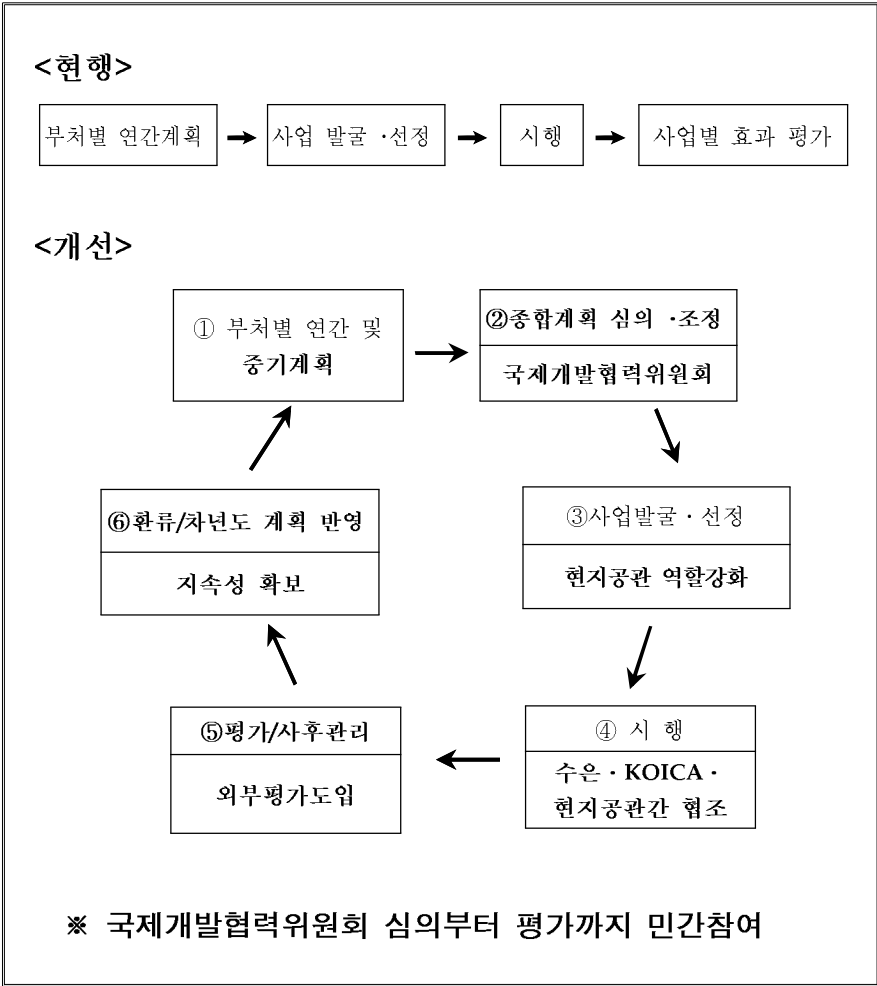
○ 한국형 국제개발협력모델 정립

- 우리의 비교우위분야에 집중, 원조성과 및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국가전략 차원의 국제개발협력모델 개발
- 우리의 비교우위분야에 중점지원
  - △경제개발경험 △빈곤퇴치(보건위생, 환경 등) △IT분야 △인적자원개발 △인프라구축 등에 주력
  - 민주주의 가치 향상, 인간안보(난민지원, 치안유지 등)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지원도 강화
  - 수원국의 수요와 우선순위에 적극 반영
- 유·무상원조 수단을 다양하게 혼합·연계하여 활용

○ 진시스템 개선

- 목표, 전략, 집중지원 대상국가 등을 포함한 종합계획 수립
  -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등이 참여하여 연도별 및 중장기 계획 등을 심의·확정
- 유·무상 정책 및 시행부처간 협의·조정체계 강화
- 평가 및 사후관리시스템 정비
  - 평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3자 평가방식 도입
- 해외 긴급 재난구호 시스템 구축
  - 외교부를 중심으로 해외재난 지원·관리체계를 구축

사업수행 체계도



○ 효율성 제고

- 성과 중심적 사업 실시체계 구축

-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라 3~5년 단위의 中期 국별 지원전략을 수립
- \* 아태지역국가를 중심으로 하되, 대륙별 3~5개 거점국가 포함
- \* 중점지원국의 경우, 2~3개 중점협력분야, 일반지원국의 경우, 1~2개 중점협력분야로 선택과 집중
- 비교우위분야를 중심으로 유무상자금과 기술을 패키지화하고 각종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원조사업을 상호 연계

- 국제개발협력의 질적 개선

- OECD 기준에 부합토록 점진적·단계적 Untied화
- 무상원조비율을 단계적 상향 조정
- 최빈국에 대한 지원강화
- ※ 우리의 GNI대비 최빈국 지원 비율은 0.01%로 DAC의 1/8 수준

- 중점 지원국가에 대해 다년간 예산 지원방안 검토

-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 확보방안 강구

- 수출입은행(EDCF) - KOICA간 업무협조 등 연계 강화

○ 인프라 구축

- '국제개발협력위원회'(위원장 : 총리) 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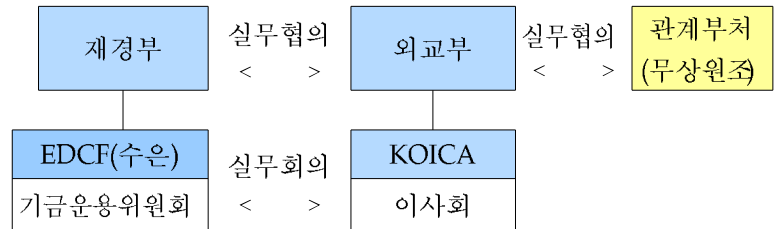
- 국제개발협력 종합계획 수립 및 정책조정등을 위한 기구로서, 위원은 관계부처 장관, 수출입은행장, 국제협력단, 경제계, 시민단체 대표, 전문가등으로 구성
-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위원장: 국무조정실 기획차장)를 설치
- ※ 우선 대통령령으로 동 위원회 설치 추진

국제개발협력 정책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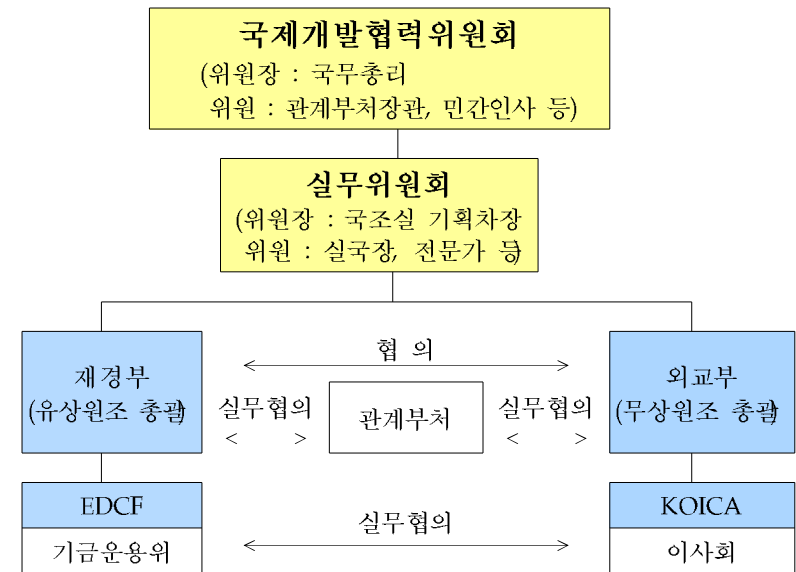
[현 행]

<유상원조>

<무상원조>



[개 선 후]



- ‘국제개발협력법’ 제정
  - 유·무상원조를 포괄하는 원조이념 및 전략, 추진체계,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관련기구 설치, 해외 긴급재난구호 등을 규정
- 원조규모의 확대
  - 2015년까지 ODA/GNI 비율 '04년(OECD DAC 평균) 0.25%로 확대 검토
- 원조수행 역량 확충
  - 대외원조 전문인력 양성, 연구조사기능 강화,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
- OECD DAC 가입 추진
  - 2010년 전후를 가입시점 기준으로 검토하되 원조목표 달성 추이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결정
  - ※ 한국은 OECD산하 26개 위원회중 DAC에만 유일하게 미가입
- 국민참여 확대
  - 민간과의 파트너십 강화
  - 개발NGO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NGO사업 지원방식 다양화 추진
  - 대국민 홍보 강화
    - 워크숍, 강연회 개최, 뉴스레터 배포 및 인터넷 홍보, 대외 원조교육 강화 등 다양한 국민인식 제고 프로그램 실시

### 3. 향후 추진계획

- 세부추진계획 마련('05.11~12)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설치 규정 마련 및 출범('05.12~'06.1)

## II. 대외원조 개선 종합대책(상세)

- 글로벌 리더국가를 향한 한국형 원조 전략-

### 1. 정책 환경

- 2000년 유엔 천년개발목표(MDGs) 채택을 전후로 개도국의 빈곤퇴치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국제사회의 공동노력 요구 증대
  - UN을 중심으로 빈곤완화, 지구환경보전, 대개도국 원조 증대 등 범지구적 문제의 논의 증대
    - '05.9. 「UN 특별정상회의」 선언을 통해 선진국에 대해 대외원조(ODA)<sup>12)</sup>를 국민총소득의 0.7%까지 제공토록 재확인
- 세계 11위 경제규모와 대개도국 경제협력 증진에 상응한 원조 증대 요구
  - 인도적 및 범지구적 문제해결 노력에 동참요구 증대
  - 경제성장에 따라 해외시장개척 지원과 개도국으로부터의 무역역조 시정 요구도 집중
    - ※ 대개도국 무역흑자(역불) : 149('02)→218('03)→325('04)
- 기업, 시민단체, 일반국민 등의 대외원조에 대한 관심 고조
  - 세계는 대외원조를 통한 개도국 시장진출 지원강화 요구
  - 민간원조단체는 ①대외원조 확대, ②민간원조단체에 대한 지원강화, ③시민참여형 대외원조 추진 등을 요망

12) 이하 본문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대외원조는 OECD에서 정의한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와 동의어로 사용, ODA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복리증진을 주목적으로 개발도상국 및 국제개발기구에 공여하는 증여와 양허성 차관(증여율 25%이상의 장기저리 차관)을 말함

- '04.12 남아시아 지진해일피해 복구지원을 계기로 대외원조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 ⇒ 글로벌 리더국가로의 도약을 위해 대외원조 활용 필요
  - ※ 대외원조를 국가이미지 상승, 국가R 등 전략적으로 적극 활용 필요

## 2. 대외원조 현황

### □ 대외원조 실적 ('04년 기준)

- 지원금액은 '91년 6천만불에서 '04년 4.2억불로 크게 증가
  - 국민 총소득(GNI)대비 규모는 '01년 이후 0.06%수준 지속
- '00년이후 양자간 원조가 60-80%, 다자간 원조가 20-40%를 차지
  - 양자간 원조중 유상비중은 '03년이후 이라크·아프간에 대한 거액 무상 원조로 인해 40%대로 하락(70%→40%)
- 지리적 분포는 아시아 61.1%, 중동 26.2%, 아프리카 5.5%
- 수원국 소득그룹별로는 중하소득국가에 51.1%, 최빈국을 포함한 저소득국가(최빈국은 26.1%)에 46.9%를 지원
- 지원분야별로는 총액의 53.5%를 교육·보건 등 사회인프라·서비스 부문, 30.6%를 경제인프라·서비스부문에 지원

### □ 실시 체계

- 재경부는 양자간 유상원조(EDCF), 다자간 원조중 국제금융 기구 출자·출연을 담당
- 외교부는 양자간 무상원조(KOICA 위주)의 85%를 담당하며, UN 등 국제기구에 대한 증여도 담당
- 정통부, 교육부, 과기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도 양자간 무상기술원조와 국제기구 증여 등을 시행(총액의 약 9%)

### □ 실시 절차

- EDCF 사업은 수원국의 차관신청부터 심사, 사후관리까지 순환단계에 따라 진행되며, 정부간 협정의 절차를 거쳐 시행
- KOICA는 다양한 형태의 무상자금협력사업(프로젝트형사업, 물자공여사업, 재난복구지원사업) 및 기술협력사업(개발조사, 연수생초청, 전문인력, 해외봉사단파견 등)을 정부간 협정 또는 협의를 거쳐 실시

## 3. 대외원조의 문제점

### □ 원조 이념 및 목적 부재

- 일부 목적이 KOICA법 및 EDCF 법에 부분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원조실시에 관한 이념, 목표, 전략 등 부재

#### <사례>

- ☞ OECD DAC 회원국 중 11개국이 각기 고유의 원조이념, 철학, 비전 및 목적들을 규정하는 법령 보유(20개국이 정책문서 보유)

### □ 국제적 지위와 경제적 능력에 비해 대외원조규모 미흡

- '04년 우리의 대외원조 규모는 4.2억불로 국민총소득(GNI) 대비 0.06%에 불과
  -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03기준, US\$12,000)과 비슷한 시점의 일본 대외원조규모('85)의 1/10수준에 불과

#### <사례>

- ☞ 경제규모가 비슷한 호주(0.25%), 네덜란드(0.74%) 및 1인당 소득이 비슷한 포르투갈(0.63%), 그리스(0.23%)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
- ☞ 태국도 '03년중 GNI 대비 0.13%에 달하는 1.67억불의 대외원조 제공
- ☞ 중국의 경우에도 '04년 7억불 상회

※ 단, 대북지원규모 감안시, 우리의 재정능력에 비해 적지않은 수준임을 대외적으로 적극 홍보 필요

○ 對개도국 무역흑자에도 불구하고, 대외원조지원은 인색하다는 평가

- '04년 우리나라는 325억불의 대개도국 무역흑자를 기록하였으나 대선진국 무역은 44억불 적자

※ 대외원조는 단순히 재원의 해외이전 또는 국부의 유출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국익의 증진 수단이 된다는 적극적인 사고 필요

- 무상원조일지라도 자국산 물품 및 인력제공으로, 일반적으로 원조액의 75%는 국내로 환수

※ 주요 무상기술원조 수행기관 및 사업

• KOICA, 정통부(인터넷봉사단과건, 연수생 초청 등), 교육부(개도국 유학생초청), 보건복지부(국제보건의료재단사업), 행자부(119구조) 등

※ 양자간 무상원조의 85%는 외교부(KOICA)가, 15%는 각 부처에서 시행중

• 무상원조 관계부처 실무협의회 (외교부 국제경제국장 주재, '05년 1월 설치)를 운영중이나 유상원조사업과의 연계·조정 부족으로 종합적인 원조효과 제고에는 여전히 미흡

⇒ 각 부처의 전문성을 살리면서도 원조사업의 총체적인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사전협의나 조정을 위한 절차와 장치 강화 필요

○ 기존의 원조정책 담당조직으로는 원조전략 및 원조규모 확대에 따른 정책기능 수행 곤란

- 외교부 및 재정부 공히 개발협력부서가 “과”단위 수준이며, 담당직원의 순환보직이동으로 인해 전문성 부족

- 정책수립 기능의 상당부분을 시행기관이 실질적으로 담당 또는 지원

### □ 대외원조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수립 및 조정 미흡

○ 원조에 대한 조정기구 부재로 조정 및 통합기능이 취약

- 유무상 총괄 중장기 원조정책수립, 대외원조규모 확대계획, 유무상 비율조정, DAC가입문제 협의, 유무상 통합 국별지원계획 작성, 동일 평가체제 적용 등에 대한 협의·조정 미흡

※ 감사원의 원조정책 감사의견(재경부와 외교부간 정책조정기능 활성화 필요)에 따라 05.1.부터 양 부처간 ODA실무협의회(국장급)를 운영중이나, 성과 미흡

○ 유무상사업간 연계부족과 성과제고에 한계

- KOICA사업과 EDCF사업간 사업 선정 및 시행과정에서의 연계 전략이 부족하고 개별프로그램 지원으로 성과제고에 한계

#### <사례>

☞ KOICA개발조사사업('91-'04년) 47건중 EDCF와 연계된 사업은 5건에 불과(연계율 약 10%)하나 일본의 경우 '04년도중 연계율이 20.4%(JBIC 엔차관 49건중 10건)

☞ 국별 특정분야(병원·직업훈련원 건립 등)에 대해 유·무상 정책 및 시행기관간 사전협의 없이 중복 지원하는 현상 상존

- 부처별 자체 국제협력사업(무상기술원조) 추진이 증가추세이나, 부처와 KOICA간의 정보공유·사전 협의 및 조율 미흡으로 종합적인 연계효과 기대곤란

### □ 성과중심적인 원조체계 미비

○ 전략적인 원조수행 계획 부재

- 원조이념과 목적을 반영하고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원조 추진 전략이 부재

- 수원국의 분야별 우선순위, 우리의 비교우위 및 우리의 실시기능분야를 고려한 국별 차별화 전략 부재

※ 현재 대부분 수원국의 요청에 따라 지원사업을 결정하며, 우리 주도의 적극적인 사업발굴 등 미흡

- 중점지원국에 대한 조사·계획기능(Country Programming)이 취약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원조실시 미흡

• 중장기적 국별 지원계획 없이 일회성 프로젝트 위주

○ 평가 및 사후관리체제 미흡

- 개별적인 프로젝트별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대외원조 정책과 프로그램 전반에 대한 평가는 거의 없음
  - 사업평가의 지연 또는 미실시, 일관성있는 평가기준 미비
- 유무상 원조의 계획성, 효율성,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체계 부재로 성과중심적 사업 추진 곤란

○ 현장 우선적인 대외원조 수행체계 구축 미흡

- 일부 무상원조와 유상원조(EDCF) 실시과정에서 해외공관과의 충분한 사전협의없이 진행하여 대외원조정책의 효율성 저하 우려
- 수원국의 수요(needs)와 입장을 잘 파악하고 있는 해외공관의 역할 강화 (decentralization) 필요
  - ※ 선진국들도 수원국 주재 공관의 역할과 현지판단 중시

□ 대국민지지 및 참여기반 취약

○ 국민들의 대외원조의 중요성과 국제적 역할에 대한 이해가 부족

- 우리정부의 대외원조 제공사실에 대한 내용인지도 37% ('05.8. 국무조정실 여론조사)

○ 개발NGO, 대학, 민간기업 등과 적극적인 파트너십 체계 구축 미흡

- 해외 NGO에 대한 지원 확대, 대외원조 사업에 대한 민간부문의 참여유도 및 연계강화 방안 마련 필요
  -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방안 검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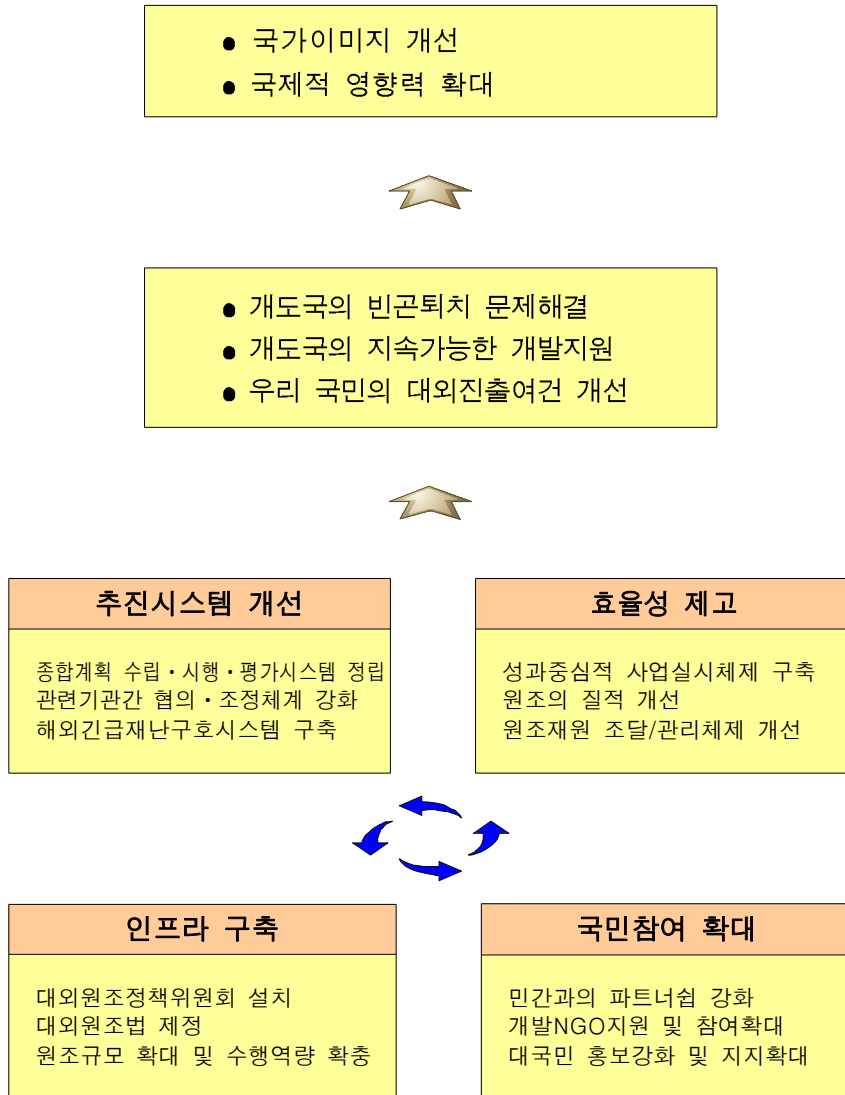
- UN 천년개발목표(MDG) 달성년도인 2015년을 목표로 우리나라 대외원조의 중장기 비전 수립

< 참 고 >

< OECD 회원국(DAC)의 ODA관리체계 주요 개선방향 >

구 분	기 존 방 식	개 선 방 향
기본정책	부처별 전략 분산형 원조 단년 지원계획 비전략적 지원 국익우선 공여국 중심 지원전략 구속성 원조 유·무상 혼합	국가발전 전략통합 통합형 원조 중장기적 다년간 지원 계획 전략적 지원 개발목표와 국익조화 수원국 중심 지원전략 비구속성 원조 무상 중심
지원국 분야	다국지원 방식 다분야 지원 경제협력국 중심지원	선택과 집중 방식 중점분야 지원 최빈국 우선 경제협력국 지원
수행방식	개별 프로젝트 방식 원조 수단별, 형태별 지원 본부 통제형 수행체계 수요조사 방식 정부 채널 자체 평가활동	국별 프로그램 방식 통합적 연계 지원 분권형 현장형 수행체계 정책대화 방식 지원 채널 다양화 독립적 외부 평가방식

#### 4. 한국형 대외원조 추진전략



#### □ 한국형 원조 모델 정립

- 필요성
  - 선진국들의 전통적인 원조방식과는 차별성을 지닌 우리의 원조정책을 개발
  - 우리나라의 비교우위 분야에 집중, 원조성과 및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국가전략차원의 원조모델 개발
- 전략적 지원 분야
  - 우리의 비교우위 분야에 중점 지원
    - △경제개발 경험 (경제기획 등), △빈곤퇴치(보건위생,환경 등), △인적자원개발(교육,직업훈련 등), △인프라 구축, △IT분야 등
  - 지식기반중심의 제도역량 배양, 민주주의적 가치 향상(good governance 등) 및 인간안보(난민지원, 치안유지 등)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지원 강화
- 원조 형태
  - 단기적으로는 자금이 풍부한 선진공여국과 차별화되는 분야 (예: 우리의 개발경험과 인적자원개발 등) 중심의 무상기술협력 및 유상원조를 적절히 병행
  - 중기적으로는 유·무상 원조수단을 다양하게 혼합·연계 활용한 부문별 원조(Sectorwide Approach: SWAp)\* 실시
    - ※ 개별 프로젝트 단위의 원조방법이 아닌 특정분야(Sector)와 관련된 제반 협력수단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하는 원조방법
- 중점지원 국가 및 지역
  - 경제 및 정치외교·인도주의적 필요에 따라 대륙별로 중점지원 대상국을 선정,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의해 원조 배정
    - 무상원조는 정치외교적 목적의 주요 달성수단으로서 지원국 선정에 있어 탄력적으로 적용하되, 인도주의적 목적으로는 가급적 최빈국을 지원
    - 유상원조는 개도국과 호혜적인 경제적 이해를 달성할 수 있는 국가를 지원하되, 가급적 상환능력이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지원

## □ 추진시스템 개선

- 종합적인 원조계획 수립·시행시스템 정립
  - 모든 관계부처의 계획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원조계획 수립
    - 연도별 지원 규모 및 분야, 중점지원 대상국가 등에 대한 계획 수립
  -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등이 참여하여 연도별 및 중장기계획 등을 심의·확정
- 관련기관간 협의·조정체계 강화
  - 유·무상원조 정책기관간 협의·조정 강화
    - 유·무상원조사업 발굴·계획수립·평가 등 주요 사안별 협의·조정기능 확대 (재경부·외교부간 'ODA정책실무협의회' 활용)
  - 무상원조 관련기관간 조율·협의 강화
    - 사업선정단계부터 협의·시행 (현행 외교부주관 '무상원조 관계부처 실무협의회' 활용)
- 평가 및 사후관리 시스템 정비
  - 원조정책과 프로그램전반, 개별프로젝트에 대한 평가를 위해 외부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3자 평가방식 도입 검토

### <사례>

☞ 일본, 네덜란드, 프랑스 등의 경우,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원조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를 수행

-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존시행기관 내부의 담당조직 및 평가기능 강화
- 사업참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반부패규정 준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원조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 대외원조 사업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와 사회문화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도록 하는 원조계획과 평가 규정을 제정

- 사업의 성공적 수행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주기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사후관리체계 확립

## ○ 해외 긴급재난구호시스템 구축

- 해외재난 지원에 대한 정부내 총괄부처가 미비하므로 해외재난 부문의 조직적, 입체적 지원을 위한 총괄 협의·조정 시스템 필요
- 외교부를 중심으로 해외재난 지원·관리체계를 구축
  - 정부기관의 해외재난구호 지원업무를 총괄·조정
  - 민간부문(예: NGO 등)과도 해외재난구호업무 사전조율 및 연계 강화
  - 해외재난 긴급구호를 위한 자금으로 KOICA예산에 일정액(예: 500만불~1,000만불)을 증액·편성하는 등 신속지원 대응방안 마련 검토

## □ 효율성 제고

### ○ 성과중심적인 사업실시체계 구축

- 중기(中期) 국별 지원전략 수립
  - 전략적 우선순위에 따라 중점지원국을 선정, 3~5년 단위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원조정책의 계획성 강화와 종합적인 개발방식 추진 필요
    - 아·태지역국가를 중심으로 하되, 기타 대륙별 3~5개 거점국가 포함
  - 중점지원국의 경우 2~3개 중점협력분야, 일반지원국의 경우 1~2개 중점협력분야로 선택과 집중
    - 개도국의 우선순위, 개발잠재력, 경제협력수준, 외교적·인도주의적 고려, 우리의 비교우위를 고려한 국별 차별화전략 수립
    - 정례적인 원조정책대화를 통해 우리나라 대외원조의 우선분야와 지원가능규모를 수원국에 사전에 통보하고 협의하여 대외원조재원의 예측가능성 제고

### ○ 분야별 지원전략 수립

- 비교우위분야를 중심으로 전략적 지원분야 선정
- 수요자 중심의 지원 원칙하에 개도국과의 파트너십 중시
  - 개도국의 자체 개발계획과 우선순위를 존중하고 가급적 빈곤감소전략(PRS)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지원

- 유무상자금과 기술을 패키지화하고 각종 프로젝트 및 프로그램 원조사업을 상호 연계하는 부문별 패키지원조 도입
- 우리기업의 개도국진출지원 분야 및 사업 발굴
  - EDCF의 경우, 3천만 달러이상의 대규모 사업도 지원할 수 있도록 건당 지원 규모의 상한을 탄력적으로 운영

○ 현장중심적인 사업수행

- 개발협력의 현장에 위치한 공관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현장 여건에 맞는 시행체제 강화
  - 사업 발굴단계부터 수원국 의견 수렴 및 진행과정에서 공관과 사전협의
  - 공관은 원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추진상황 점검
  - 개도국주재 공관의 담당인력과 전문성을 보장

<사례>

☞ 네덜란드, 프랑스, 일본 등 선진공여국은 대사관이 원조기관간 현지 조정을 총괄

□ 원조의 질적 개선

- 유무상지원 국가·분야 차별화 및 중장기적 무상비율 제고
  - 유상원조는 경제협력 등을 고려, 지원국가 및 분야를 선정하고 무상원조는 정치외교·인도주의적 목적을 고려하여 가급적 사회분야 중심으로 지원
  - 중장기적으로 무상원조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되, 지역별로 유무상 비율을 적절히 안배하는 방안 검토
    - ※ 중기재정운용계획 시안상 '09년도 양자원조중 무상원조는 45%

<사례>

☞ DAC 회원국의 '02-03년 대외원조(ODA)승인총액기준 평균 무상원조비율은 90% 내외 (양자원조의 경우는 86%)

- 일본은 DAC회원국중 최저치인 56%, 양자원조중 무상비율은 47%

○ 점진적·단계적 언타이드화

- OECD 등의 규제 및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유무상원조의 언타이드화를 점진적, 단계적으로 시행
  - 단,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컨설팅 능력배양 등을 통한 언타이드 원조 수주능력 제고 병행

○ 최빈국에 대한 지원 강화

- UN 천년개발목표(MDGs) 달성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빈국에 대한 지원을 강화
  - ※ 우리의 GNI대비 최빈국지원 비율(0.01%)은 DAC(0.08%)의 1/8수준

□ 원조재원 조달·관리체제 개선

- '09년 이후 ODA 규모 확대를 위해서는 중장기적 재원조달·확충방안 강구 필요
  - 유·무상원조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후 평가결과와 연계하여 재원조달·관리방안 강구
  - 재정부담을 경감시키면서 장기안정적인 신규재원 확보 방안으로 복권수익과 해외여행객에 부과되는 출국부담금의 일부 배분 방식 등 재원조달 방식 다양화 검토

<사례>

☞ 벨기에는 국제협력 복권 발행, 일본은 우정성의 우편예금이자 중 일부를 대외원조 재원중 하나로 활용

- 중장기적으로 신규원조재원의 일부로 환류되는 유상원조의 상환재원을 감안하여 재원조달 계획 수립

○ 단년주의와 다년도 국별지원계획과의 조화

- 대부분의 원조사업은 2~3년의 계속사업이나, 소요비용은 단년도 예산으로 편성

- 중점지원국에 대해 다년간(3~5년간) 예산(Multi-year)으로 패키지화하여 지원하는 방안 검토

○ 원조실시기관간 연계 강화

- 새로운 대외원조추진 시스템에 의한 정책결정에 따라 수출입은행(EDCF)과 KOICA가 각각 현행대로 유·무상원조 사업을 실시하되 실시기관간 연계를 대폭 강화
  - 국별 원조사업 및 프로그램 조정기준 등 설정 검토
  - KOICA개발조사사업과 EDCF지원사업간 사전연계
  - KOICA와 수은(EDCF)간 실무협회의 정례화
  - 유무상사업간 중점지원을 줄이기 위한 사전협의 조율
  - 사후 지속성강화를 위해 EDCF와 무상원조사업간 지원연계

□ 인프라 구축

○ 대외원조정책위원회 설치

- 필요성
  - 대외원조 종합계획 수립 및 정책 조정
  - 대외원조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
  - 재경부-외교부간 국장급 ODA 실무협의회가 있으나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부처간 협의기능을 보다 강화할 필요
- MDGs 달성 등 대외원조 환경의 변화에 부응한 일원화된 정책 시스템 구축 ('One Korean ODA Policy' 추진)

<사례>

- ☞ 프랑스 : 총리 주재 각료급 “부처간국제협력개발위원회(CICID)”
- ☞ 일 본 : 내각 관방장관 주재 “대외경제협력관계장관회의” (ODA안건만 상정)

- 설치 방안

- 총리실 산하 “대외원조정책위원회(위원장: 총리)”를 설치
  - ※ 지속위에서는 개도국 원조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원조정책심의회”를 총리실 산하에 설치 권고('04.6)
- 주요 기능
  - 대외원조의 중장기·연도별 기본계획 및 정책방향 심의·조정
  - 중점지원국 및 중점지원분야 지원전략 검토·확정
  - 대외원조 추진실적 평가
- 구성
  -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장관, KOICA총재, 수출입은행장, 경제계, 시민단체 대표, 전문가 등으로 구성
  -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 (위원장: 국무조정실 기획차장, 위원: 관계기관 실국장급 및 민간전문가)를 설치

○ 대외원조법 제정

- 제정 필요성
  - 기관이나 기금의 설치를 주목적으로 하는 현행 법률체제(KOICA법, EDCF법)에는 국가의 전반적인 대외원조이념과 관리시스템 및 정책조정 기구를 규정하기 곤란
- ⇒ 유·무상원조를 포괄하는 원조이념 및 전략, 관련기구 설치 등을 규정하는 통합법 필요
  - ※ 현행 KOICA법, EDCF법의 통합 또는 존치·병행 등은 법 제정과정에서 검토
- 주요 내용
  - 이념, 목적, 추진전략, 기본계획 수립
  - 원조정책수립, 집행, 평가등의 추진 시스템
  - 부처간 대외원조정책협의·조정기구 설치
  - 해외긴급재난구조
- ※ 대외원조법과 병행하여 구체적인 원조정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별도의 정책문서(예: 현장) 제정도 검토

○ 원조규모의 확대

- 국가위상 제고와 국익증진 등을 위해 우리의 경제력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지원 확대
  - 국가재정운용계획(05~09)의 국무위원 재원배분회의('05.4)에서 '09년까지 ODA/GNI수준 0.1% 수준으로 확대키로 잠정 합의
  - MDG달성 마지막 연도인 2015년까지 우리의 ODA/GNI비율을 최소한 현 DAC평균수준(0.25%)으로 확대 검토
  - ※ 유엔은 2010년까지 ODA/GNI 0.5%, 2015년까지 0.7% 권고,
  - OECD DAC가 회원국의 원조확대공약을 합산, 시뮬레이션한 결과, 2010년 DAC회원국 평균 ODA/GNI는 0.36% 예측
  - ※ 지속위는 2006년까지 GNP대비 0.1%, 2010년까지 0.2% 목표 설정 권고

< 2010-2015 장기 ODA확대계획 시뮬레이션 >

(단위 : 억원)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ODA 총지출	12,323	15,869	19,797	24,138	28,930	34,209
GNI(조)	1,018.4	1,079.6	1,144.3	1,213.0	1,285.8	1,362.9
ODA총지출/GNI	0.121	0.147	0.173	0.199	0.225	0.251

[주요가정]

- 1) GNI : '03년 GNI 대비 2009년까지 연 8%(국가재정운용계획), 2010년 이후 연 6% 경상성장 가정
- 2) 2015년 ODA 총지출/GNI 0.25% 목표 매년 0.026%p증가 추정
- 3) 환율 : 1,050원/달러(국가재정운용계획) 적용

○ 원조수행 역량 확충

- 전문인력의 양성
  - 대외원조 규모가 확대되고 분야가 전문화·다양화되고 있어 부족한 관련 전문가 양성 필요
    - 사업실시인력의 아웃소싱확대를 위한 전문 컨설턴트 육성
    - 특성화된 대학 또는 (국제)대학원에 학위과정 및 단기과정 개설을 지원하여 대외원조 연구 및 종사인력 육성

- 국제개발기구 (UNDP, 세계은행, ADB 등) 근무 유경험자 발굴 및 활용을 위해 관련 네트워크(DB등) 구축

- 국내 전문인력의 유엔·OECD등 국제기구 진출 지원

-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 선진국 및 다자간 기구와 원조사업을 공동 추진함으로써 비용 효과적으로 우리의 개발경험과 기술을 개도국에 전수하고 선진원조기법 및 경험을 습득
- 국제기구(IBRD, ADB등) 및 선진국 공여기관과의 협력체제를 강화하고 양자간·다자간 원조정책협의를 활성화
- Co-financing을 통한 공동사업 적극 참여
- 특히 국제개발기구에 설치된 신탁기금(Trust Fund) 등을 적극 활용하고 관련 전문인력 양성 노력을 배가

- 연구조사기능 강화

- 정책부처는 물론 집행기관의 연구조사기능은 매우 취약
  - KOICA 및 수은의 경우, 인력부족 등으로 인해 연구조사기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 단기적으로 국내대학 및 전문연구기관과의 용역계약 및 소규모 연구인력 확보를 통한 연구조사 기능 강화
- 중장기적으로는 ODA 및 개도국 지역연구 등을 전담하는 센터 설립 검토

<사례>

☞ 일본 JICA의 국제협력종합연구소, 영국 해외개발연구소(ODI), 캐나다 국제개발연구센터(IDRC)

- 종합적 지식-정보-인력 네트워크 구축
  - 대외원조 종합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원조사업의 전과정에 걸쳐 효율적인 정보와 인력 활용
  - 주요 원조대상국에 대한 정보를 종합한 DB를 구축하여 원조 시행부처 및 NGO등과 공유

○ OECD/DAC 가입 검토

- 가입 필요성

- DAC가입으로 국제사회로부터 존경받는 중견국가 이미지 제고와 국제개발협력에 있어서의 적정 역할분담이라는 공동의무 수행

※ 한국은 OECD산하 26개 위원회중 DAC에만 유일하게 미가입

- 장점

- 원조규모의 확대와 이로 인한 국제사회에서의 책임있는 역할 이행, 국가 신인도 및 위상 제고
- 국제적 원조논의과정에서의 능동적 참여로 우리 입장 반영, 및 선진원조기법 도입으로 인한 원조 효과성 증진

- 단점

- 원조사업에 관한 DAC의 규범 및 기준 준수로 우리 원조사업(특히 타이드원조) 시행에 제약요인으로 작용
- 우리의 재정여건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원조예산 확대 압력 증가

○ 가입 요건 및 시기

- 가입요건중 원조규모(1억불이상)는 기충족

- ODA전략, 정책 및 운영 체계구비, 사후평가 및 모니터링 제도마련 등의 조치 필요
- ※ DAC 가입요건은 원조규모 1억불 이상 또는 GNI대비 0.2%이상 충족

- 2010년 전후를 가입시점 기준으로 검토하되 원조목표 달성 추이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결정

※ 지속위는 OECD가입 10주년인 2006년을 목표로 DAC가입추진 권고

- DAC가입 준비반을 설치·운영하여 DAC의 가입 심사시에 대비

□ 국민참여 확대

○ 민간과의 파트너십 강화

- 국민들의 지지와 참여를 확보하고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원조정책수립 및 사업수행과정에 민간부문의 참여제도 구축
  - 개발NGO, 시민단체, 학계, 경제단체 대표 등을 “대외원조정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
  - 개발건설트러스트협회(또는 ODA사업 참여협의회)를 구성, 원조산업과 국제개발 산학연 협력체계를 전략적으로 육성
  - KOICA봉사단 참여기회 확대, 중장년실업 증대로 인한 퇴직인력 및 고령화시대 은퇴인력 활용을 위한 ‘Senior Volunteer 제도’ 확대

• 민간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연계

- 집행업무의 외주 가능분야 발굴 확대

- 프로젝트, 개발조사, EDCF차관 사업의 타당성조사 등 외주 확대
- 봉사단 파견규모 확대에 따라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해외봉사단 파견사업의 독립기구화 검토
- 초청연수사업에서 민간 위탁연수과정을 확대하고 장기 유학생초청 프로그램도입 확대

- 국민참여 확대 유도를 위해 봉사활동 참여시 혜택 부여나 대학 학점 부여 등 검토

○ 개발NGO 참여 확대

- 최근 국제사회의 원조는 민간과 NGO등 시민사회와의 상호연계 아래 지원을 강화하는 추세

- 선진국에서는 NGO를 원조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자 (Contractor)가 아닌 파트너로 인식
- “시민사회를 통한 원조(Civilateral)”를 양자(Bilateral), 다자 (Multilateral)원조 채널과 함께 3대 원조채널의 하나로 중시

<사례>

☞ DAC회원국의 개발NGO에 대한 지원은 대외원조(ODA)총액의 평균 2.14%(’02년, ’03년)이나 우리나라의 개발NGO 지원액은 전체 ODA의 0.5%(2001년, 2002년)수준으로 DAC평균의 1/4수준 (2003년도 개발NGO에 대한 지원 실적은 이라크·아프간 특별사업비 확대로 일시적으로 1.8%로 크게 높아졌으나 이후 다시 하락)

○ 개발NGO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NGO사업 지원방식 다양화 추진

- 무상원조 예산중 개발 NGO에 대한 지원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
- 사업의 선정 및 사후관리 단계에서 NGO의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성 제고와 우수 NGO에 대한 다년도 지원 추진
- 현 NGO 재정협력방식인 Matching Grants (사업별 일정비율의 사업비 지원) 방식외에 Block Grants (선별된 NGO들에게 일정액을 일괄지원) 방식 도입 검토

**<사례>**

☞ DAC회원국의 개발NGO에 재정지원방식은 대부분 Matching Grants 형식이며 프랑스, 아일랜드, 뉴질랜드 및 영국 등은 Block Grants 가미

○ 대국민 홍보강화를 통한 국민적 지지기반 확보

- 대외원조에 대한 국민들의 내용인지도가 37%에 그치는 등 대외원조 홍보 강화 필요성 증대
- 워크숍, 강연회 개최, 뉴스레터 배포 및 인터넷 홍보, 대외원조교육 강화 등 다양한 국민인식 제고 프로그램 실시
  - 방송프로그램 제작, 매년 10.24 UN의 날을 계기로 '국제협력주간' 설정, 국제개발자료관(ODA Archive) 설치 등
- 원조사업에 대한 민간모니터링, 대외원조성과의 대외공표, 대국민 여론조사 실시 등을 통해 대외원조정책의 투명성 제고 및 신뢰성 확보
- 대외원조사업현장에 학생, 교사, 기업인, 시민단체 회원등의 견학·시찰 주선

**5. 향후 추진계획**

- 세부추진계획 마련 ('05.11.12)
- 대외원조정책위원회 근거 규정 마련 및 출범 ('05.12~'06.1)
- 개선방안 시행 ('05.12-'06.12)

**6. 성과지표**

세부과제	성과지표
4-5-1 한국형 원조 모델 정립	ODA 총액 및 GNI 대비 ODA 비율
4-5-2 공적개발원조 추진시스템 개선	연도별 무상협력 및 유상협력 액수
4-5-3 개도국 원조 효율성 제고	지역별 국가별 ODA 액수
4-5-4 개도국 원조 인프라 구축	대외원조정책위원회 운영 실적
4-5-5 개도국 원조 국민참여 확대	해외사업 NGO 지원 실적

**< 첨부1 >**

**부처별 행정조치사항**

분야별 과제	행정조치사항	주관부처
1. 추진 시스템 구축	1.1 종합계획 수립·시행시스템 정립	외교부,재경부, 국조실
	1.2 관련기관간 협의·조정체계 강화	외교부, 재경부, 국조실,관련부처
	1.3 평가 및 사후관리 시스템 정비 - 조직 및 기능강화 방안마련	외교부,재경부, 국조실
	1.4 해외긴급재난구호시스템 구축	외교부, 관련부처
2. 효율성 제고	2.1 성과중심적 사업실시체제 구축 - 한국형 원조모델 정립 - 국별, 분야별 원조계획 수립 - 현장중심적 사업수행방안 마련	외교부, 재경부,관련부처
	2.2 원조의 질적 개선 - 무상원조 및 언타이드올 제고 - 최빈국지원 강화	외교부, 재경부
	2.3 재원조달 및 관리체제 개선 - ODA재원확충방안 마련 - 다년도 예산지원방안 마련	예산처,재경부, 외교부
	2.4 원조실시기관간 연계강화	외교부, 재경부
3. 인프라 구축	3.1 대외원조정책위원회 설치	국조실,외교부, 재경부
	3.2 대외원조법 제정	법제처,외교부, 재경부,국조실
	3.3 원조규모의 확대 - 2009년이후 중기 ODA확대계획 수립	예산처,재경부, 외교부
	3.4 원조수행역량 확충 - 전문인력 양성 -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 연구조사기능 강화	외교부, 재경부, 교육부
	3.5 OECD/DAC가입 - DAC가입준비반 설치	외교부,재경부
4.국민참여 확대	4.1 민간과의 파트너십 강화 - 개발컨설턴트협회 구성 - 원조시행업무의 외주 확대	외교부,재경부
	4.2 개발NGO지원 및 참여확대	외교부
	4.3 대국민 홍보강화방안 마련	국정홍보처, 외교부,재경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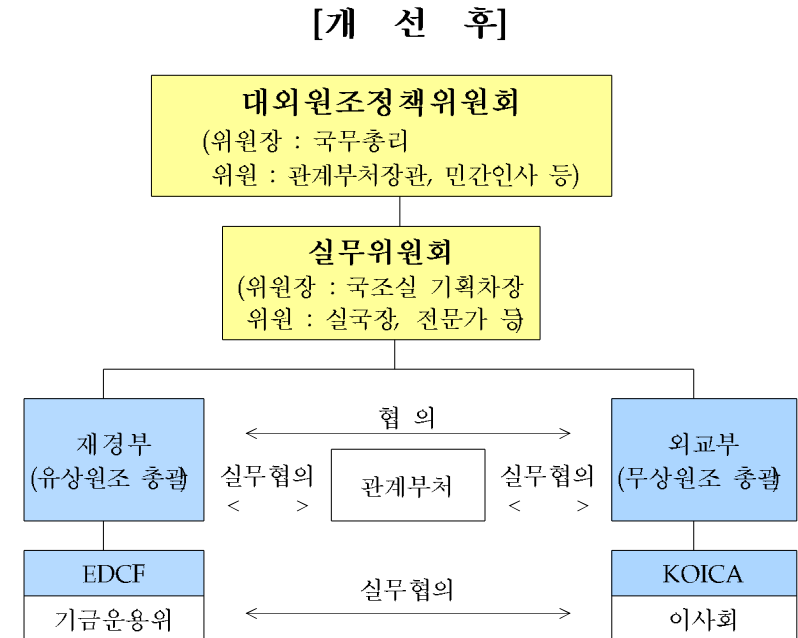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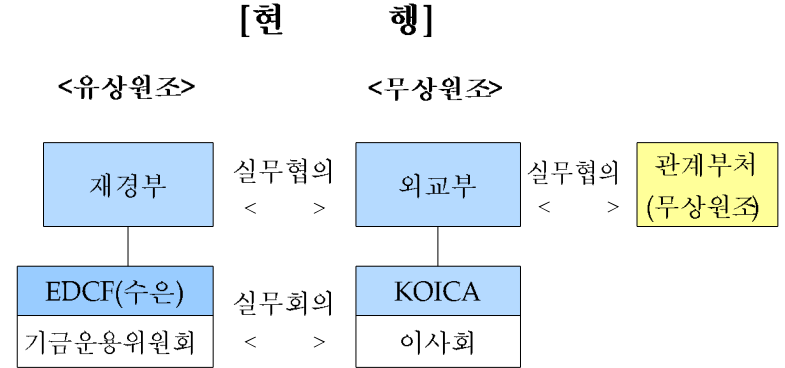
< 첨부2 >

**대외원조 개선방안 비교표**

구 분	개선전	개선후
정책결정 및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무상 이원화된 정책결정 체계</li> <li>재경부와 외교부가 각각 정책결정</li> <li>유무상 및 무상간 정책조정 기능 미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외원조정책위원회(위원장: 총리)” 설치</li> <li>대외원조종합계획 수립 및 정책총괄 조정</li> <li>원조목표, 전략, 연도별 및 중장기 원조계획 심의·확정</li> </ul>
법적 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무상원조를 통합하는 법적 근거 부재</li> <li>원조이념·목표·전략 부재</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외원조법’ 제정</li> </ul>
사업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KOICA와 EDCF(수은)사업간 연계 미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새로운 정책결정 및 조정체계에 따라 각각 사업실시하되, 양기관간 연계 대폭강화</li> </ul>
민간참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식적 참여·협약기구 부재</li> <li>민간활용 미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외원조정책위원회”에 NGO, 경제계 등 참여</li> <li>개발컨설팅트협회등 구성</li> <li>국민들의 참여여건 개선</li> <li>개발NGO지원 확대</li> </ul>
공관의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장중심적 역할 미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관의 현장기능 강화</li> </ul>
긴급재난구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총괄조정기능 미흡</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외교부의총괄조정기능 강화</li> </ul>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평가기능 취약</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담당조직 및 기능 강화</li> <li>제3자 평가방식 도입</li> <li>⇒ 전문성과 독립성 확보</li> </ul>
지원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무상으로 분리지원</li> <li>소액다국·다분야 지원</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합지원</li> <li>선택과 집중, 중점분야지원</li> </ul>

< 첨부3 >

**대외원조 정책체계 비교표**



< 첨부4 >

**우리나라의 대외원조 실적('96~'04)**

(단위 : 백만불)

구 분	'96	'97	'98	'99	'00	'01	'02	'03	'04
공적개발원조 (ODA)	159.15	185.61	182.71	317.49	212.07	264.65	278.78	365.91	423.32
① 양자간 협력	123.31	111.34	124.70	131.35	131.19	171.54	206.76	245.17	330.76
○ 무상원조	53.41	54.77	37.21	38.95	47.78	52.97	66.70	145.46	212.09
○ EDCF차관	69.90	56.57	87.49	92.40	83.41	118.57	140.06	99.71	118.68
② 다자간 협력	35.84	74.27	58.01	186.14	80.88	93.11	72.02	120.74	92.56
(국제기구중여)	(30.08)	(29.06)	(33.59)	(67.70)	(25.27)	(60.10)	(50.69)	(84.92)	(58.40)
(국제기구출자)	(5.76)	(35.53)	(28.32)	(123.46)	(68.34)	(35.03)	(34.45)	(52.53)	(44.18)
기    타	(-)	(9.68)	(-3.90)	(-11.02)	(-12.73)	(-2.03)	(-13.14)	(-16.72)	(-10.02)
GNI (억불)	4,804	4,374	3,168	4,021	4,552	4,213	4,770	5,761	6,810
ODA/GNI (%)	0.033	0.042	0.058	0.079	0.047	0.063	0.058	0.064	0.062

< 우리나라 대외원조의 10대 수원국 >  
(2004년도 양자원조의 총지출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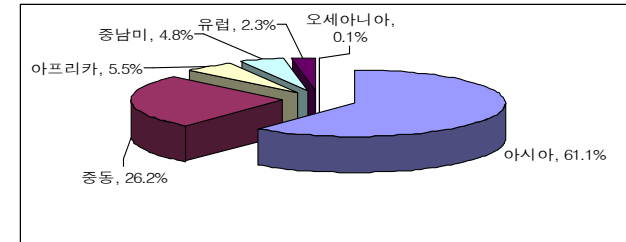
(단위 : 백만 불)

	무상원조	유상원조	소계	비중(%)
이라크	72.2	-	72.2	20.7
베트남	11.7	27.9	39.5	11.4
중국	5.9	22.2	28.1	8.1
캄보디아	3.9	19.9	23.9	6.9
아프가니스탄	21.5	-	21.5	6.2
<b>5대 수원국 누계</b>	<b>115.2</b>	<b>70</b>	<b>185.2</b>	<b>53.2</b>
스리랑카	1.9	17.5	19.4	5.6
방글라데시	2.0	16.6	18.7	5.4
인도네시아	7.6	11.0	18.6	5.3
필리핀	7.2	2.1	9.3	2.7
알바니아	0.0	7.2	7.2	2.1
<b>10대 수원국 누계</b>	<b>133.9</b>	<b>124.4</b>	<b>258.4</b>	<b>74.3</b>
<b>합 계</b>	<b>212.1</b>	<b>135.3</b>	<b>347.9</b>	<b>100.0</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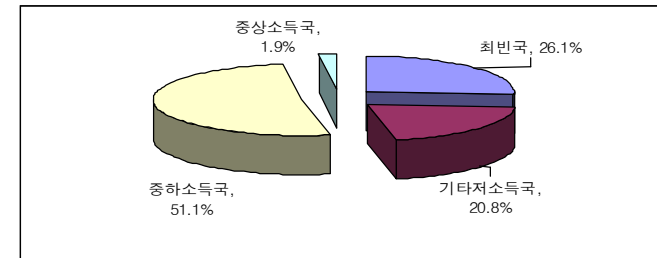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대외원조 지원현황**

(2004년 양자원조 총지출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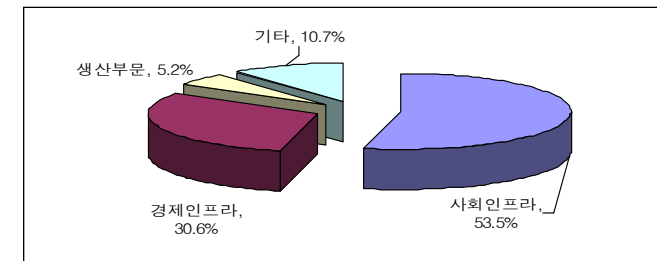
**지역별 지원현황**



**소득그룹별 지원현황**



**부문별 지원현황**



< 첨부 5 >

**주요부처 · 기관별 대외원조 실적**

(2004년 양자다자원조 합계 순지출 기준)

부처 · 기관명	금액( 천만원)	비중
외교통상부 (KOICA)	200,994 (175,335)	47.5%
재정경제부 (EDCF) (한국은행)	185,325 (122,104) (62,513)	43.8%
국방부	15,805	3.7%
정보통신부	7,625	1.8%
교육인적자원부	3,067	0.7%
과학기술부	2,819	0.7%
환경부	2,259	0.5%
농촌진흥청	1,140	0.3%
보건복지부	702	0.2%
해양수산부	223	
여성부	148	
행정자치부	121	
공정거래위원회	220	
국가청렴위원회	23	
국가보훈처	41	
관세청	24	
국세청	15	
기상청	23	
대검찰청	82	
통계청	19	
특허청	244	
산림청	286	
서울시	470	
경기도	562	
전라남도	10	
충청남도	5	
마사회	9	
KDI	1,059	
<b>합 계</b>	<b>423,318</b>	

< 첨부6 >

**DAC 회원국과 우리나라 대외원조 (ODA) 실적 비교**

(단위 : 백만불, %)

국 가 명	2004(잠정치)		2003		2002		2001	
	ODA	ODA/GNI	ODA	ODA/GNI	ODA	ODA/GNI	ODA	ODA/GNI
호 주	1,465	0.25	1,219	0.25	989	0.26	873	0.25
오스트리아	678	0.23	505	0.20	520	0.26	533	0.29
벨 기 에	1,463	0.41	1,853	0.60	1,072	0.43	867	0.37
캐 나 다	2,537	0.26	2,031	0.24	2,004	0.28	1,533	0.22
덴 마 크	2,037	0.85	1,748	0.84	1,643	0.96	1,634	1.03
핀 란 드	655	0.35	558	0.35	462	0.35	389	0.32
프 랑 스	8,475	0.42	7,253	0.41	5,486	0.38	4,198	0.32
독 일	7,534	0.28	6,784	0.28	5,324	0.27	4,990	0.27
그 리 스	465	0.23	362	0.21	276	0.21	202	0.17
아 일 렌 드	586	0.39	504	0.39	398	0.40	287	0.33
이 탈 리 아	2,462	0.15	2,433	0.17	2,332	0.20	1,627	0.15
일 본	8,906	0.19	8,880	0.20	9,283	0.23	9,847	0.23
룩셈부르크	241	0.85	194	0.81	147	0.77	139	0.76
네 덜 란 드	4,235	0.74	3,981	0.80	3,338	0.81	3,172	0.82
뉴 질 랜 드	210	0.23	165	0.23	122	0.22	112	0.25
노 르 웨 이	2,200	0.87	2,042	0.92	1,696	0.89	1,346	0.80
포 르 투 갈	1,031	0.63	320	0.22	323	0.27	268	0.25
스 페 인	2,547	0.26	1,961	0.23	1,712	0.26	1,737	0.30
스 웨 덴	2,722	0.78	2,400	0.79	2,012	0.84	1,666	0.77
스 위 스	1,545	0.41	1,299	0.39	939	0.32	908	0.34
영 국	7,836	0.36	6,282	0.34	4,924	0.31	4,579	0.32
미 국	18,999	0.16	16,254	0.15	13,290	0.13	11,429	0.11
<b>합 계</b>	<b>78,827</b>	<b>0.25</b>	<b>69,029</b>	<b>0.25</b>	<b>58,292</b>	<b>0.23</b>	<b>52,335</b>	<b>0.22</b>
<b>우리나라</b>	<b>423</b>	<b>0.06</b>	<b>366</b>	<b>0.06</b>	<b>279</b>	<b>0.06</b>	<b>265</b>	<b>0.06</b>

### DAC회원국과 우리나라 대외원조의 실적조건 비교

국 가 명	총원조의 증여율 (Grant Element) (%)	양자원조중 증여비율(%)	구속성(Tied) 비율(%)
호 주	100.0	100.0	32.8
오스트리아	100.0	99.9	48.6
벨 기 에	99.5	98.6	0.9
캐 나 다	100.0	99.1	47.4
덴 마 크	100.0	97.0	28.5
핀 란 드	100.0	97.2	14.2
프 랑 스	95.1	84.5	3.1
독 일	97.2	87.1	5.4
그 리 스	100.0	100.0	5.0
아 일 랜 드	100.0	100.0	0.0
이 탈 리 아	99.4	71.3	-
일 본	87.5	46.8	3.4
룩셈부르크	100.0	100.0	-
네 덜 란 드	100.0	100.0	-
뉴 질 랜 드	100.0	100.0	18.6
노 르 웨 이	100.0	98.0	0.1
포 르 투 갈	100.0	99.2	6.3
스 페 인	92.0	63.3	44.0
스 웨 덴	99.9	98.8	0.0
스 위 스	100.0	97.4	3.6
영 국	100.0	90.1	0.0
미 국	100.0	99.4	-
<b>합 계</b>	<b>97.0</b>	<b>86.1</b>	<b>6.8</b>
<b>우리나라</b>	<b>86.6</b>	<b>46.0</b>	<b>80.6</b>

\* 주) DAC회원국의 총원조와 양자원조는 승인액기준 02~03년 평균, 구속성비율은 기술협력과 행정비용을 제외한 양자원조 승인액 기준, 우리나라 수치는 '03년 기준

### < 첨부7 >

### 주요국의 ODA 관리체계

구 분	미 국	일 본	프랑스
ODA 목적	..	국제사회의 개발 및 평화에의 기여를 통해 일본의 번영과 안전 보장	..
근거법률	대외원조법('61)	ODA 헌장('03년)	..
기본정책문서	미 국무부 및 국제개발청(USAID), 전략계획: 2004 ~ 2009 회계년도	ODA 헌장 ('92년, '03년 개정)	..
기타 일반정책문서	•대외원조백서: 21세기의 도전에 대응하기 (2004.1) •국가안전보장전략(2002) •국익안에서의 대외원조:자유와 안전보장과 기회를 증진하기(2002)	ODA 백서	..
주무장관	USAID 청장 (국무장관에게 보고)	외무성장관	외무부장관, 경제재무산업부장관
관련장관	국무장관과 재무장관	재무성장관	..
주무부서/기구	USAID	외무성 경제협력국	대외협력개발총국(외무성)
유관부서/기구	국무부, 재무부 국제업무실, 새천년도전공사, 농무부, 국방부, 보건부,내무부 등 정부부처와 평화봉사단	JICA, JBIC, 재무성, 경제통상산업성, 교육문화체육과학기술성, 농림수산업성, 보건노동복지성, 국토운수성, 법무성, 환경성 등	경제재무산업부, 프랑스개발청, 교육부, 농업부, 환경부 문화부 등
부처간 조정 기구	•국가안보위원회(NSC)가 부처간 조정 담당 •한시적/상시적인 정책조정위원회(PCC)(개발PCC는 국무장관이 의장)	•해외경제협력 관계장관위원회 •부처간장관회의	부처간국제협력및개발위원회(CICID)
이국간원조 주요 대상국	USAID는 아프리카 22, 중동 및 아시아 20, 중남미 17개국 등 70개국이상의 사무소	140개국, 아시아 집중	54개국을 포함하는 우선연대국(ZSP)
주요 원조부문(sector)	농업,분쟁관리,민주주의/거버넌스, 경제성장과 무역, 교육, 환경/인구, 보건/영양	빈곤경감, 지속적 성장, 범지구적 문제, 평화구축	수도위생, 교육, 보건 및 HIV/AIDS, 농업 및 낙후지역개발, 사회기반
자문기구	대외원조자문위원회	ODA 통합전략위원회	고위국제협력자문위원회

구 분	네덜란드	스페인	포르투갈
ODA 목적	지속가능한 빈곤경감	빈곤박멸을 위해 지속가능한 사회경제인간개발 촉진 (국제개발협력법, 1998)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 강화, 빈곤경감, 경제성장, 지역통합, 인간개발을 위한 유럽 파트너십 촉진
근거법률	..	국제개발협력법('98년)	Decree Law 5/2003 13 <sup>th</sup> January
기본정책문서	<i>Mutual Interests, Mutual Responsibility: Dutch Development Co-operation en route to 2015('03)</i>	4개년 마스터플랜 (2001~2004)	<i>The Portuguese Co-operation for the Incoming 21<sup>st</sup> Century - Strategy Paper</i> (the Council of Ministers Resolution no. 43/1999 18 <sup>th</sup> May)
기타 일반정책문서	Aid in Progress('95)	..	..
주무장관	대외개발협력부	외교부내 국제협력 및 중남미 본부장(장관급)	외부부내 외교협력 차관
관련장관	외무부	경제부장관, 경제부 통상관광본부장	유럽경제업무 차관 포르투갈연합 차관 재무부장관
주무부서/기구	국제협력총국(DGIS, 외무성)	국제협력 및 중남미본부 (SECIP) 및 산하 실시기관 스페인국제협력청(AECI)	포르투갈개발지원청(IPAD)
유관부서/기구	..	경제부(통상관광본부), 농업부 등 13개 정부부처 자치령 및 지자체	재무부, 17개부처, 330개 지방자치단체
부처간 조정 기구	국제협력조정위원회 유럽협력조정위원회	•국제협력부처간조정위원회 •연방-지자체간 개발협력협의회	..
이국간원조 주요 대상국	36개 장기원조국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유럽 및 중동의 저소득국 중심)	29개 중점지원국	7개 중점협력국가(앙골라, 동티모르, 모잠비크, 기니 비소, 케이프베르디 등)
주요 원조부문(sector)	기초교육, 보건, 낙후지역 개발	기초사회서비스, 교육, 인권, 민주주의와 시민사회발전, 환경, 문화, 과학기술연구	교육, 훈련, 문화 및 전통, 보건, 사회 인프라, 안보, 인도적 긴급지원
자문기구	..	개발협력민관협의회	..

< 첨부 8 >

**대외원조(ODA)의 국제동향과 주요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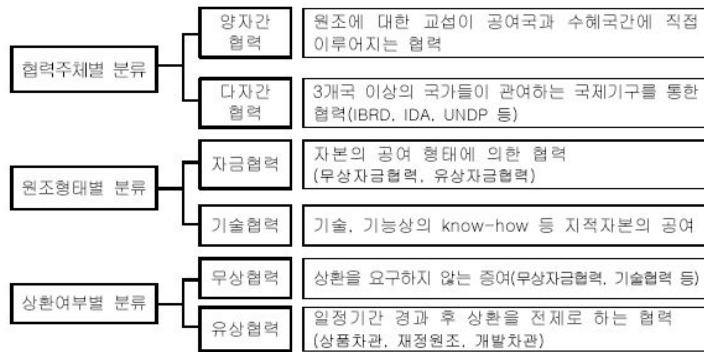
1. 대외원조의 개념과 국제동향

□ 대외원조의 개념

- 대외원조(공적개발원조, 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라 함은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복리증진을 주목적으로 개발도상국 및 국제개발기구에 공여하는 증여(Grants) 및 양허성 차관 (증여율이 25%이상인 Concessional Loan)을 의미

□ 대외원조사업의 분류

- 협력주체에 의한 분류
  - 협력주체에 따라 공여국 정부가 수원국 정부에 직접 제공하는 양자간 원조와 UNDP, 세계은행 등 국제개발기구에 대한 출연(분담금) 및 출자 등을 통해 간접 지원하는 다자간 원조로 분류
- 공여형태에 의한 분류
  - 원조의 공여형태에 따라 물품이나 현금 지원과 같은 자금협력과 기술이나 지식 지원 등 지적자본의 이전인 기술협력으로 분류
    - 기술협력사업은 전문가 파견, 연수생 초청사업, 개발조사(사전타당성조사, 투자조사 포함)등이 있음



○ 상환 여부에 의한 분류

- 개도국에 제공된 원조자금에 대한 상환의무 유무에 따라 유상원조(EDCF)와 무상원조(KOICA사업 등)로 분류

□ 대외원조의 국제동향

- UN은 21세기 새로운 국제협력의 방향설정과 이를 주류화하기 위하여 “UN천년개발목표”(MDGs)를 선언하고, 개발도상국의 빈곤문제가 지구촌 전체의 문제라는 인식하에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
  - MDGs는 21세기 국제협력의 가장 기본적인 방향으로 정착되었으며, MDGs 선언이 원조규모의 증대를 위한 중요한 계기를 마련
  - 전략적인 측면에서는 수원국의 주인의식(Ownership), 수원국의 개발우선 순위에 기초한 공여국의 전략수립(Alignment), 원조공여국간의 조정활동을 강화하여 원조 집행방식의 조화(Harmonization), 수원국 중심의 원조 관리 체계를 강조
- OECD/DAC는 회원국에 효율적인 정책권고 및 범세계적인 이슈, 기술협력, 평가등에 대한 광범위한 원조정책 권고 및 결의사항 제정 등 국제사회의 기준을 주도

2. 원조의 새로운 도전과제

□ 빈곤퇴치(Poverty Reduction)

- 세계화와 함께 개도국들의 주변화와 빈곤화에 대처하기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이 확대되면서, 빈곤퇴치가 국제개발협력의 최대 이슈로 부각
  - 빈곤퇴치는 지속가능개발 세계정상회의(WSSD)에서 지속가능개발에 가장 중요한 목표로 제시되었고 이를 위해 UN은 물론 OECD, 세계은행, IMF등 국제사회에서의 공동노력을 본격화
- 특히 유엔 밀레니엄 선언(2000.9)을 통해 2015년까지 절대 빈곤층을 절반수준으로 삭감시킨다는 밀레니엄개발목표(MDGs)를 설정

□ 지속가능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 2002.9. 지속가능개발세계정상회의(WSSD)에서 개도국 대외원조 지원확대를 결의
  - WSSD에서는 지구차원의 지속가능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개도국의 빈곤문제 해결이 절실한 과제임에 공감하고 빈곤퇴치 방안으로 ODA증액, 시민사회 참여 등을 제안

□ 최빈국 지원확대

- 1980.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제3차 유엔개발 10년”에서 최빈국 지원 목표를 GNP대비 0.15%~2.0%로 설정
- 2001.5. 제3차 최빈국회의에서 최빈국에 대한 대외원조 지원 확대, OECD/DAC에서 채택(2001.4)된 최빈국 원조의 언타이드화, 고채무 빈곤국(HIPC) 이니셔티브의 착실한 추진 등을 결의
  - 특히 세계은행과 IMF는 많은 최빈국이 포함된 고채무빈곤국(HIPC)의 외채탕감 및 국제적 지원체계를 강화

- 2002.3. 몬테레이 개발재원회의에서는 최빈국에 대한 지원비율을 국제적 합의수준인 GNP대비 0.15~0.20%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

#### □ UN천년개발목표(MDGs) 달성

- 2000.9 UN총회에서 2015년까지 8개항의 UN천년개발목표(MDGs)달성을 위해 노력키로 결의(UN 천년선언: Millenium Declaration)
  - MDGs 8개항중 하나인 “글로벌 개발파트너쉽 발전”에 “보다 관대한 ODA”가 포함
- 2005.9. “UN정상회의”에서는 ODA확대등 MDGs 이행실적 중간점검 실시 및 각국은 ODA확대계획을 발표

#### □ OECD/DAC의 ODA 개혁논의

- ODA개혁방안으로서 주목할 만한 것은 개발과 안보를 통합하기 위한 대외원조(ODA)개념 확대논의, 무역, 투자, 개발정책 등 대개도국 정책의 일관성 유지, 국별 지원의 선별성(selectivity) 강화, 개도국의 국가발전정책과의 일치(alignment), 원조의 질 향상과 효과성 증대 이행점검과 성과측정, 대안적 재원조달 방안 등에 관한 논의임
  - 최근 안보와 개발, 분쟁예방이 개발원조의 주요 이슈로 논의됨에 따라 대외원조(ODA)개념을 확대하여 안보지원 활동을 대외원조통계에 포함시키자는 주장이 제기
  - 2004년 DAC 고위급회의에서는 아래 8가지 항목을 대외원조에 포함시키기로 승인
    - 민주적 거버넌스와 안보체계에 대한 문민통제를 향상시키는 능력배양, 안보체제 검토, 안보관련 지출관리, 안보체계에 대한 시민사회 역할 강화, 소년병사, 신뢰구축과 분쟁예방 조치, 소형 무기와 경무기 확산 방지 등

## 지속가능발전 지표 개발과 평가시스템 구축

2006. 10

- 소 관 부 처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협 조 부 처 : 통 계 청

## < 요약 >

###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 추진배경

- '92.6월 리우환경회의가 채택한 '의제21'과 '02.9월 남아공에서 열린 WSSD회의에서 빈곤퇴치, 소비 및 생산패턴, 자연자원, 세계화, 건강, 이행수단등 6개 분야별 이행계획을 발표하여, 각 국가별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지표를 활용하여 이행정도를 평가할 것을 권고함.
- '02년부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국가별 환경지속성지수(ESI) 평가를 해 온 바, 우리나라의 ESI 평가순위가 '02년 136위, '05년 122위로 매우 열악한 것으로 평가됨.

#### □ 필요성

- 국가 차원의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및 그 성과를 객관적인 지표를 통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음.
- 환경, 경제, 사회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는 지속가능발전 과제를 통합적 지표 체계를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세계적으로 UNCSO, EU, OECD, WEF 등에서 발표한 지표체계들이 있는데, 외국의 모범적인 사례를 적극 수용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 2. 현황과 전망

#### □ 현 황

- 현재 지속가능발전 지표와 관련하여, UNCSO, EU, OECD, WEF 등에서 발표한 지표체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 지표 개발을 위해서는 이들 지표들의 장점을 적극 수용하고, 우리나라의 특징을 살려 나갈 필요가 있음.

#### □ 전 망

-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 지표는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UNCSO와 EU에서 제시하고 있는 안을 기본으로 국제적인 호환성을 살려 우리나라 특성에 맞게 수립할 필요 있으며, OECD와 WEF에서 제시한 지표 체계는 환경측면의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한 것으로, 사회 및 경제 분야의 지속가능성 측면은 별도로 보완하여야 함.
- 지속위 연구 용역 보고서에서 제시한 지표체계는 환경, 경제, 사회 분야별로 나뉘어 있지 않고, 농업, 에너지, 해양수산 등 14개 분야로 되어 있어 지표체계를 환경·경제·사회 분야별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 WSSD에서 권고하고 있는 이행계획별 평가지표와 국가 지속가능발전 평가지표는 관련성은 있지만, 목적과 내용이 다르므로 별도로 진행될 필요가 있음.

### 3. 비전과 전략

#### □ 비전과 목표

-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 지표체계는 우리가 추구하는 미래사회의 비전과 목표에 따라 설정될 필요가 있음.
- '05.6월 환경의 날에 즈음하여, 대통령께서 '경제·사회·환경이 균형있게 발전하는 선진국가'를 국가지속가능발전 비전으로 선언한

바, 이를 기반으로 하여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미래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추진전략

- 1 단계 : 지속위 내부안 마련
- 2 단계 : 부처협의
- 3 단계 : 공론화
- 4 단계 : 시범 시행
- 5 단계 : 제도화 시행

4. 중점 추진과제

□ 추진과제 선정배경

- 국가 차원의 지속가능발전 지표 분야는 국가 차원의 지속가능발전 정도를 객관적인 지표로 평가하고, 선진국과 비교하여 향후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수립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할 필요가 있음.

□ 추진과제 선정 결과

- 국가지속가능발전 지표 초안 작성, 지속위 차원 내부 협의
- 국가지속가능발전 지표 체계 완성, 부처별 협의 및 공론화
- 지표 확정 및 평가시스템 구축
- 1차 평가 수행
- 국가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발표
- 향후 매년 지속적으로 평가 진행

목 차

I. 추진배경 및 필요성 .....	247
II. 현황과 전망 .....	248
III. 비전과 전략 .....	251
IV. 중점 추진과제 .....	254
V. 추진체계 .....	256

## I. 추진배경 및 필요성

### 1. 추진배경

- '92.6월 리우환경회의가 채택한 '의제21'에서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과 설정 필요성 제기
- '02.9월 남아공에서 열린 WSSD회의에서 빈곤퇴치, 소비 및 생산패턴, 자연자원, 세계화, 건강, 이행수단등 6개 분야별 이행계획을 발표하여, 각 국가별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지표를 활용하여 이행정도를 평가할 것을 권고함.
- '02년부터 세계경제포럼(WEF)에서 국가별 환경지속성지수(ESI) 평가를 해 온 바, 우리나라의 ESI 평가순위가 '02년 136위, '05년 122위로 매우 열악한 것으로 평가됨.
- '03.2월 참여정부 출범 후, 100대 국정과제 중 6개 분야 16개 세부과제 중 하나로 '지속가능발전지표 현장 적용가능성 평가' 과제가 설정되고, 연구 작업을 진행하여 보고서 초안 작성을 완료함(05.11.25)
- '06.5월 제4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출범에 즈음하여, 향후 경제, 사회, 환경의 지속가능성 평가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대통령께 보고하여 제가를 받음.

### 2. 필요성

- 국가 차원의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및 그 성과를 객관적인 지표를 통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음.
- 환경, 경제, 사회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는 지속가능발전 과제를 통합적 지표 체계를 활용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 세계적으로 UNCSO, EU, OECD, WEF 등에서 발표한 지표체계

들이 있는데, 외국의 모범적인 사례를 적극 수용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면서 우리나라 실정에도 맞는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 국가차원의 지속가능발전 지표 평가 및 환류(feedback)을 통해 주기적으로 지속가능발전 상황을 진단하고, 정부정책 및 계획의 수정, 보완 체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3. 기대효과

-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 수준을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진단할 수 있고, 구체적인 정책 목표를 수립할 수 있음
- 지속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정부 정책의 성과와 효과를 구체적으로 진단하고 평가할 수 있음
- 선진국의 지표 평가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음

## II. 현황과 전망

### 1. 현 황

- 현재 지속가능발전 지표와 관련하여, UNCSO, EU, OECD 등에서 발표한 지표체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 지표 개발을 위해서는 이들 지표들의 장점을 적극 수용하고, 우리나라의 특징을 살려 나갈 필요가 있음
- 아래의 비교 분석 표는 UNCSO와 EU의 지속가능발전 지표안을 중심으로 OECD 지표체계를 종합적으로 비교한 것임

<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 관련 지표 비교 분석 >

UNCSD(57) (≒ EU(64)) + OECD			한국지속가능발전지표(안)	
분야	영역	항목	지표(수)	
			(8) <b>사용여부</b>	
1. 형평성	1-1. 빈곤(관련)	1) 빈곤인구비율 (UN) (EU)	○ 그대로 사용	
		2) 소득불평등에 관한 지니계수 (UN) (EU)	○ 그대로 사용	
		3) 실업률(남성, 여성) (UN) (EU) (OECD)	○ 그대로 사용	
		+ 청년 실업률 (EU)	-	
		+ 유소년 부처 (EU)	-	
		+ 1인당 사회연금 (EU)	-	
	1-2. 남녀평등	4) 남성대비 여성 임금비율 (UN) (EU)	○ 그대로 사용	
		+ 여성경제활동 참가율 (OECD)	○ 그대로 사용	
		+ 출산율 (OECD)	○ 그대로 사용	
		5) 유소년 영양 상태 (UN)	○ 그대로 사용	
		+ 인구영양상태 (EU)	-	
		6) 영양 사망률 (UN) (EU) (OECD)	○ 그대로 사용	
2. 건강	2-1. 영양상태	7) 출생시 기대연령(남성, 여성) (UN) (EU) (OECD)	○ 그대로 사용	
		8) 허수처리 함유 인구 (UN) (EU)	○ 그대로 사용	
	2-2. 사망률	9) 안전한 식수 접근 인구 (UN)	○ 그대로 사용	
		+ 상수도 보급률	-	
	2-3. 공중위생	10) 주요한 보건시설 접근 인구 (UN)	○ 그대로 사용	
		+ 국가보건지율 (EU) (OECD)	○ 그대로 사용	
	2-4. 식수	11) 유소년 전염병 예방주사 (UN) (EU)	○ 그대로 사용	
		12) 해염 보급률 (UN) (X) (EU)	- (보급 문제는 이미 해결)	
	2-5. 건강관리	13) 중등학교 순출입률 (UN)	○ 그대로 사용	
		+ 교육비 지출 수준 (EU)	-	
	3. 교육	3-1. 교육수준	+ 교육 1인당 학생 수	○ 그대로 사용
			+ 학업률 향상 수	○ 그대로 사용
+ 교육비 (공교육비/사교육비) 지출 (OECD)			○ 그대로 사용	
3-2. 비평등		14) 성인 비평등률 (UN)	○ 그대로 사용	
		+ 저능률수준 (EU)	-	
		15) 1인당 배당 전력 (UN)	○ 그대로 사용	
4. 주택	4-1. 생활환경	+ 1인당 방의 수 (EU)	-	
		+ 주택보급률	-	
		+ 가족구성 (EU)	-	
		16) 1000인당 신고된 범죄 수 (UN) (EU)	○ 그대로 사용	
5. 안전	5-1. 범죄	17) 인구 성장률 (UN) (EU) (OECD)	○ 그대로 사용	
		+ 인구 밀도 (EU)	○ 그대로 사용	
		+ 고령인구비율 (OECD)	○ 그대로 사용	
		18) 도시의 공식적/비공식적 거주인구 (UN)	○ 그대로 사용	
6. 인구	6-1. 인구변화	+ 순 이주율 (EU)	-	
		19) 온실가스 배출 (UN)	○ 그대로 사용	
		+ 1인당 온실가스 배출량 (EU) (OECD)	○ 그대로 사용	
		+ GDP당 온실가스 배출량	○ 그대로 사용 (많이 사용되는 개념임)	
1. 대기	1-1. 기후변화	20) 온실효과물질의 소비 (UN) (EU)	○ 그대로 사용	
		21) 도시내 오염물질의 대기농도 (UN) (EU)	○ 그대로 사용	
		22) 경작에 적합하고 영구적인 경작지 (UN)	○ 그대로 사용	
	1-2. 오존층	1-3. 대기질	+ 농지와 유기농업 (EU)	○ 그대로 사용
			+ 친환경농업, 유기농업 실천 면적	○ 그대로 사용 (중복되는 측면 있음. 개수 고려 제외)
			+ 곡물지급률	○ 그대로 사용 (식량안보에서 중요한 변수)
	2. 토지	2-1. 농업	23) 비료(질소,인) 사용 (UN) (EU)	○ 그대로 사용
			24) 농약 사용 (UN) (EU)	○ 그대로 사용
			25) 토지지역 중 산림지역 비율 (UN) (EU)	○ 그대로 사용
			+ 연도별 산림 및 녹지 면적 비율	-
			+ 도시 내 녹지(공원) 면적	-
			26) 목재 벌채 정도 (UN) (EU)	○ 그대로 사용
2-2. 산업		27) 차광화 영향을 받는 도시 (UN) (X) (EU)	- (해당사항 없음)	
		28) 도시의 공식적/비공식적 거주면적 (UN)	○ 그대로 사용	
		+ 도시의 성장 (EU)	-	
		29) 연안 해조류 농도 (UN)	○ 그대로 사용	
		+ 해안/연안의 부영양화 (EU)	-	
		+ 폐기물 해양 투기량	-	
2-3. 과학화	2-4. 도시화	30) 해안지역 총 인구 비율 (UN)	○ 그대로 사용	
		+ 개별면적 증감 면적 및 비율	-	
		31) 연안 해조류 농도 (UN) (EU)	○ 그대로 사용	
		+ 해안/연안의 부영양화 (EU)	-	
		+ 폐기물 해양 투기량	-	
		32) 연안 해조류 농도 (UN) (EU)	○ 그대로 사용	
3. 해양/연안	3-1. 연안지역	33) 연안 해조류 농도 (UN) (EU)	○ 그대로 사용	
		+ 해안/연안의 부영양화 (EU)	-	
		+ 폐기물 해양 투기량	-	
		34) 연안 해조류 농도 (UN) (EU)	○ 그대로 사용	
		+ 해안/연안의 부영양화 (EU)	-	
		+ 폐기물 해양 투기량	-	
	3-2. 연안외역	3-3. 연안외역	35) 연안 해조류 농도 (UN) (EU)	○ 그대로 사용
			+ 해안/연안의 부영양화 (EU)	-
			+ 폐기물 해양 투기량	-
			36) 연안 해조류 농도 (UN) (EU)	○ 그대로 사용
			+ 해안/연안의 부영양화 (EU)	-
			+ 폐기물 해양 투기량	-

4. 담수	3-2. 어업	+ 공유수면매립면적비율	○ (중복되는 측면 있음. 개수 고려 제외)		
		31) 주요 종의 연간 수확 사용 변화 (UN)	○ 그대로 사용		
	+ 사백련 종의 수확 (EU)	-			
	+ 어업장식량 (OECD)	○ (중복되는 측면 있음. 개수 고려 제외) 사용			
	4-1. 수량	32) 지하수 및 지표수의 연간 취수량 (UN)	○ 그대로 사용		
		+ 1일 1인당 물소비량 (OECD)	○ 그대로 사용		
	4-2. 수질	33) BOD (COD, SS, pH 등) (UN) (EU)	○ 그대로 사용		
		34) 담수내 대장균 밀도 (UN)	○ 그대로 사용		
	5. 생물다양성	5-1. 생태계	+ 목욕물의 질 (EU)	-	
			35) 주요 보호 지역 (UN)	○ 그대로 사용	
		5-2. 종	36) 전체 대비 보호구역 비율 (UN) (EU)	○ 그대로 사용	
			+ 습지보호지역(람사르사이트) 면적	-	
1. 경제구조		1-1. 경제이행	37) 주요 다양한 종 (UN)	○ 그대로 사용	
			+ 위협받는 종의 수 (EU)	○ 그대로 사용	
	1-2. 무역	38) 1인당 GDP (UN) (EU) (OECD)	-		
		+ GDP (UN) (EU) (OECD)	○ 그대로 사용		
	1-3. 재정상태	2-1. 물결소비	+ 경제 (실질GDP) 성장률 (OECD)	○ 그대로 사용	
			39) GDP 대비 투자본 (UN) (EU)	○ 그대로 사용	
경제	2-2. 에너지사용	+ 주요부분별 부가가치 (EU)	-		
		+ 인플레이션율 (EU)	-		
	2-3. 폐기물관리	2-4. 운송	+ 소비자불가치수 (OECD)	○ 그대로 사용 (경제성장 대비 유리함)	
			40) 상품과 서비스 무역의 균형 (UN)	○ 그대로 사용	
	2. 소비/생산	2-1. 물결소비	+ 순 당화계정 (EU)	-	
			+ EU와 국제시장 (EU)	-	
		2-2. 에너지사용	2-3. 폐기물관리	41) 부채(GNP) (UN)	○ 그대로 사용
				+ 공채 (EU)	-
		2-3. 폐기물관리	2-4. 운송	42) GNP대비 총 ODA (UN)	○ 그대로 사용
				+ 개발도상국 원조 (EU)	-
	제도	1-1. 지속가능성 실현	1-2. 국제협력	43) 원로이용도 (UN)	○ 그대로 사용
				+ 에너지원별 구성 비율	-
1-2. 국제협력		2-1. 정보접근	+ 원로서비스 (EU)	-	
			+ 환경친화적 소비 (EU)	-	
2-1. 정보접근		2-2. 정보이용	44) 1인당 연간 에너지 소비 (UN) (EU) (OECD)	○ 그대로 사용	
			+ 총에너지 공급량 (OECD)	○ 그대로 사용	
2-2. 정보이용	2-3. 과학과 기술	+ GDP 대비 에너지 효율성	-		
		45) 재생가능에너지자원 소비 비중 (UN) (EU) (OECD)	○ 그대로 사용		
2-3. 과학과 기술	2-4. 계획/평가와 반응	46) 에너지이용도 (UN) (EU) (OECD)	○ 그대로 사용		
		47) 산업 및 도시 교통편이를 발생량 (UN) (EU) (OECD)	○ 그대로 사용		
2. 제도용량	2-1. 정보접근	2-2. 정보이용	48) 유해 폐기물 발생량 (UN) (EU) (OECD)	○ 그대로 사용	
			+ 유해 화학물질 사용량	-	
	2-2. 정보이용	2-3. 과학과 기술	2-4. 계획/평가와 반응	49) 방사성 폐기물 발생량 (UN) (EU) (OECD)	○ 그대로 사용
				50) 폐기물 재활용 및 재이용 (UN) (OECD)	○ 그대로 사용
	2-3. 과학과 기술	2-4. 계획/평가와 반응	2-4. 계획/평가와 반응	+ 재활용 폐기물 : 종이, 유리 (EU)	-
				+ 폐기물 처리와 처리시설 (EU)	-
2-4. 계획/평가와 반응	2-4. 계획/평가와 반응	2-4. 계획/평가와 반응	51) 1인당 수송모드에 의한 승차거리 (UN)	○ 그대로 사용	
			+ 여객수송 모드 (EU)	-	
2-4. 계획/평가와 반응	2-4. 계획/평가와 반응	2-4. 계획/평가와 반응	+ 화물수송 모드 (EU)	-	
			+ 교통수단별 수송 분담률	-	
2-4. 계획/평가와 반응	2-4. 계획/평가와 반응	2-4. 계획/평가와 반응	+ 자동차 등록대수 (OECD)	○ 그대로 사용	
			+ 도로 및 자전거 도로 총 연장 (OECD)	○ 그대로 사용	
2-4. 계획/평가와 반응	2-4. 계획/평가와 반응	2-4. 계획/평가와 반응	+ 자동차 사고율(명당,대당) (OECD)	○ 그대로 사용	
			52)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UN)	○ 그대로 사용	
2-4. 계획/평가와 반응	2-4. 계획/평가와 반응	2-4. 계획/평가와 반응	+ 국가 SD실현의 국제 차원 기여 (EU)	-	
			53) 인권원 국제적 합의 사항의 수행 (UN)	○ 그대로 사용	
2-4. 계획/평가와 반응	2-4. 계획/평가와 반응	2-4. 계획/평가와 반응	54) 1000인당 인터넷 계정 및 라디오 수 (UN) (EU)	○ 그대로 사용	
			+ PC보유가구비율 (OECD)	○ 그대로 사용	
2-4. 계획/평가와 반응	2-4. 계획/평가와 반응	2-4. 계획/평가와 반응	55) 1000인당 전화선 수 (UN) (EU)	○ 그대로 사용	
			56) GDP 대비 R&D에 대한 지출 (UN) (EU) (OECD)	○ 그대로 사용	
2-4. 계획/평가와 반응	2-4. 계획/평가와 반응	2-4. 계획/평가와 반응	57) 자연재해 인명피해·경제적 손실 (UN) (EU)	○ 그대로 사용	

\* UNCSD(2001) : UNCSD에서 발표한 지표로 57개 세부지표로 구성

\* EU(2001) : UNCSD 체계와 유사, 7개 지표를 추가하고 부분적으로 변형하여 총 64개의 지표로 구성

\* OECD(2006) : OECD Factbook (2006년판)에 나타난 경제, 인구 및 이주, 물가, 에너지, 공공정책, 노동시장, 과학기술, 환경 및 자원, 교육, 삶의 질 분야에 걸친 통계 지표

## 2. 전 망

-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 지표는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UNCSO와 EU 및 OECD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안을 기본으로 국제적인 호환성을 살려 우리나라 특성에 맞게 수립할 필요 있음
- 지속위 연구 용역 보고서에서 제시한 지표체계는 환경, 경제, 사회분야별로 나뉘어 있지 않고, 농업, 에너지, 해양수산 등 14개 분야로 되어 있어 지표체계를 환경·경제·사회 분야별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 WSSD에서 권고하고 있는 이행계획별 평가지표와 국가 지속가능발전 평가지표는 관련성은 있지만, 목적과 내용이 다르므로 별도로 진행될 필요가 있음

## III. 비전과 전략

### 1. 비전과 목표

-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 지표체계는 우리가 추구하는 미래사회의 비전과 목표에 따라 설정될 필요가 있음
- '05.6월 환경의 날에 즈음하여, 대통령께서 '경제·사회·환경이 균형있게 발전하는 선진국가'를 국가지속가능발전 비전으로 선언한 바, 이를 기반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비전을 제시함

### ○ 경제분야

---

- 1-1. [생산력] 국내총생산 분야의 지속가능성이 유지되는 사회
  - 1-2. [경제위기] 인플레이션 및 국가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사회
  - 1-3. [무역] 국제교역을 통하여 자원이 효율적으로 분배되는 사회
  - 1-4. [자원에너지] 자원 및 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이 극대화하는 사회
  - 1-5. [폐기물관리] 폐기물 발생량이 줄고, 최적으로 관리되는 사회
  - 1-6. [교통운송] 환경친화적이고 안전하며 비용효율적인 교통운송체계의 사회
  - 1-7. [과학기술] 과학기술에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사회
  - 1-8. [정보화] 정보화 인프라가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사회
  - 1-9. [예산] 예산배분의 지속가능성이 유지되는 사회
- 

### ○ 사회분야

---

- 2-1. [빈곤] 빈부 격차가 줄고 다함께 잘 사는 사회
  - 2-2. [남녀평등] 남녀 성차별이 없는 사회
  - 2-3. [고용] 일자리가 창출되고 실업률이 낮은 사회
  - 2-4. [건강] 건강하게 생활하고, 장수하는 사회
  - 2-5. [교육] 교육받을 기회가 균등히 보장된 사회
  - 2-6. [주거] 주거권이 실현된 사회
  - 2-7. [재해안전] 재해나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
  - 2-8. [인구] 인구의 지속가능성이 유지되는 사회
  - 2-9. [국제협력]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함께 하는 사회
- 

### ○ 환경분야

---

- 3-1. [기후변화] 기후변화의 위기가 사라진 사회
  - 3-2. [대기] 안전한 대기질이 확보된 사회
  - 3-3. [물]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수자원이 확보된 사회
  - 3-4. [해양연안] 해양연안의 환경이 보전되고 지속가능한 어획이 가능한 사회
  - 3-5. [농업] 환경친화적 농업과 식량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
  - 3-6. [산림] 산림과 녹지의 지속가능성이 유지되는 사회
  - 3-7. [도시화] 생태축이 보전되고, 농촌·도시지역이 균형있게 발전하는 사회
  - 3-8. [생물종다양성] 생물종다양성이 보전되는 사회
  - 3-9. [보호지역] 자연생태계를 보호하며 자연과 공존하는 사회
- 

※ 이상 27개 비전 가운데 [생산력], [예산], [인구], [산림] 분야의 지속가능성 지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부분임.

## 2. 추진전략

### □ 1 단계 : 지속위 내부안 마련

- 그동안 지속가능발전 지표 개발과 관련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현장적용 가능성 연구(지속위,2005.11),
  - 지방단위 지속가능발전 지표 연구(환경정책평가연구원,205.12),
  - 국가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초안) I, II, III, IV
- 지표개발의 원리로 보면, 1차(측정)지표 - 2차(부문)지표 - 3차(종합) 지표 등으로 체계화시켜야 하지만, 이는 장기적으로 접근하고, 이번 작업은 1차 지표와 2차 지표를 중심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지속위 내부 워크숍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한 자문회의를 거쳐 지속위 내부안을 마련함.

### □ 2 단계 : 부처협의

- 지표안이 완성되면, 각 부처에 지속위의 계획을 보내고, 부처의 의견을 수렴함.
- 지표 체계안의 실효성을 위하여, 최근 5년 전후의 자료가 있을 경우, 자체적으로 지표 평가를 진행함.

### □ 3 단계 : 공론화

- 평가지표 개발 시, 분야별 전문가 및 시민단체등과의 공론화 과정 필요함. 이 과정에서 고려해야할 사항은 다음과 같음.
  - 국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기존 지표들과의 차별성 및 호환성 문제
  - 국가별로 지속가능발전지표가 상이할 경우 단일화의 문제 발생
    - 부처별 지표 평가 결과를 정책에 반영토록 제도화하는 문제

### □ 4 단계 : 시범 시행

- 최근 5년간 자료에 의한 평가 수행
- 선진국 대비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 수준 평가
- 향후 지속가능발전 목표치 설정 및 이행정도 평가

### □ 5 단계 : 제도화 시행

- 각 부처의 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에 국가 지속가능발전 지표도 포함되도록 함
- 매년 국가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주기적으로 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향후 정책에 반영

## IV. 중점 추진과제

### 1. 추진과제 선정배경

#### □ 현재, 국내외적으로 '지속가능발전 지표'는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진행되고 있음

- 국가 차원의 지속가능발전 지표  
: 환경지속성지수(ESI), 환경성과지수(EPI) 등
- 지방 차원의 지속가능발전 지표  
: 지자체의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지표 모형 등
- 국가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평가지표

: WSSD 결의에 의한 국가별 이행계획별 평가지표 등

- 국가 차원의 지속가능발전 지표 분야는 국가 차원의 지속가능발전 정도를 객관적인 지표로 평가하고, 선진국과 비교하여 향후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수립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할 필요가 있음.

- 지방 차원의 지속가능발전 지표 개발과 적용은, 지속위의 '지방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로드맵 구축' 과제 및 '지자체의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지표 모형 개발' 과제 등에서 별도로 다룸
- 국가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 평가지표는 6개 분야 48개 이행계획별로 수립되어 진행되기 때문에 국가 지속가능발전 지표와는 목적과 범주에 일정한 차이가 있어 달리 접근할 필요가 있음
- 본 계획에서는 국가 차원의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개발하고 이에 기반한 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추진함

## 2. 추진과제 선정 결과

- 국가지속가능발전 지표 초안 작성, 지속위 차원 내부 협의
- 국가지속가능발전 지표 체계 완성, 부처별 협의 및 공론화
- 지표 확정 및 평가시스템 구축
- 1차 평가 수행
- 국가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발표
- 향후 매년 지속적으로 평가 진행

## V. 추진체계

### 1. 재원계획

- 해당사항 없음

### 2. 추진일정

- 지표 초안 작성 및 의견 수렴 ('06.5~6월)
- 국가지속가능발전 지표 체계 완성, 부처별 협의 및 공론화 ('06.7~8월)
- 지표 확정 및 평가시스템 구축 ('06.9월)
- 1차 평가 수행 ('06.10~11월)
- 국가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발표 ('06.12월)
- 향후 매년 지속적으로 평가 진행

### 3. 성과지표

세부과제	성과지표
5-1-1. 국가 지속가능발전 지표 체계 확정	국가 지속가능발전지표 체계 구축 여부
5-1-2. 국가 지속가능발전 평가시스템 구축 및 시행	국가 지속가능발전 평가시스템 제도화 여부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기반강화

2006. 10. 31

- 소관부처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협조부처 : 환경부, 건교부

## < 요약 >

### 1. 추진 개요

#### □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우리나라는 고도의 압축성장으로 경제개발은 어느정도 결실을 거두었지만, 사회통합과 환경보전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정
-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는 'Rio선언'을 통해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발전을 모든 국가의 사회발전모델로 제시한 바 있음. 이후 선진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들은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통해 자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해 오고 있음
- 우리나라도 2000년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지속위)를 출범시키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사회·제도적 기반의 미비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한계를 보이고 있음
- 이에 따라 '경제와 사회, 환경이 균형 있게 발전하는 선진국가 건설'이라는 대통령의 국가지속가능발전 비전 선언('05.6)과 함께 국정과제조정회의시('05.6) 지속가능발전 추진기반 강화를 보고하였으며, 그 후속 조치로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를 진단하여 바람직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 기대효과

- 국가 및 지방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회·제도적 기반 강화

## 2. 현황

□ **지난 세기 근대화 과정을 통해 우리나라는 고도의 압축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해 왔으나 사회통합과 환경보전 측면에서 심각한 상대적 불균형과 부작용을 발생시켰음**

- 선성장(先成長) 후분배(後分配) 중심의 경제정책은 지역과 부문, 계층간 불균형을 확대·심화시켜 오늘날 사회적 형평성과 통합을 저해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또한, 선개발 후보존 중심의 개발위주 정책은 생태적 자정능력에 대한 과도한 압력을 통해 삶의 질을 악화시키고 개발과 보존을 둘러싼 심각한 가치갈등을 유발하고 있음

□ **지난 세기 근대화 과정이 남긴 부작용을 치유하고 경제-사회-환경적 지속가능성을 통합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관심과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국가 정책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어 왔음.**

- 하지만 국정운영의 주체인 중앙행정부처의 지속가능 발전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부족하고 부처간 정책연계 및 부처내 정책 우선순위도 낮음
-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를 수렴하여 대통령 자문기구로 지속위를 출범('00.9.20)시켰으나 개발과 보존을 둘러싼 정책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국가 및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이끌어내는데 한계가 있음

## 3. 목표와 전략

□ **목표**

- 지속가능한 선진국가 건설을 위한 국가의 추진기반 구축
- 지속가능한 선진국가 건설을 위한 지방의 추진기반 구축

- 거버넌스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발전 전략수립, 추진체계, 평가체계 마련으로 안정적 기반 조성

□ **추진전략**

- 지속가능한 발전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국가 차원의 기반구축
- 지속가능한 발전의 확산과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 차원의 기반구축
- 거버넌스를 통한 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협력기반 강화

## 4. 추진과제 및 이행계획

□ **지속가능발전 법제도적 기반구축**

- 지속가능발전기본법률 제정 및 관련 법률개정 검토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부조직 개선방안 연구

□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증진**

- 거버넌스·공론화기구로서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역할 강화
- 지속가능발전주간 선포 및 협력사업 추진

□ **지방지속가능발전 추진역량 강화**

- 지방지속가능발전 비전선언 및 지속가능발전협약 체결 지원
-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 여건진단 및 컨설팅 지원
- 지속가능발전 선도지자체 선정 및 지원 강화

□ **지방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 확립**

-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를 법제화하여 제도적 근거 마련
- 지방자치단체별 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 제정
- 지방자치단체별 지속가능발전 추진조직 강화
- 지방자치단체별 지방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마련

□ 지방 지속가능발전 평가

- 지방지속가능발전 공통지표와 가이드라인 마련
- 지방자치단체별 지속가능성을 진단·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5. 추진체계 및 일정

추진과제	이행계획	'06	'07	'08	'09	'10	주관부처
법 제 도 적 기반구축	·지속가능발전기본법률 제정 검토	○	○	○	○		지속위 /환경부 /건교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부조직 개선방안 연구		○	○	○	○	지속위
거버넌스 증진	·거버넌스·공론화기구로서의 지속위 역할 강화		○	○	○	○	지속위
	·지속가능발전주간 선포 및 협력사업 추진	○	○	○	○	○	지속위
지방 지속가능발전역량 강화	·지방지속가능발전비전선언 및 협약체결 지원	○	○	○	○	○	지자체 /지속위
	·지방자치단체 지속가능발전 여건진단 및 컨설팅		○	○	○		지속위
	·지속가능발전 선도지자체 선정 및 지원		○	○	○	○	지속위 /행자부 /환경부 /균형위
지방 지속가능발전체 확립	·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 제정 및 지방지속위 설치		○	○	○		지자체
	·지방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수립			○	○	○	지자체
	·지방자치단체별 지속가능발전 추진조직 강화		○	○			지자체
지방 지속가능발전 평가	·지방지속가능발전 공통지표 및 가이드라인 마련	○	○	○			지속위
	·지자체별 지속가능발전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	○	○	지자체

목 차

I. 추진배경 및 필요성 ..... 265

II. 현황 ..... 266

III. 목표와 전략 ..... 268

IV. 추진과제 및 이행계획 ..... 269

V. 추진체계 ..... 277

## I. 추진배경 및 필요성

###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우리나라는 고도의 압축성장으로 경제개발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지만 사회통합과 환경보전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취약한 실정
  - 경제분야는 2004년 현재 OECD 국가 중 GDP가 9위, 노동생산성은 2위, 1인당 GDP는 23위로 나타났지만, 저축률과 투자율은 지속적으로 하락
  - 사회분야에서는 노동, 농민, 환경 등 사회 각 부문의 갈등이 확산되고 장기화되고 있으나 이를 조정하고 관리할 수 있는 역량과 시스템은 부족
  - 환경측면에서는 생태계에 미치는 압력이 수용력 범위를 넘어서서 국토와 환경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고 이로 인한 환경갈등이 확산
    - ※ 환경지속성지수가 146개국 중 122위, 자연생태계 복지지수가 180개국 중 161위로 최하위급에 위치
- 세계적으로 지속가능발전이 미래 국가발전의 모델로 정착되면서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를 추진중
  - 1987년 '환경과 개발에 대한 세계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WCED)'가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개념을 경제발전의 새로운 유형으로 제시
  -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에 모인 전 세계 정상들은 '리우선언'을 통해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의 조화를 통한 지속가능발전을 모든 국가의 발전 모델로 제시
  - 이와 더불어, 국가수준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틀을 강화할 것을 권고하였고 이에 따라 선진국들은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운영중
    - ※ 영국은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및 지속가능발전 전담부서를 설치·운영 중, 스웨덴은 기존의 환경부를 건설과 에너지 분야를 포괄하는 지속가능발전부로 확대

- 우리나라에서도 국가 지속가능발전 추진기구로 거버넌스 성격의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PCSD)를 2000년에 출범시키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지속가능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한계가 존재
  - 지속위는 대통령령에 근거한 자문기구로서 국가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수립과 부처간 업무조정 및 지속가능발전의 이행 촉진에 한계
    - ※ '지속가능발전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16946호, 2000년)' 제정·공포
- 2005년 6월 국가지속가능발전비전 선언('05.6)에 따라 기존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를 점검하고 국가와 지방차원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

### □ 기대효과

- 국가 및 지방 차원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회·제도적 기반 강화
- 동북아 지역, 나아가 세계적인 지속가능발전의 선도국가로서 위상 제고

## II. 현황

- 중앙부처는 국가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국정운영의 주체로 지속가능발전 실현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지만 지속가능발전의 추진에는 여전히 한계가 존재
  - 지속가능성을 정책목표로 고려하더라도 정책 우선순위와 중요도를 낮게 인식하여 형식적인 고려에 그칠 여지가 존재

※ 에너지 정책의 경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는 있지만 그 추진 의지와 성과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 또한 도로우주의 교통정책으로 철도 등 친환경교통수단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더라도 그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이해

□ 선진국들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는 크게 세 유형으로 나눌 수 있음

- 제 1유형 : 지속가능발전 관련 거버넌스 조직(위원회) 설치. 일본 등
  - ※ 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합의를 통해 민주적인 정책과정에 기여할 수 있으나, 제시된 의견이 참고의견으로 다루어져 정부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은 미흡
- 제 2유형 : 거버넌스 조직과 함께 그린캐비닛 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부처간 정책조정기구가 구성. 영국, 독일 등
  - ※ 지속가능발전의 추진을 위한 부처 의견의 조정과 조율은 총리의 역량에 좌우
- 제 3유형 : 지속가능발전을 담당하는 중앙부처를 설치. 스웨덴, 프랑스 등
  - ※ 정책 수립단계에서부터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지만, 중앙부처 전체적인 개편이 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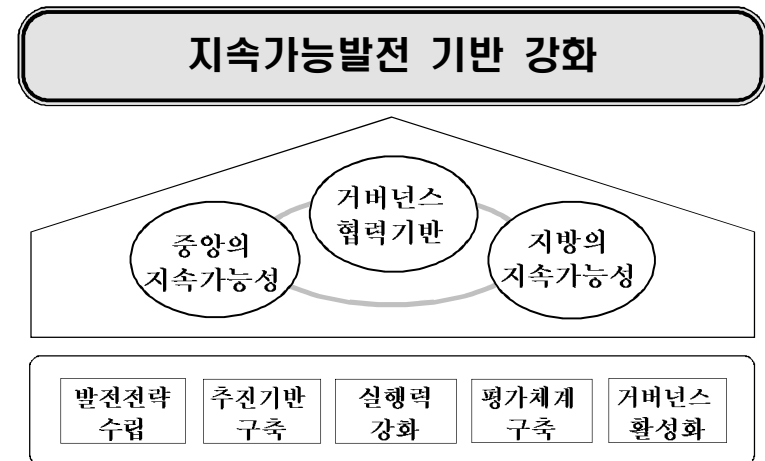
□ 우리나라의 경우 지속가능발전위원회만 설치되어 제 1유형에 해당

- 국정과제위원회로서 일본에 비해 위상은 높지만 자문기구로서의 한계 존재
  - ※ 지속위는 대통령자문에 응하고 건의하는 기관으로 역할이 한정되어, 정부정책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전검토 기능과 자문의 실효성이 제한적. 또한 국정과제위원회로서 대통령 보고사안에 대해 부처 협의를 거쳐 정책보고를 추진하지만 그 위상과 역할은 제한적
- 향후 행정여건과 국민인식, 사회적 요구 등을 고려하면서 지속가능발전을 확산·심화시키기 위하여 지속위 발전방안 등 추진체계의 개선이 필요
  -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부처간 협력과 정책 조정 기능의 강화, 정책수립단계에서부터 지속가능발전정책의 고려요구 등이 강화될 전망

### III. 목표와 전략

□ 목표

- 지속가능한 선진국가 건설을 위한 국가의 추진기반 구축
- 지속가능한 선진국가 건설을 위한 지방의 추진기반 구축
- 거버넌스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발전 전략수립, 추진체계, 평가체계 마련으로 안정적 기반 조성



□ 추진전략

- 지속가능한 발전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국가 차원의 기반구축
  - 국가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법제도개선
  - 국가수준의 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전략)수립
- 지속가능한 발전의 확산과 역량 강화를 위한 지방 차원의 기반구축

-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비전 및 이행계획 수립
-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실행력 강화
- 거버넌스를 통한 정부, 기업, 시민사회의 협력기반 강화
  - 민·관·산 각 주체의 거버넌스 역량강화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

## IV. 추진과제 및 이행계획

### 1. 추진과제 선정경과

- 국가지속가능발전비전 선언 (대통령, '05.6.)
- 국가지속가능발전비전 선언을 실천하기 위한 48개 국가지속가능발전 이행계획의 하나로서 '지속가능발전 기반강화'를 설정
- 국가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 수행(지속위, '05.11~'06.4)
  - ※ 국가전체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의 강화 및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의 필요성 강조
- 국가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및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토대로 다음을 2대 분야, 5대 추진과제를 선정
  - 국가 기반강화 : 법·제도적 기반구축, 거버넌스 증진
  - 지방자치단체 기반강화 : 지방자치단체 지속가능발전 추진역량 강화, 지방자치단체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 확립, 지방자치단체 지속가능발전 평가

### 2. 추진과제별 이행계획

#### 지속가능발전 법·제도적 기반구축

##### ○ 현황 및 문제점

- 국가지속가능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국가 및 지방의 지속가능성 제고에 한계가 심화
  -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규정'이 유일
  - 일부 지방자치단체(경기도, 전남 담양 등)에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설치되었지만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그 기능과 역할에 한계가 존재
  - ※ 민선 4기 이후 많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할 것으로 예상
- 지속가능발전의 확산 및 정착을 위한 조직 역량은 미흡
  - 지속가능발전의 추진과 제고를 위하여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정책간의 상호모순과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의사결정체계 미흡
  - ※ 국가지속가능성이 국가 정책의 기본이념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아 정책이 개별적으로 추진됨으로써 정책간에 상호모순과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존재
  - 지속가능발전의 확산 및 정착을 위해서는 개발과 보전, 사회·경제적 측면을 아우를 수 있도록 조직체계의 개선 및 역량 강화가 요구
  - ※ 개발 및 경제 관련 부처에 비해 보전부처의 위상이 상대적으로 낮아 개발과 보전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업무범위가 환경에 치우쳐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통합적, 체계적 시각이 부족

##### ○ 개선방안

- '지속가능발전기본법률' 제정 및 관련 법률 개정 검토
  - 지속가능성을 국가발전의 원칙과 기본이념으로 확립하고 국가 및 지방에서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법적 기반마련을 검토함
  - ※ '지속가능발전기본법률'에서 규정할 사항 예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책임과 역할, 국가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의 수립, 국가 및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지속가능성 평가 및 공표 등
  - '지속가능발전기본법률' 제정이 추진되어 마무리된다며, 관련 법률 등을 개정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부조직의 개선방안 연구
  - 국가지속가능발전의 추진을 위한 효율적 정부조직 개선방안 검토
  - ※ 개별 정부정책의 조정 및 연계를 위한 환경각료회의 설치, 개별 부처내 지속가능발전부서의 설치, 정책심의 및 조정기구로서의 지속위 기능강화 등 여러 방안을 검토
  - 국토, 수자원, 에너지 등 지속가능발전 관련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정부조직의 개선방안 검토
  - ※ 국토계획과 환경관리기능의 통합, 수자원관리기능의 통합 등 검토
  - ※ 영국·프랑스·스웨덴 등은 에너지, 도시계획, 주택, 환경 등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여 정부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

## □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증진

### ○ 현황 및 문제점

-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민·관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출범하였으며 다양한 그룹의 참여를 통해 새로운 거버넌스 모델을 제시
  - 시민단체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각종 의제와 관련하여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공론화기구로서의 역할에는 미흡하였다는 평가도 존재
- 정부부처나 기업,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등은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지속가능발전의 내용에 대한 공감대와 상호협력이 부족
  - 대규모 개발사업이나 정책 등을 둘러싼 상호 불신과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도 존재
  - ※ 지속가능발전을 둘러싼 갈등 사례) 서울외곽순환도로 사패산터널, 천성산 터널 등
- 정부, 기업, 시민단체 등은 지속가능발전을 제고를 위한 방안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이들 활동과 노력에 대한 체계적인 추진은 미흡
  - 지속가능발전은 정부와 기업, 시민단체 등이 모두 뜻을 모아 체계적으로 추진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더욱 크게 발생하고 실효성이 제고
  - ※ 정부는 국가지속가능발전비전(05.6)을 선언하고 부처별 이행계획을 마련중. 산업계는 지속가능경영을 추진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규정(CSR)을 마련중. 지방의제 추진기구 등은 지속가능발전교육이나 관련활동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의 확산을 적극 추진중

## ○ 개선방안

- 거버넌스·공론화기구로서의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역할 강화
  - 거버넌스 운영을 검토·평가하기 위한 자체평가(self-auditing)와 공론화 의제 발굴·확산기능의 강화 등을 통해 거버넌스 운영과 공론화기구로서의 역할 강화
  - ※ 국가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적용, 모니터링 등을 통한 의제발굴 강화
- 지속가능발전주간 선포 및 협력사업 추진
  -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사회적 노력이 많은 시기를 '지속가능발전주간'으로 선포
  - ※ 지속위가 환경부 등 관련부처와 함께 시민단체, 관련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선포
  - 지속가능발전주간에 정부와 기업,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다양한 협력사업과 국민 참여활동을 개최하여 사회적 인식확산 등을 유도·추진
  - ※ ·협력사업의 예시) 지속가능발전 박람회, 지속가능발전 사회협약 체결, 세미나·포럼 개최, 지속가능한 우리 동네·가로 선정 등
  - 국민 참여활동의 예시) 3분 소등(CO2 및 에너지 절감), 대중교통타기 등

## □ 지방지속가능발전 추진역량 강화

### ○ 현황 및 문제점

- 거시적이고 통합적인 지방지속가능발전 비전 및 전략, 추진의지 부재
  - 지역발전의 정책기조로서 '지속가능발전'의 이념과 목표를 밝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지방정부의 다각적인 노력 미흡
  -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지속가능발전 추진의지가 부족하므로 자율적인 사회협약의 체결 필요
  - ※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그 비전과 전략 수립, 추진의지가 중요
-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현실진단 부재와 실천가능한 지속가능한 발전 모델의 개발은 미흡
  - 개발사업 위주의 정책으로 인하여 지자체 지속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진단이 부재
  - ※ 지속가능성을 확보·제고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지속가능발전 의식수준 및 현재 상태 등의 진단이 필수적

- 그린시티(환경부), 지속가능한 도시대상(건교부) 등이 추진중이지만 실천가능한 지속가능 발전모델로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존재
- ※ · 최근 지방의제21 우수지자체 선정을 추진하는 등 지속가능발전 영역에 대한 시범지자체 선정·지원 계획을 추진중
  -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지방지속가능발전 박람회’, ‘지속가능발전 우수사례 공모전’ 등이 진행되었음
-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을지라도 이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은 전무한 실정

## ○ 개선방안

- 지방지속가능발전 비전선언 및 지속가능발전협약 지원
  -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의 원칙과 기본방향 등을 제시하는 ‘지방지속가능발전비전선언’을 작성·공포토록 유도
  - ※ 지속가능발전비전은 지역사회의 합의를 토대로 미래지향적 지역발전의 기본 철학과 방향, 지역발전 계획과 정책 목표, 이들의 우선순위 등을 제시
  - ‘지방지속가능발전 선언’의 구체성과 실행력 확보를 위한 자율적인 지방지속가능발전협약 체결을 유도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강구
  - ※ 지속가능발전비전 선언·협약 체결과 병행하여 민선 단체장들간의 공동협약식 추진을 검토
  - ※ 지속가능발전 협약 체결된 지자체에 우선적으로 관련사업을 배정, 지자체 성과평가 배려 등
-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 여건 진단 및 컨설팅 지원
  -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 의식 및 역량수준을 진단하여 컨설팅과 관련교육 등의 지원을 강구
  - ※ 회담 지자체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되, 진단체크리스트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진단
  - 지방 지속가능발전 진단 및 컨설팅을 위한 전문가풀 구성·활용 촉진
  - ※ 지속가능발전 컨설팅 등을 위한 전문가풀을 구성하여 지자체 등에서 활용
- 지속가능발전 선도지자체 선정 및 지원 강화
  - 지속가능발전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우수 사례(good practice)로 체계화
  - ※ 지속가능발전 선도지자체 선정은 공모방식으로 운영하되, 관련 지자체 평가

(건교부, 환경부, 행자부, 총리실 등)와 연계 검토

- ※ 지속가능발전의 단계도 지역간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선도적인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우수 사례를 적극 선정·창출하여 다른 지자체로 확산토록 추진
- 이를 통해 지자체간 ‘지속불가능한’ 개발경쟁 분위기를 ‘지속가능발전’ 정책경쟁 분위기로 전환시키는 계기를 마련

## □ 지방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 확립

### ○ 현황 및 문제점

- 지자체는 지방의제21, 환경관련 조례를 근거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들이 진행되나, 조례의 내용이 대부분 환경 중심이어서 모든 정책의 통합적 접근이 요구되는 지속가능발전 추진에 한계
  - 경기도, 전남 담양군 등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조례 등을 제정하여 운용중
  - ※ ‘06년 4월 지속가능발전위원회 규정 개정(대통령령 제19453)을 통해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 ‘(가칭)지속가능발전기본법’ 제정 추진중
  - ※ 현재 지방의제21 추진기구를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하는 곳이 158개소이지만 그 근거는 환경조례(58.2%), 설치운영(지원)조례(29.1%), 지원조례(7.0%), 사회단체 보조금조례(0.6%), 보조금조례(0.6%), 규칙(2.0%), 정관(1.3%) 등으로 다양하게 분포
- 지방의 지속가능발전부서 부재
  - 현재 환경부서에서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일부 수행하고 있지만,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개발과 보전 등 관련업무를 조정·통합·연계에는 한계 발생
  - ※ 청주시 등 일부 지자체의 경우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환경부서에서 기획실로 이관하여 통합적인 정책추진 노력을 추진중
- 지역의 경쟁적 개발정책으로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여건 악화
  - 일부 지자체의 무분별한 개발중심 정책추진으로 지역의 지속가능성 저해와 난개발 등 지역사회의 논란 존재
  - 지속가능발전을 유도·추진할 수 있는 기본계획의 마련 필요

## ○ 개선방안

-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
  - ‘지속가능발전기본법률’에 지방지속가능발전위원회(LCSD) 설치규정 마련
- 지방자치단체별 (가칭)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 제정
  - ‘지속가능발전기본법률’ 제정과 연동하여 조례 제정 근거를 강화
  - ※ 지속위 등은 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의 주요 내용과 작성지침 등을 제시
  - ※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라 환경, 도시계획 관련조례를 지속가능발전조례로 개편
  - ‘지방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 제정 및 운용 등을 위한 시범 지자체를 선정하고, 이의 경험을 토대로 단계적으로 확대
- 지방자치단체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조직 강화
  - 지속가능발전 관련 업무를 시·군정을 종합적으로 조정·추진할 수 있는 부서(기획실 등)가 담당하거나 환경(보전)부서의 관련정책 통합 및 조정기능 강화방안을 검토·추진
  - 총액인건비제 시행('07)에 따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부합하는 행정조직체계의 개선을 유도
- 지방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전략) 수립
  -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지속가능발전계획을 수립·시행
  - ※ ‘지속가능발전기본법률’에 근거 마련하고 ‘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 등에 수립주체, 자원, 도시계획 등 관련계획과의 관계 등 명시

## □ 지방 지속가능발전 평가

### ○ 현황 및 문제점

- 현재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속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평가지표 개발과 관련통계DB가 미흡하여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수준을 진단하기 곤란
  -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 관련 자료의 조사·축적도 미미한 실정
  - ※ 지방의 지속가능성 개선이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안이므로 지방지속가능발전에 대한 평가를 통해 지속불가능성 요인 제거 필요

- 지방의 지속가능성 진단과 평가가 비체계적이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지원수단도 미흡
  - 난개발, 자원고갈, 멸종위기종의 증가 등 지속가능성에 대한 체계적, 객관적인 진단과 평가기법의 개발이 미흡
  - 지속가능성 진단에 기초한 관련정책 등 개선을 도모할 지원수단 미흡
  - ※ 지방의 지속가능성 진단과 평가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이 필요

### ○ 개선방안

- 지방지속가능발전 공통지표 및 가이드라인 마련
  - 다양한 지방자치단체의 특수성(도시, 농촌, 광역지자체 등)을 고려 지방의 지속가능발전을 측정할 수 있는 전국 공통지표와 가이드라인을 마련
  - ※ 지방지속가능발전 지표는 지방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의 성과평가와 연계토록 고려
  - 지방지속가능성 평가지표로서 경제, 사회, 환경적 측면과 사회·제도적 역량 등 검토
- 지방자치단체별 지속가능발전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 지방지속가능발전지표를 활용한 주기적 평가를 실시하여 지속가능발전의 성과와 장애요인에 대한 개선방안(정책 및 제도, 사업 발굴, 예산 및 조직 개선 등)을 마련
  - ※ 지방지속가능발전 평가결과의 보고·발표를 의무화하고 홈페이지 게시, 사업발굴 등에 활용
  - ※ 지방자치단체장의 시·군정 평가자료 등으로도 활용을 검토
  - 자치단체에 대한 성과중심 예산제도의 확대를 고려 성과평가항목에 ‘지속가능성’ 지표를 마련하는 방안을 강구
  - ※ 성과평가항목에 포함시켜 행정의 참여와 책임성을 높이고 평가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 성공 사례로 인정되는 경우 예산 우선 배정 등 유인책 고려

## V. 추진체계

### 1. 재원계획

추진과제	금액	주요재원('06~'10)
법제도적 기반구축	7,500,000천원 (국가지속위 설치·운 영예산, '06년기준)	- 지속위 예산
거버넌스 증진		- 지속위 예산
지방자치단체 지속가능발전 추진역량 강화		- 관련기관 예산협의예정
지방자치단체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 확립		- 지자체 예산
지방자치단체 지속가능발전 평가		- 지속위 연구예산

### 2. 추진체계 및 일정

추진과제	이행계획	'06	'07	'08	'09	'10	주관 부처
법제도적 기반구축	·지속가능발전기본법률 제정 검토	○	○	○	○		지속위 /환경부 /건교부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부조직 개선방안 연구		○	○	○	○	지속위
거버넌스 증진	·거버넌스·공론화기구로서의 지속위 역할 강화		○	○	○	○	지속위
	·지속가능발전주간 선포 및 협력사업 추진	○	○	○	○	○	지속위
지방지속가능발전비전선언 추진역량 강화	·지방지속가능발전비전선언 및 협약체결 지원	○	○	○	○	○	지자체 /지속위
	·지방자치단체 지속가능발전 여건진단 및 컨설팅		○	○	○		지속위
	·지속가능발전 선도지자체 선정 및 지원		○	○	○	○	지속위 /행자부 /환경부 /균형위
지방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 확립	·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 제정 및 지방지속위 설치		○	○	○		지자체
	·지방지속가능발전기본계획 수립			○	○	○	지자체
	·지방자치단체별 지속가능발전 추진조직 강화		○	○			지자체
지방지속가능발전 평가	·지방지속가능발전 공통지표 및 가이드라인 마련	○	○	○			지속위
	·지자체별 지속가능발전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	○	○	지자체

### 3. 성과지표

세부과제	성과지표
5-2-1. 지속가능발전 법제도적 기반구축	국가지속가능발전 법제도적 기반구축 여부
5-2-2.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 증진	지속가능발전의 참여적 거버넌스 만족도
5-2-3. 지자체 지속가능발전 추진역량 강화	지자체 지속가능발전비전 선언 및 선도지자체 지원실적
5-2-4. 지방 지속가능발전 추진체계 확립	지방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정 비율
5-2-5. 지방지속가능발전 평가	지자체 지속가능발전 평가 실적

# 지속가능발전교육 실행 방안

2006. 10. 30

■ 소 관 부 처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협 조 부 처 : 교육부, 환경부

## < 요약 >

### 1. 추진개요

#### □ 추진 배경

- 2002년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WSSD, 요하네스버그)에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2005-2014년을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10년 (UN Decade for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 DESD)으로 제정하자는 권고를 당해 12월 제57차 UN 총회에서 채택
- 2005년 3월부터 유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 10년이 시작
- 2005년 6월 제12회 국정과제조정회의 개최시 대통령께서 선언한 '지속가능발전비전'의 이행과제로 '지속가능발전교육'이 포함되어 후속 대책을 마련중

#### □ 기대효과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개인과 집단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향한 패러다임의 변화와 공생의 문화적 기반 형성
- 유엔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에 대비하여 국제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동북아지역 선도
- 국가 지속가능발전 비전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시민들의 이해와 참여 증진

### 2. 현황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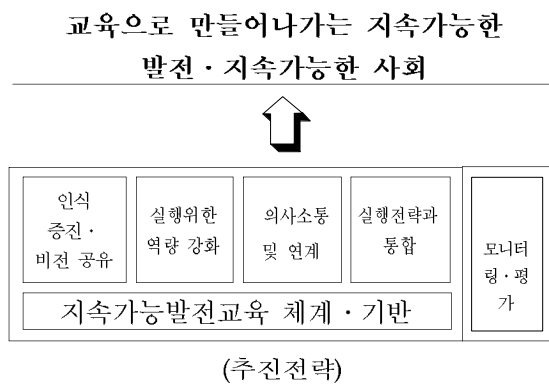
- 학교교육 측면에서 현재의 입지행태가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활성화의 제한요인이 되고 있으며, 교육관련 부처나 교사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이 매우 낮고 관련 사업도 거의 전무한 실정

- 사회교육 측면에서 기업, 고등교육기관 등에서는 교육이 없는 실정이며, 의제21추진기구와 환경단체들은 환경교육을 중심으로 부분별 교육이 진행되고 있으나 지속가능발전교육으로 통합되지 못하고 있음. 기타 시민사회단체는 인권, 통일, 평화 등 주제별로 진행되고 있으나 지속가능발전교육과의 연계는 없음

### 3. 비전과 전략

#### □ 비전

- 교육으로 만들어나가는 지속가능한 발전·지속가능한 사회



#### □ 목표

-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높은 인식과 비전을 공유한다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학습 및 실행 역량을 갖춘다
- 지속가능발전 이해당사자 사이의 의사소통과 강한 연대를 강화한다
- 지속가능발전과 지속가능한 사회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 국가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추진 전략

- 전략 1 :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체계와 기반 구축
- 전략 2 : 참여적 방식으로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인식 증진, 비전 공유, 주인의식 확보
- 전략 3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개인과 집단 모두의 학습·실행 역량 강화
- 전략 4 : 지속가능발전 및 교육 관련 주체들의 의사소통과 파트너십 강화
- 전략 5 : 다양한 수준의 구체적 실행을 통해 교육과 학습이 지속가능발전과 지속가능한 사회 형성에 핵심 전략이 되게 함

### 4. 추진과제 및 이행계획

#### □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기반 구축

- ‘국가지속가능발전교육 종합계획’ 수립하여 종합적인 추진계획 마련
- 지방자치단체, 산업계, 시민단체의 지속가능발전교육사업 지원 확대

#### □ 지속가능발전 인식확산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홍보계획 수립 및 실행
-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교육10년 착수식 개최하여 본격적인 확산·추진
-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정책연구 지원
- 지속가능발전 우수 사례 발굴·보급 및 시범 프로젝트 시행

#### □ 분야별 교육 프로그램 확대 및 협력 강화

- 학교 교육과정에 지속가능발전교육 내실화 및 교육확대
- 공무원대상 지속가능발전교육 실시

- 기업·시민대상 지속가능발전교육 지원
- 지속가능발전 전문가 양성 과정 개설 지원
- 민·관·산·학간의 지속가능발전교육 네트워크 구축
- 동북아지역 ESD선도 및 국제협력 강화

### 5. 추진체계 및 일정

추진과제	이행과제	'06	'07	'08	'09	'10	주관부처
지속가능발전교육 기반구축	‘국가지속가능발전교육종합계획’수립		○				지속위
	지속가능발전교육사업 지원 확대		○	○	○	○	교육부/환경부/지속위
지속가능발전 인식확산	지속가능발전 홍보계획 수립·시행		○	○	○	○	지속위/교육부/환경부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 착수식 개최		○				지속위/교육부/환경부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정책연구 지원		○	○	○	○	지속위/교육부/과기부/환경부
	지속가능발전 우수 사례 발굴 보급 및 시범프로젝트 시행		○	○	○	○	환경부/교육부/지속위
분야별 교육프로그램 확대 및 협력강화	교육과정에 지속가능발전교육 내실화 및 교육확대	○	○	○	○	○	교육부
	공무원대상 지속가능발전교육 실시		○	○	○	○	중공교
	기업·시민대상 지속가능발전교육지원		○	○	○	○	KBCSD/지속위/산자부
	지속가능발전 전문가양성과정 개설 지원			○	○	○	교육부/지속위
	지속가능발전교육 네트워크 구축	○	○	○	○	○	교육부/환경부/지속위
	동북아지역 ESD선도 및 국제협력참여	○	○	○	○	○	교육부/외교부/환경부

## 목 차

I. 추진배경 및 필요성 .....	287
II. 현황 .....	288
III. 비전과 전략 .....	290
IV. 추진과제 및 이행계획 .....	292
V. 추진체계 .....	302

## I. 추진배경 및 필요성

### □ 추진 배경

- 1992년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채택된 의제 21의 36장 '교육, 공공 인식 및 훈련'에서는 지속가능 발전에 있어 교육의 핵심적 역할을 강조
  - ※ 의제21에는 전체적으로 '교육'이 303번 언급. 이는 에너지(156), 오염(138), 빈곤(64), 교통(29)등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빈도이며, 과학(358)과 함께 지속가능 발전 추진 과정에서 교육의 중요성 시사
- 이후 10년 동안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도들이 있었으나 기대한 성과를 얻는데 실패한 것으로 평가
- 2002년 지속가능발전세계정상회의(WSSD)에서 교육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2005-2014년을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10년(UN Decade for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UN DESD)으로 제정하자는 권고가 있었고, 당해 12월 제57차 UN 총회에서 채택
- 2005년 3월부터 유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교육 10년(UN DESD) 시작하였고, 당해 9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 착수식 개최
-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세계적 노력에 동참하고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국가적 수준의 추진 전략을 개발·시행하는 것이 시급

### □ 필요성

- 『유엔 지속가능발전교육10년 국제이행계획 초안』(UNESCO, 2004)을 고려 국가차원의 이행계획의 수립·실천이 요구
  - ※ 영국, 독일, 스웨덴, 캐나다, 미국, 대만, 호주, 뉴질랜드 등 선진국에서는 지속가능발전교육10년과 관련된 국가차원의 실행계획이나 지침 마련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

※ 지속가능발전교육은 '모든 사람들이 질 높은 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속가능한 미래와 사회 변혁을 위해 필요한 가치, 행동, 삶의 방식을 배울 수 있는 사회를 지향'하는 것을 의미

- 2005년 6월 대통령께서 선언한 '지속가능발전비전'의 이행과제로서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추진방안이 요구
- 시민단체 등 사회적으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확산 및 실천을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이행계획의 마련 필요성이 제기
  - ※ 지방의제21전국대회 교육컨퍼런스('05.9), 지속가능발전교육 워크숍('05.12) 등

### □ 기대효과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개인과 집단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향한 패러다임의 변화와 공생기반 구축
- 유엔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에 대비하여 국제적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동북아시아의 선도국가로 역할
- 국가 지속가능발전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국민들의 이해와 참여 증진

## II. 현 황

### □ 학교

- 현재의 입시형태가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에 제한요인으로 작용하고, 교육관련 부처나 교사 등의 인식수준도 매우 낮으며 관련 사업도 거의 전무한 실정
- 현재 진행 중인 교육과정 개정 및 교육개혁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집중적인 논의 필요성 대두

- 지속가능발전 교육을 개개의 교과 또는 내용 영역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교육전체의 지향으로 삼고, 학교 풍토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학교 전체 수준의 프로젝트 장려 필요

□ 사회

- 의제 21
  - 지속가능발전 관련 교육 활동이 환경교육을 중심으로 부분별 교육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지속가능발전교육으로 통합되지 못하고 있음
- 시민사회단체
  - 환경교육, 인권교육, 통일 교육, 평화교육 등 주제별로 진행되고 있으나, 지속가능발전교육으로의 총체적인 연계는 부족
  - 특히, 환경교육의 경우 생태기행, 환경캠프 등 체험위주의 일회성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측면에서 정규화된 프로그램 부족한 실정

□ 기업

- 지속가능발전교육과 관련하여 기업은 학교나 사회 여러 영역, 여러 수준의 네트워크를 지원하는 등 역할이 중요하나 관심 미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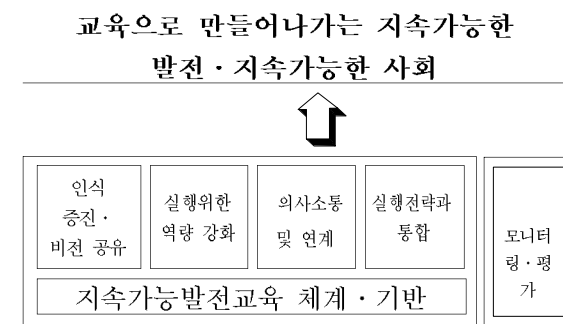
□ 고등교육

- 대학, 연구소 등 고등교육 기관에서 접근가능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교양교육, 전문가 양성 과정이 부족하고 지속가능발전교육 전문가 양성 등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음

### Ⅲ. 비전과 전략

□ 비전과 목표

- 비전 : 교육으로 만들어가는 지속가능한 발전·지속가능한 사회
  -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지속가능한 발전과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해 필요한 가치, 행동 능력, 삶의 방식을 함께 참여하고 학습하는 과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것
- 목표
  -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높은 인식과 비전을 공유한다.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학습 및 실행 역량을 갖춘다.
  - 지속가능발전 이해당사자 사이의 의사소통과 강한 연대를 강화한다.
  - 지속가능발전과 지속가능한 사회 형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 추진 전략

- 전략 1 :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체계와 기반 구축
  -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정착과 활성화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국가 실행체계를 구축

- 전략 2 : 참여적 방식으로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인식 증진, 비전 공유, 주인의식 확보
  -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현황에 대한 실태 조사와 의견 수렴 진행
  - 모든 형태의 학습과 홍보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의 비전을 설정
  - 실태조사와 비전설정 과정에 시민 참여를 촉진하여 그 자체가 교육이 되게 하고, 주인의식을 갖게 함
  - 학교, 사회, 기업, 언론, 고등 교육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각 영역에 적합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확대·개발·적용
- 전략 3 :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개인과 집단 모두의 학습·실행 역량 강화
  - 학교, 사회, 기업, 언론, 고등교육 등 다양한 영역, 다양한 지역별로 차별화된 지속가능발전교육 추진 전략 및 실행계획 개발
  - 각 영역의 모든 구성원과 집단이 평생에 걸쳐 역량 강화를 위해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 마련
  - 지속가능발전 및 지속가능발전교육과 관련된 우수 사례 발굴 및 보급
- 전략 4 : 지속가능발전 및 교육 관련 주체들의 의사소통과 파트너십 강화
  - 지속가능발전이 실질적으로 계획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체 내부의 의사소통 강화
  - 지속가능발전 및 지속가능발전교육과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 사이, 즉 이해당사자들간의 파트너십 강화
  - 지속가능발전의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다양한 수준의 네트워크 구축
  - 동북아 지역의 거점을 표방하고 있는 한국의 위상에 걸맞는 국제교류 활동을 통해 지방에서 지구촌에 이르는 의사소통과 연대 활동에 참여
- 전략 5 : 다양한 수준의 구체적 실행을 통해 교육과 학습이 지속가능발전과 지속가능한 사회 형성에 핵심 전략이 되게 함
  -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수준의 구체적 실행을 적극 지원
  - 모든 교육 영역에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통합
  - 모든 발전 계획 수립에 있어 교육에 대한 요구를 확인하고 통합

## IV. 추진과제 및 이행계획

### 1. 추진과제 선정경과

-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 전문위원회 구성 및 연구용역 수행**
  -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지속가능발전교육 전문위원회 구성(PCSD)
  - 지속가능발전교육 연구팀을 구성하여 연구용역 수행
    - ※ 유엔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을 위한 국가추진전략 개발연구('05. 3~6)
- **지속가능발전 교육 관련 부처, 전문가 등 의견수렴**
  -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부처간담회('05. 9), 지방의제21 전국대회 교육컨퍼런스('05. 9), 지속가능발전교육워크숍('05. 12) 등
-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연구용역 및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토대로 다음의 추진과제를 선정**
  - 지속가능발전교육 기반 구축
  - 지속가능발전 인식확산
  - 분야별 교육 프로그램 확대 및 협력 강화

### 2. 추진과제 이행계획

#### □ **지속가능발전교육 기반 구축**

##### ○ **현황 및 문제점**

- 『유엔 지속가능발전교육10년 국제 이행계획 초안』(2004)에서는 2005년 말까지 각 국가별로 지속가능발전교육10년의 시작을 알리고 국가 수준

의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권장

- 또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활발히 추진하고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하도록 제언
- ※ 스웨덴, 영국, 프랑스 등은 지속가능발전교육위원회를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이들을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교육10년 추진 전략, 실행 계획 등을 작성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중
- 그러나, 국가 수준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련 계획과 법적 근거 등이 마련되지 않아 임의적이고 즉흥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음
- ※ 2001년 환경교육진흥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통과되지 못함
- 지속가능발전교육의 효율적 실행을 위해서는 이를 종합하고 전담할 수 있는 있는 실행 주체가 필요하지만, 전담할 실행 주체가 없어 분산적으로 운용중
- 『유엔 지속가능발전교육10년 이행계획 초안』에서는 국가 수준의 지속가능발전교육 추진 본부(ESD hub)를 설치하되, 특정부처 소속보다는 총리 산하, 또는 대통령 산하 등 범부처적인 기구를 권장
- ※ 독일, 영국, 스웨덴의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위원회 또는 실행 기구가 환경부 또는 교육부 내에 설치되어 있거나 이들 부서들의 협력으로 설치 운영되고 있음
- 지속가능발전교육 추진은 대통령자문 지속가능발전위원회(PCSD) 산하 '대외협력 및 교육전문위원회(3기)'가 유일하며, 관련부처들의 추진 의지도 미흡한 실정
- 지방자치단체, 산업계, 시민단체 등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사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
- 또한, 지방의체가 수행한 교육홍보사업(전체 사업의 62.4%(478개, '01)를 차지)에 대한 지속가능발전 기여도에 대한 평가 미흡

■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 계획 및 기관의 설치현황

- 독 일 : 2003년 7월 독일유네스코위원회가 DESD 실행을 위한 국가수준의 실행계획안을 제출하여 2004년에 독일의회가 확정. 또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협력구조로 '지속가능성 학습을 위한 연합(Allianz Nachhaltigkeit Lernen)'구성.
- 영 국 : 교육부와 환경부 사이에 지속가능발전교육위원단(SDEP) 설립하고 이를 통해 지속가능발전교육 국가 실행 계획 수립 및 공포

- 캐나다 : 국가 차원에서 광범위한 자문과정을 거쳐 개괄적인 틀을 만든 후 실천주체들이나 기관에서 지역의 맥락에 맞추어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고 실행과정과 결과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공유
- 스웨덴 : 교육연구문화부내에 지속가능발전교육위원회 설립하고, 국제 수준의 의견수렴을 위한 대규모 심포지움·워크숍을 진행하였으며, 국내 실태 조사 등에 기반한 정책 제언

■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 스웨덴 : 교육법, 고등교육법, 교육 보조금 지원 규칙, 고등교육법내 학위 취득 요건, 과학센터 지원 준거 등 관련 법과 명령, 규칙 및 관련 조항 등에 지속가능발전교육 내용을 중요한 준거로 포함하도록 제언

○ 추진과제

1) '국가지속가능발전교육 종합계획' 수립

-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국가 수준의 종합계획(주요 추진전략, 홍보·모니터링 등) 및 각 분야·주체별 실행계획 등을 포함
- ※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주관하여 교육인적자원부 및 환경부 등 관련부처,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여 계획안을 마련, 대통령 보고 등을 거쳐 시행
- 매 2년마다 추진실적을 모니터링·평가하여 필요시 수정·보완

2) 지자체, 산업계, 시민단체의 지속가능발전교육사업 지원강화

- 교육부의 지역인적자원개발(RHRD) 기반구축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RHRD 센터가 지역 인적자원개발 정책의 네트워크 매개자로 지속센터의 사업 추진에 참여·협력하는 형태의 지원 방안 검토
-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센터 등을 설치를 추진할 경우 지원방안 강구
- ※ 통영시는 지속가능발전교육UN센터를 설치하여 지역 단위에서 지속가능발전을 확산시키고 교육 시범사업을 추진중
- 산업계, 시민단체에서 추진하는 지속가능발전교육 사업의 추진 및 확산을 위해 관련 부처의 지원 방안 강구

## □ 지속가능발전 인식 확산

### ○ 현황 및 문제점

- 사회, 학교, 기업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인식이 낮은 실정
  - 학생,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 결과에서 지속가능발전 인식 수준이 낮았고, 특히 교사들의 인식 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05)
  - ※ 응답 교사들 중 68.2%가 '지속가능성' 또는 '지속가능한 발전(개발)이라는 용어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응답. 교사 중에서 21.1%는 지속가능발전을 '꾸준한 경제발전과 소득의 증가'라고 응답하여 경제 발전 중심의 인식을 나타냄. 대학생들의 경우 지속가능발전이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용어는 들어본 적이 있으나 잘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음('05, PCSD 보고서)
  - 『유엔 지속가능발전교육10년 국제 이행계획 초안』에서도 지속가능발전 인식 확대를 위해서 의견수렴과 참여, 홍보 강화를 제시
  - ※ 외국의 경우, 지속가능발전교육 추진 전략이나 실행 계획을 만드는 과정에서 광범위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해 인식을 증진하고 공동의 비전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참여적인 방법을 도입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 적합한 지속가능발전교육 추진을 위한 기초조사, 정책방안 모색 등을 위한 연구가 필수적이지만 실제 연구는 미미한 실정
  - 『유엔 지속가능발전교육10년 국제 이행계획 초안』에서 다양한 연구를 통해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질적 개선과 혁신을 도모할 것을 강조
  - 지속가능발전 교육과 관련된 국내 연구는 1993년 이후 일부 연구자를 중심으로 수행되었으나, 양적 부족과 질적인 다양성이 미흡
  - ※ 지속가능발전교육 연구 사례) 'ESSD 달성을 위한 환경정책 심포지움'(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3), '지속가능한 사회와 환경'(이정전 외, 1995), '주요 국가의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환경교육' 등에 관한 세미나 (한국환경교육학회, 1997), '국가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환경교육 추진전략 개발 연구' (최석진 외, 2002),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학교 환경교육 발전 방안' (청주교육대학교·환경교육학회, 2004) 등
  - ※ 호주, 스웨덴 등에서는 중앙정부나 교육관련 재단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 연구비를 지원하여 양적인 팽창과 질적인 개선에 기여

- 호주 : 맥쿼리 대학의 호주 지속가능성교육연구소(Australian Research Institute in Education for Sustainability). 호주 환경유산부가 천팔백만불(약 15억)을 2004-2006년까지 지원하여 지속가능발전교육과 관련 연구를 집중적으로 수행. 그 결과 지속가능발전교육과 학교교육, 기업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에의 참여 등 다양한 연구 결과를 책자로 발간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와의 협력 프로젝트를 통해 구체적인 컨설팅 진행하여, 호주의 지속가능발전교육 주도. 9인의 전임연구원 상주
- 스웨덴 : 지속가능발전교육위원회에서의 정책 제안 중 교육관련 지원재단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과 관련된 연구비 적극 지원 항목 포함

- 중앙 및 지방정부, 사회, 학교 등 다양한 주체들이 추진하는 사업에 지속가능한 발전과 교육적 측면의 통합과 연계가 필요하지만 이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미흡
  - 현재 초·중등학교에서는 환경보전시범학교와 학교 숲 운동, 녹색학교 등이 추진하고 있지만, 대부분 단순한 물리적 개선으로 인식하고 있는 실정. 대학교의 경우 지속가능발전 관련 연구 뿐 아니라 대학의 문화와 환경 자체를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사업이 부족
  - ※ 환경보전시범학교는 1985년에 시작하여 현재까지 진행되어 총 141개 학교에서 참여하고 있으며, 학교숲운동은 1999년에 시작하여 2005년 현재까지 257개교가 참여. 대학교의 경우 전세계적으로 UNESCO, ULSF(the University Leaders for a Sustainable Future, 321개 대학이 참여하며 국내에서는 한양대 참여), COPERNICUS-CAMPUS, IAU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Universities, 650개 대학이 참여하며 국내에서는 광주과기원, 포항공대 참여)가 주관하여 GHESP(Global Higher Education for Sustainability Partnership) 사업을 진행중
  - 기업의 경우 지속가능경영 추진전략 및 비전작성 과정 자체가 지속가능발전 교육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 지역사회에서는 생태마을만들기 등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도모할 수 있지만, 우수 사례(good practice)발굴과 체계적인 지원은 부족

### ○ 개선 방안

#### 1) 지속가능발전 홍보계획의 수립·시행

-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등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시행

• 지속가능발전교육 및 관련사업 등의 추진현황 등 실태조사

※ 지속위가 주관하여 교육부, 환경부 등과 협조하여 추진

- 지속가능발전 관련 소개 및 참가용 홍보, 대중 홍보자료 발간 등 지원
  - 국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지속가능발전 소개 및 홍보책자 발간·배포
  - 어린이 및 어른 대상 참가형 홍보 실시(예, 포스티그리기, 글짓기대회, 슬로건·홍보카피 공모 등)
  - TV, 라디오, 인터넷, 신문, 잡지 등 대중 매체를 중심으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프로그램 편성을 유도하고 제작 지원을 강구

### 2)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교육10년 착수식 개최

- 지속가능발전교육10년 착수식 개최를 통해 본격적인 인식확산 도모
  - 국가지속가능발전교육 종합계획의 착수 혹은 완료 등과 병행 검토
- ※ 2005년 3월 1일 뉴욕에서 유엔 지속가능발전교육10년 착수식, 2005년 6월 28일 일본 나고야에서 아시아·태평양지역 착수식 개최

### 3)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정책연구 지원

- 일정기간동안 지속가능발전 및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 연구지원 확대
  - 지속가능발전 정책연구 계획을 마련하여 체계적인 지원강구
- ※ 지속위, 교육인적자원부, 환경부 등의 자체 예산 확보 및(또는) 학술진흥재단 및 과학재단 등 연구지원기관에서 연구비를 편성·지원
- ※ 지원분야 예시) 지속가능발전 및 지속가능발전교육 실태조사, 추진전략 개발, 실행 계획 수립, 우수 사례 발굴, 우수 사례 조사를 통한 질적 준거 개발, 실행효과 평가 등

### 4) 지속가능발전 우수 사례 발굴·보급 및 시범 프로젝트 시행

- 지속가능발전교육 우수 사례를 조사 및 발굴하고 보급하기 위한 박람회 및 공모제 개최
  - ※ 박람회 및 공모제 개최시 우수 사례에 대한 경제적 지원 등을 강구하고, 지속가능발전교육 네트워크 구축에 활용
- 현재 추진중인 환경보전시범학교, 녹색학교 등 관련 사업들을 지속가능발전교육 혹은 학교·기업·지자체·NGO 등의 연계를 통한 지속가능발

전사업으로 확대하고 지원을 강화

• 지속가능발전 및 지속가능발전교육 등을 위한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

## □ 분야별 교육 프로그램 확대 및 협력강화

### ○ 현황 및 문제점

- 학교교육과정이나 교사 연수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교육기회가 거의 없으며 교육자료 개발도 미흡하고, 지속가능발전교육과 관련한 교사의 전문성도 낮은 실정
  - 환경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중등교사 연구 과정을 제외한 교사대상 연수과정에 지속가능 발전 교육의 내용은 전무함
  - 교사대상 설문조사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에 있어서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사 연수, 교육과정 개설, 교육자료 개발 요구 등이 높음('05)
- ※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필요사항으로 교사연수(30.2%), 교육과정에 포함(29.2%), 교육 자료 개발 보급(25.5%) 등으로 나타나며, 지속가능발전교육의 가장 심각한 걸림돌로서 교사의 전문성 부족을 언급('05, PCSD 보고서)
- 스웨덴, 독일 등 외국에서는 교사양성과정에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포함하고 있으며, 교육과정에서도 지속가능발전을 중요한 주제로 다룸, 석·박사과정 등 전문가 양성과정에 지속가능발전 관련강좌를 개설

- 스웨덴: 모든 교육과정(의무교육, 고등 교육, 일반 성인 교육 포함)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중요한 주제로 다룸. 교사자격을 위한 60학점에 지속가능발전 관점이 충분히 포함
- 독일: 독일의 DESD 실행계획안에서는 교사양성교육에 지속가능발전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힘

- 제7차 교육과정내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내용들은 사회, 도덕, 환경 등의 교과에서 다루어지고 있지만, 교과 담당 교사의 전문성 부족과 학교 교과서의 낮은 내용 기술 수준 등으로 인하여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없음
- 지속가능한 발전을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사회 교과서 등에서 소개(교과서에는 지속가능개발로 기술)하고 있지만, 기술된 내용이 정의 수준이어서 실제 교육 내용으로 반영되어 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려우며, 학교

현장에서의 교사의 역량과 관심의 정도에 따라 교육 양상에 상당한 편차가 나타날 여지가 존재

※ 초등학교 5학년 사회교과에서는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우 선언(요약)을 설명하고, 중학교 3학년 사회교과에서는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강조하는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개념을 강조함. 또한 고등학교 1학년 사회에서도 지속가능한 개발의 정의를 제시

• 교육학 혹은 교과 교육을 전공한 교육과정 개발진과 교과서 집필진들도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지속가능발전 관련 전문가 양성과정도 거의 없는 실정

※ 서울대학교에 '환경교육협동과정'으로 석·박사 통합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지만 해당 과정의 전임교원이 없이 교과교육 담당교수가 논문지도 등을 수행하는 형태로 운용중

- 교육과정에 지속가능발전 내용 확대 반영을 위한 추진현황('06.1-07.2)
  - 기존의 범교과 학습 요소(환경, 인권, 통일, 평화 등)를 '지속가능발전교육'과의 연계 방안을 검토 중
  - 교육과정심의회, 현장적합성검토, 집중작업 등 시안 검토 과정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 검토의견이 확대 반영되도록 관련 자료 제공
- '주5일제대비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교과서에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 내용 확대 반영 추진('07.3-'09.2)
  - 교과서 집필진, 검정위원회에 지속가능발전 관련 자료 제공 예정

-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지속가능발전 의식은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이를 제고하기 위한 충분한 교육프로그램은 부족

• 중앙공무원교육원이나 지방공무원교육원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없으며, 국립환경인력개발원 등에서 자체 강좌를 운영하는 정도에 불과

- 또한 산업계의 경우 일부 대기업을 중심으로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인식은 확산되고 있으나, 충분한 교육내용과 체계적인 교육은 부족

- 지속가능발전 및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위한 네트워크는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만이 유일하여 의사소통 및 연계 등에 한계가 존재

• 특히, 환경교육, 인권교육, 평화교육, 양성평등교육 등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여러

핵심 영역들간의 정보 교류와 연계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형성이 요구

• 지속가능발전교육10년 관련 사업과 협력에 있어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중심 역할을 담당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일본 정부·NGO들은 WSSD에서 유엔 지속가능발전교육10년을 제안하고, 아태 지역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선도적인 역할을 자임하고 있음

### ○ 개선 방안

#### 1) '지속가능발전교육' 개념정립과 사회적 협의를 토대로 학교 등 교육과정에 지속가능발전교육 내실화 및 교육기회 확대

- 학교교육에 '지속가능발전교육' 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대·강화

• 지속가능발전 관련 자료를 개발하여 교과서 집필진 및 검정위원 등에게 보급하고 관련 내용들이 교과서에 반영되도록 적극 추진

• 교육과정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교과내용의 변경 등 지속가능발전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확대

※ 교육과정심의회, 현장검토, 집중작업 등 시안 검토 과정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 내용이 확대 반영되도록 관련 자료를 개발하여 반영 및 보급 강구

• 지속가능발전을 질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교육 방법을 개발·보급 촉진

※ 지속가능발전 교육방법 예시) 들어 통합적 접근, 총체적인 접근, 가치에 대한 검토, 비판적 사고, 문제 해결, 다양한 교수-학습 전략, 참여적 의사 결정, 지역과의 관련성 등

- 교육대학, 사범대학 등의 교육과정에 지속가능발전 교육 이수 및 교수연구에 반영

• 교사교육과정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 수강 의무화 추진검토

※ 교원자격검정령시행 규칙(교육인적자원부령 878호)을 통하여, 초등 및 중등학교 교사 자격의 조건으로 지속가능 발전교육 이수를 의무화

- '지속가능발전교육'에 사회적 협의를 바탕으로 교사 및 교육공무원, 각급 학교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연수과정에 지속가능발전 교육 강좌 개설

• 교육부의 『교원연수 운영방향』 등에 반영하여 앞으로 의무화 될 예정인 60시간 이상의 교원 직무연수과정에 지속가능발전교육을 2시간 이상 포함 권장

• 각 시·도교육청별로 지속가능발전교육 연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방안 등을 추진검토

- 예비교원 양성과정에서 “교양과목” 또는 “교직소양과목”으로 이수하도록 권장
- ※ 각급 교사 연수 과정의 지속가능발전교육 사항 파악 및 교육 방안 초안 마련

## 2) 공무원 대상 지속가능발전교육 실시

- 중앙 및 지방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속가능발전 교육 실시
- 공무원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 필수과목으로 편성, 관련 교육프로그램의 확충·강화

## 3) 기업, 시민사회에서의 지속가능발전 교육지원 강화

-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등을 위한 교육지원 강화
  - 지속가능경영, 환경경영 등 기업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교재개발과 강사 등 전문가 육성 등의 지원방안 강구
- 지속가능발전 관련 시민대학, 청소년 강좌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청소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강좌프로그램, 시민대학, 지속가능발전 교육센터 등을 활용하여 지속가능발전교육 기회를 확대
  -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정 및 언론, 기업 등 전문가 양성 과정에도 관련 강좌를 개설

## 4) 지속가능발전 전문가 양성 과정 개설 지원

- 지속가능발전 전문가 양성 및 재교육 과정을 개설·운영하도록 유도
- 특히, 대학이 희망할 경우 지속가능발전 전문가를 위한 석·박사 통합 과정 개설 등을 권장하고, 대학이 희망할 경우 이를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
- 또한 대학원이 기존 환경교육관련 교육과정 가운데 지속가능발전 전문가를 위한 전문과정으로 전환을 검토할 경우 지원방안 강구

## 5) 민·관·산·학간의 지속가능발전교육 네트워크 구축

- 지속가능발전교육과 관련된 여러 단체나 분야 등의 연계 및 정보교류 활성화 등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 네트워크 구축

## 6) 동북아 지역 ESD 선도 및 국제 협력 참여

- 동북아지역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의 이니셔티브를 확보하기 위한 역량 강화 및 사업 추진을 위해 주요 국가 및 그룹과 협력 사업 추진 강구

# V. 추진체계

## 1. 자원계획

추진과제	금 액	주요재원('06~'10)
지속가능발전교육 기반구축	100,000천원	- 지속위 및 관련기관 예산
인식확산	250,000천원	- 지속위 및 관련기관 예산
교육프로그램 확대 및 협력강화	50,000천원	- 지속위 및 관련기관 예산

## 2. 추진일정

추진과제	이행과제	'06	'07	'08	'09	'10	주관부처
지속가능발전교육 기반구축	‘국가지속가능발전교육총합계획’수립		○				지속위
	지속가능발전교육사업 지원 확대		○	○	○	○	교육부/환경부/지속위
지속가능발전 인식 확산	지속가능발전 홍보계획 수립·시행		○	○	○	○	지속위/교육부/환경부
	우리나라 지속가능발전교육 10년 착수식 개최		○				지속위/교육부/환경부
	지속가능발전교육에 대한 정책연구 지원		○	○	○	○	지속위/교육부/과기부/환경부
	지속가능발전 우수 사례 발굴 보급 및 시범프로젝트 시행		○	○	○	○	환경부/교육부/지속위
분야별 교육프로그램 확대 및 협력강화	교육과정에 지속가능발전교육 내실화 및 교육확대	○	○	○	○	○	교육부
	공무원대상 지속가능발전교육 실시		○	○	○	○	중공교
	기업·시민대상 지속가능발전교육지원		○	○	○	○	KBCSD/지속위 산자부
	지속가능발전 전문가양성과정 개설 지원			○	○	○	교육부/지속위
	지속가능발전교육 네트워크 구축	○	○	○	○	○	지속위/교육부/환경부
	동북아지역 ESD선도 및 국제협력참여	○	○	○	○	○	교육부/외교부/환경부

### 3. 성과지표

세부과제	성과지표
5-3-1 지속가능발전교육 기반구축	국가지속가능발전교육 종합계획 수립여부
5-3-2 지속가능발전 인식확산	지속가능발전 인지도
5-3-3 분야별 교육프로그램 확대 및 협력강화	분야별 지속가능발전 교육 프로그램 개설건수 및 교육인원